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 일정: 10 15 ~18 /11 11 ~14 ○ : 충북 레인보우영동연수원
- 세부일정

일정		강의명	진행자
10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한장협
15일	14:00~18:00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2 ‘공감’을 중심으로	박기원, 최현진1)
/	18:00~19:00	저녁식사	/한국nvc센터
11월	19:00~21:00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의 만남	호연/인권교육센터 들
11일	9:00 ~12:00	인권의 쟁점 속으로 항목별로 다시 챙겨보는 논쟁적 권리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12:00~13:00	점심식사	
10월	13:00~15:00	장애인 인권의 이해2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다시 연립으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15:00~15:30	휴식	
/	15:30~18:30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1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월	18:30~19:30	저녁식사	
12일	19:30~21:30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2 시설 이용 발달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배복주/장애여성공감
	10:00~12:00	시설, 그 울타리를 넘어서2) 탈시설 필요성과 운동을 중심으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0월	12:00~13:00	점심식사	
17일	13:00~15:00	시설 종사자, 노동을 말하다 돌봄과 노동을 중심으로	양미/서부비정규노동센터
/	15:00~16:00	휴식	
11월	16:00~18:00	인권교육, 한 발 더1 인권교육 시연 나누기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13일	18:30~19:30	저녁식사	
	19:30~21:30	인권교육, 한 발 더2 인권교육 시연 나누기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10월	10:00~12:00	인권교육, 내겐 너무 어려운 인권교육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이윤경 /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18일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00	심화과정 소감 나누기와 수료식	한장협
11월			
14일	이후 해산		

- 1)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2’ 강의는 10월에는 박기원, 11월에는 최현진 강사로 진행됩니다.
- 2) 11월에는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2’와 ‘시설,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강의 순서가 바뀝니다.



목차

제1강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 2 / 박기원, 최현진/한국NVC센터	7
제2강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의 만남/ 호연/인권교육센터 들	9
제3강	인권의 쟁점 속으로/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9
제4강	장애인 인권의 이해 2 /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제5강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 1 /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5
제6강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 2/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9
제7강	시설, 그 울타리를 넘어서/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9
제8강	시설종사자, 노동을 말하다/ 양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11
제9강	인권교육 한 발 더 1, 2 /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167
제10강	인권교육 내겐 너무 어려운 / 이윤경/ 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173
부록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획회의록	177

CHAPTER
01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 2
- '공감'을 중심으로

박기원, 최현진 / 한국NVC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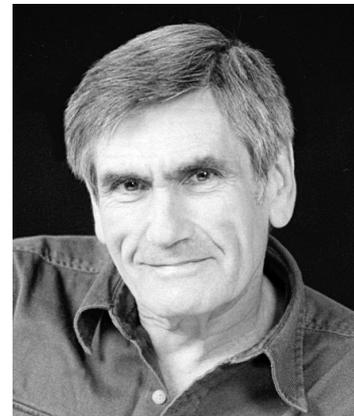
NVC(비폭력대화)

비폭력대화란 영어의 Nonviolent Communication(NVC)을 우리말로 바꾼 것으로, 연민의 대화(Compassionate Communication), 삶의 언어(Language of Life)로 부르기도 한다.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비폭력대화는 이러한 연민이 우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마셜 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 소개

- ▷ NVC 창시자, 임상심리학박사, 평화운동가
- ▷ 갈등해소를 위한 미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1960년대부터 NVC를 개발 및 보급
- ▷ 1984년 CNVC(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를 설립
- ▷ NVC 훈련과 국가 간 분쟁지역에서 중재자로 활동



△ 마셜 로젠버그 박사

비폭력대화는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로젠버그 박사는 “인간의 본성은 서로의 삶에 기여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음의 두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째, 왜 우리들은 이 본성을 잃고 서로 폭력적으로 착취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둘째,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본연의 인간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연구하는 동안에 로젠버그 박사는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말과 대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달았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 대화 방법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비폭력대화는 어떤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려 하는 것이다.

로젠버그 박사는 칼 로저스(Carl Rogers), 마틴 부버(Martin Buber), 장자, 간디(Gandhi),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NVC의 정신을 보여주는 Marshall의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벽보를 보았다. "십대들에게: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하지 말 것." 그 의도는 분명히 집을 나간 십대들을 노리는 대도시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포주들이 버스 터미널에서 외롭고 겁이 나 있는 십대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포주들은 계산된 따뜻함으로 음식, 지넬 장소, 그리고 마약까지도 친절하게 제공한다.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십대들을 옹아놓는다.

나는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약탈적으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경고를 보고 번민하면서 대기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기력을 곧 되찾았다. 어떤 나이든 이주농장노동자가 오렌지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누런 종이봉투에 싸운 방금 먹은 점심의 나머지 같았다. 대기실 건너편에 한 어린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그 오렌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길을 의식한 그 사람은 곧 일어나 아이에게 걸어갔다. 아이에게 주어도 괜찮겠냐고 엄마에게 먼저 몸짓으로 물었고, 그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이에게 건네주기 전에 오렌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키스를 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었다.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으면서, 지금 본 것에 대해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미소를 지었는데, 자기의 행동을 감사해 한다는 말을 듣고 흡족해 하는 것 같았다. "저는 특히 그 아이에게 주기 전에 그 오렌지에 키스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라고 나는 덧붙여 말했다. 내 말에 대답하기 전에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 조용히 있더니 드디어 말하기를, "나는 65년을 살았는데, 그 동안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폭력대화의 주요 개념들

다음은 비폭력대화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 개념이다. 비폭력대화에서는 이 개념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사람은 스스로 주는 것을 즐긴다.

우리가 자신의 욕구,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어 그 사람의 삶에 기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need)를 공유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갈등은 수단/방법 차원에서 생기지, 욕구 차원에서는 없다. 우리가 문화적 차이라고 할 때도 욕구를 충족하려는 방법의 차이지 욕구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

많은 사람이 결핍/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존중하거나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상상력의 고갈, 아니면 유대관계를 축진하고 기르는 기술의 부족에서 온다고 본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밑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폭력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느낌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느낌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을 알려준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느낌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은 아니다. 우리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느낀다. 반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을 느낀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자신의 평가는 대부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연민(Compassion)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받았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욕구를 평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항상 내면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

영성과 사랑은 느낌을 넘어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느낌과 욕구는 이러한 신적인 에너지와 연결하도록 돕는다. 영성은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부탁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부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영성과 사랑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솔직한 자기 표현(Expressing honestly)

1. 관찰(observation) : 있는 그대로(평가와 구별하기)

“내가_____ 을 보거나, 들었을 때,”

2. 느낌(feeling) : 실제 느낌(생각과 구별하기)

“나는 _____ 느낀다,”

3. 필요, 욕구(need) : 느낌의 원인(수단/ 방법과 구별하기)

“왜냐하면 나는__이 필요/중요/원하기 때문에”

4. 부탁(request) : 구체적, 긍정적, 의문형으로(강요와 구별하기)

연결 부탁(connection request)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니? (생각하니?)”

행동 부탁(action request)

“ _____을 해 줄 수 있겠니?”

느낌(Feeling list)

A.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B.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p>감동받은, 몽클한, 감격스런, 벅찬, 환희에 찬, 황홀한, 충만한</p> <p>고마운, 감사한</p> <p>즐거워, 유쾌한, 통쾌한, 혼쾌한, 기쁜, 행복한, 반가운</p> <p>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 하는, 정을 느끼는, 친근한, 훈훈한, 정겨운</p> <p>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흥가분한</p> <p>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차분한, 가벼운</p> <p>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p> <p>흥미로운, 매혹된, 재미있는, 끌리는</p> <p>활기찬, 짜릿한, 신나는, 용기 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p> <p>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뜨, 희망에 찬</p>	<p>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 쓰이는, 뒤숭숭한</p> <p>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주눅든, 겁나는, 두려운, 간담이 서늘해지는, 진땀 나는</p> <p>불안한,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안절부절 못한, 조마조마한, 초조한</p> <p>불편한, 거북한, 껌연쩍은, 곤혹스러운, 언짢은, 괴로운, 난처한, 멧쩍은, 쑥스러운,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숨막히는, 어색한, 찝찝한</p> <p>슬픈, 가슴이 찢어지는, 구슬픈, 그리운, 눈물겨운, 목이 메는,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처참한, 안타까운, 한스러운, 마음이 아픈, 비참한, 처연한</p> <p>서운한, 애석한, 냉담한, 섭섭한, 야속한, 낙담한</p> <p>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적적한, 허전한, 허탈한, 막막한, 쓸쓸한</p> <p>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p> <p>피곤한, 고단한, 노곤한, 따분한, 지긋지긋한, 귀찮은, 무감각한, 지겨운, 지루한, 지친, 절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성가신, 심심한</p> <p>혼란스러운, 멍한, 창피한, 놀란, 민망한, 당혹스런, 무안한, 부끄러운</p> <p>화가 나는, 끓어오르는, 속상한, 약 오르는, 분한, 울화가 치미는, 핏대서는, 분개한, 억울한</p>

느낌과 혼동하기 쉬운, 느낌이 아닌 것들

강요당한 거절당한 공격당한 궁지에 몰린 따돌림 당하는 배신당한	버림받은 오해받은 위협당하는 의심받는 무시당한	이용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조종당하는 학대받은 협박당하는
---	---------------------------------------	---

욕구/ (Need)

<p>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p>	
<p>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 쉽),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의존(생존과 안전),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이동), 운동,</p> <p>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 예측가능성</p> <p>놀이/재미 쾌락, 흥분, 즐거움, 재미, 유머</p>	<p>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 깨달음, 자극, 주권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성,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p> <p>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p> <p>아름다움/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홀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p> <p>자기구현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p>

비폭력 대화의 2요소

1. 진솔하게 표현하기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진실하게 표현하여
상대로부터 저항이나 반격이 아니고
협력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대화의 4단계
 관찰
 느낌(감정)
 욕구(필요)
 부탁

2. 공감적으로 듣기

위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충분히 경청하기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이다.

황대권, 야생초 편지 중에서

공감을 방해하는 10가지 장애물

난 인생의 낙오자야.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

(1) 충고/조언하기

그 나이 때는 한 번쯤 다 그런 생각해.
그런 문제라면 비폭력대화 책을 보면 아주 도움이 될 거야.

(2) 분석/진단/설명하기

요즘 그런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걸 보니 우울증 초기인 거 같아.
네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그래.
그건 네가 MBTI의 _____라서 그래.

(3) 바로잡기

낙오자라니. 네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넌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니.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봐.

(4) 위로하기

어머 그래 너 너무 힘들겠다. 옆에서 보는 내가 이렇게 다 속상한데 넌 오죽하니.
너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

(5) 내 얘기 들려주기

너도 그러니? 말도 마. 나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딱 죽고 싶다니까.
어쩔 그렇게 나랑 똑같애,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

(6) 감정의 흐름을 중지/전환시킴

그렇게 풀죽어 있지 마, 기운 내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한 번 보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7) 동정/애처로워하기

어쩔 그렇게 일이 꼬이냐. 진짜 안됐다.
큰일 났다. 너 인제 어떻게 사니?

(8) 조사하기/심문하기

언제부터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9) 평가/교육

너는 너무 나약해. 그래서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니?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해보면 되잖아.

(10) 한 방에 딱 자르기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시끄러.
됐어, 그만 좀 해.
한잔하러 가자.

친구: 난 낙오자야.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

공감: 너 요새 많이 힘들어?

친구: 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공감: 그렇구나.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친구: 그럼.

공감: 그래서 일이 잘되서 보람도 느끼고, 하는 일이 좀 재미있었으면 하는 거지.

친구: 응. 맞아.

공감으로 듣기(Listening Empathically)

아래와 같이 말한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추측해서 쓰기.

1. 우리 식구들은 집에 들어와도 서로 반기지를 않아.

느낌 :

욕구 :

2. 내 인생에 설거지하고 애들 과외시키는 것 말고도 뭔가 필요해.

느낌 :

욕구 :

3. 요새 우리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있어.

느낌 :

욕구 :

4. 뭘 자꾸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느낌 :

욕구 :

5. 당신은 왜 매일 내가 잘못된 것만 지적해?

느낌 :

욕구 :

6. 당신은 신문보고 나면 왜 항상 어질러 놓는거야?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부부사이)

느낌 :

욕구 :

7. 우리 결혼생활 26년에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아내-남편)

느낌 :

욕구 :

8. 제발 말 좀 해봐. 당신이 말을 안 하니까 벽하고 사는 것 같잖아. (아내-남편)

느낌 :

욕구 :

9. 엄마 나 받아쓰기 시험은 도저히 100점 못 받겠어. (아이-엄마)

느낌 :

욕구 :

10. 부장님이 저한테만 책임이 무거운 일을 자꾸 시키니까 너무 힘드네요.

느낌 :

욕구 :

11. 아빠, 좀 일찍 들어오세요.

느낌 :

욕구 :

공감(Empathy)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감을 하기보다는 충고하거나 안심시키려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느낌을 설명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 마셜

공감Empathy : 서양에서는 1910년 무렵부터 이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후 1970년대에 칼 로저스를 통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약 2,300년 전에 장자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공감이란 마음을 비우고 혼신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 공감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의견이나 선입관을 내려놓고 존재presence로 들어주려는 의도intention이다. 그 의도는 상대와 그의 말을 통해 흘러나오는 삶의 에너지와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말 뒤에 있는 느낌과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에너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 현재에 있기—존재presence는 항상 현재에 있는 것으로, 공감은 언제나 현재에서 일어난다. 상대가 과거나 미래로 가는 생각을 말할 때는 그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재의 느낌으로 환기시킴으로써 현재로 돌아오게 한다.
- 상대가 무슨 말로 자신을 표현하든 공감하는 사람은 관심의 초점focus을 그 사람이 하는 말 뒤에 있는 관찰, 느낌, 필요로 하는 것, 부탁하는 것에 맞춘다.

이때 상대방 안에서 생동하는 것을 추측하면서 물어본다. 그것은 그 사람만이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임이 전해지면 상대는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더 깊이 찾아갈 수 있다.

- 상대가 자신의 고통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It's not about me!)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충족되지 않은 욕구)을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충분한 공감을 받았을 때는 대개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어본다.
- 공감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동료, 이웃, 또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나의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중요한 공감의 대상은 나 자신일 것이다. (자기 공감)
- 누군가를 공감하기가 힘들거나 하기 싫을 때는 자신이 우선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의식했다 해도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감의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 생각에 동의하거나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 술 쇼

- 마셜 로젠버그

서핑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보드를 타고 나가서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자, 그 에너지에 휩쓸려갈 준비를 하세요.

자, 여기 옵니다!

지금 그 에너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공감입니다.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에너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생동하고 있는 것과 연결할 때 나는 서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심리학을 많이 공부할수록 공감하기는 더 힘들 겁니다.

상대를 잘 알수록 공감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진단이나 과거의 경험들은 당신을 서핑 보드에서 당장에 떨어뜨릴 겁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이 순간에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과거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해주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침병!(Boom!)”, 보드에서 떨어집니다. 당신은 미래로 가버렸으니까요.

공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에너지와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 기술도 쓰지 않으면서 그냥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거기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마술쇼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주 귀중한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그 에너지에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고치려”하는 나의 습관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See Me Beautiful

Red & Kathy Grammar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 주세요.

See me beautiful
Look for the best in me
It's what I really am
And all I want to be
It may take some time
It may be hard to find
But see me beautiful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가장 멋진 것들을 찾아내 주세요.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고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 전부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내기 힘겹다 해도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 주세요.

See me beautiful
Each and every day
Could you take a chance
Could you find a way
To see me shining through
In everything I do
And see me beautiful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 주세요.
매일 매일
기회를 줄 수 있나요?
길을 찾아줄 수 있나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빛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 주세요.

There is a place

- *Wild Roses*

There is a place
Where you can always go, come with me
Where it's alright
To let your feelings show, come with me

그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나와 함께
가요. 그곳은 느낌을 그대로 보여도 괜찮은 곳,
함께 가요

What a pleasant journey, isn't very far
We can go together, stay right where you are
And now it's time to start
It's right here in your heart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 될지,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가요,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자, 지금은 떠날 시간입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There is a place,
Where you can be yourself, come with me
And it's a place,
Where you can free yourself, come with me

그곳은 자기 자신 그대로 있는 곳, 함께 가요.
그곳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곳, 함께 가요.

And you know its waiting, not so far away
Need no reservation, we can go today
And now it's time to start
It's right here in your heart

그곳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예약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늘
떠날 수 있어요.

And the light shines through each window
And the door is open wide
And each question has an answer
If you only look inside

창문마다 빛이 새어나오고 문은 활짝 열려있고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곳,
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돼요.

There is a place,
Where every sorrow ends, come with me
Where every hope and every truth begins,
come with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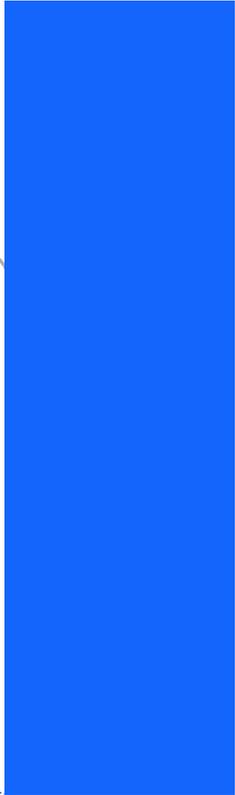
그곳은 모든 슬픔이 끝나는 곳, 함께 가요
모든 희망과 진실이 시작되는 곳, 함께 가요.

What a pleasant journey, isn't very far
We can go together, stay right where you are
And now it's time to start,
It's right here in your heart

얼마나 즐거운 여행일지,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 이제 떠날 시간
그곳은 바로 당신 가슴속에 있습니다.

And now it's time to start,
It's right her in your heart

이제 떠날 시간
그곳은 바로 당신 가슴속에 있어요.



CHAPTER
02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의 만남

호연/인권교육센터 들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의 만남

호연/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 시각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차별적 문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주의 관점과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운다.
강의 준비물	○ 전지 6장, 매직, PPT 사용 기자재
진행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몸 풀기 마음 열기 2. 여성주의 관점 이해를 위한 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만하면 여성들에게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 여성의 적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 나는 동성 결혼을 지지 한다/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돌봄 노동을 잘 한다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 이해하기 - OX 또는 중간 입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해 보기 3. 정리 강의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기
주의할 점	
강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적 관점은 무엇이고 왜 인권교육에서 중요한가를 살펴본다. ○ 여성주의, 인권 그리고 장애인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 훅스. 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 사랑. ○ 바버라 G. 워커. 2002. 흑설공주 이야기 1. 박혜란 역. 뜨인돌
기타	



인권의 세기를 연 프랑스혁명(1789)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 데 있다."

- 프랑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류 보편의 기준으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1948)

인류 가족 ○○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

○○하고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

○○와 ○○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

 독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

 인권이 ○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

 ○○○ 및 ○○○ 조치를 통하여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

1.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의 목소리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올랭프 드 구즈,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



“혁명이 여성들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여성도 인간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을 개혁하고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59-1797

<메리 울스톤 그래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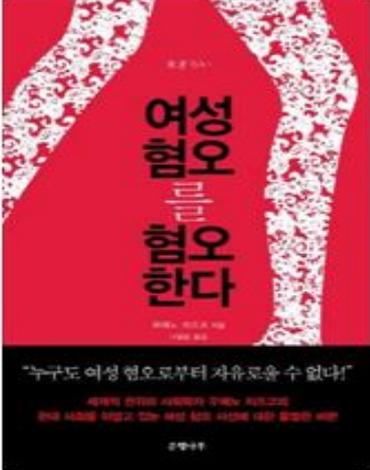
2.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가부장제는 성에 기초하여 남성 우위의 형태로 권력이 배분되고, 나아가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된 관계와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에노 치즈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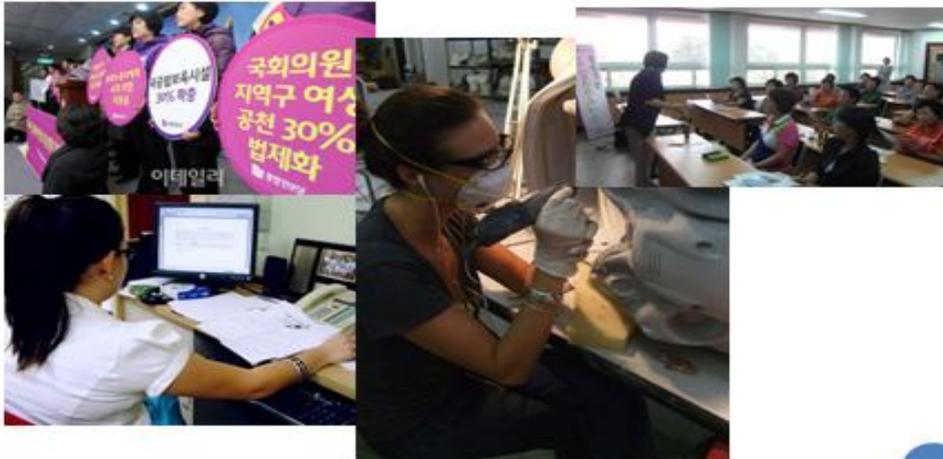
사람은 '여성'이 될 때 '여성'이라는 범주가 짙어진 역사적 여성 혐오의 모든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그 범주가 부여하는 지정석에 안주하면 '여성'은 탄생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란 그 '지정석'에 위화감을 느끼는 자, 여성 혐오에 적응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 '여성'이라는 강제된 범주를 선택으로 바꾸는 것- 그 안에 해방의 열쇠가 있을 지도 모른다
<우에노 치즈코>



타자(화)
: 남성이 여성을 보는 관점 (또는 여성이 자신을 보는 관점)을 설명.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타자였던 역사. 대상화된 여성

성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연 생물학적인 것인가?

3. 비슷함과 차이의 정치학





인종적/계급적/성적 억압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그 억압체제들은 서로를 구성하고 강화하며 지원한다. 계급이 역사에서 처음 취했던 형태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었다. 인종차별주의가 최초로 취했던 형태는 성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이었다.

- 거다 러너,
-<왜 여성사인가>



4. 인간은 여성이나 남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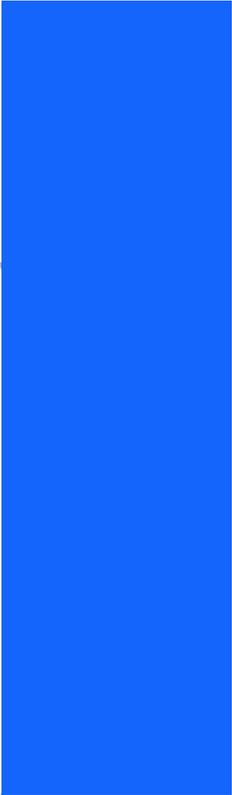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다. 성별 코드는 성차별 사회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노예 노동의 필요에서 인종이라는 범주가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이의 등장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인간의 성(sex)은 차이로서 의미를 갖는다."
- 정희진 -

5. 여성주의 입장론적 인식론



- 지식의 본질과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여성주의 설명
- 피억압자가 가진 인식론적인 이점과 입장론적 인식론의 가능성



CHAPTER
03

인권의 쟁점 속으로
- 항목별로 다시 챙겨보는 논쟁적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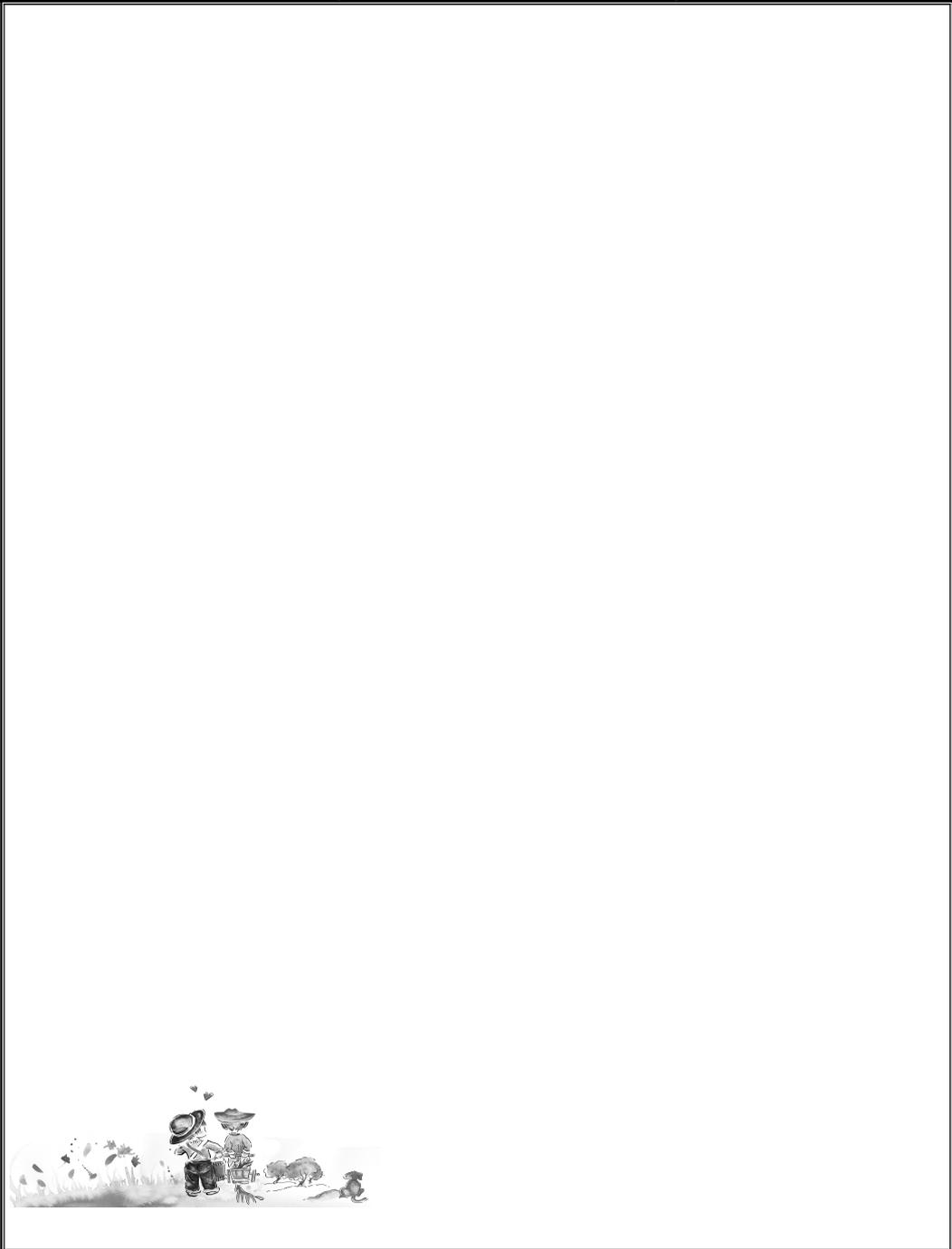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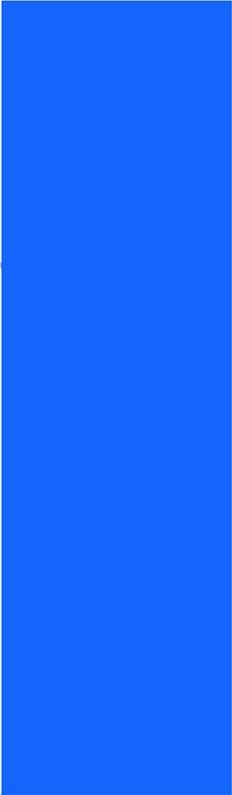
인권의 쟁점 속으로(“인권대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묘랑 /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상상할 수 있다. ○ 쟁점적 권리들을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본다. ○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이해한다. 					
강의 준비물	○ 전지, 매직, PPT 사용 기자재					
진행 내용	<p>① 모둠별로 아래 다섯 가지 열쇳말 가운데 관심 있는 열쇳말을 하나씩 선택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마음(목소리)의 자유</td> <td>몸의 자유</td> <td>사회경제적 존엄</td> <td>평화적 생존</td> <td>저항과 불복종</td> </tr> </table> <p>② 각 주제별 인권대회가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회에 반드시 초대받아야 할 구체적 인물(각 주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을 떠올려보고 전지에 그려 넣는다. 예) 평화적 생존 :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난민들</p> <p>③ 초대장을 받을 인물들이 손 피켓이나 손 깃발을 들고 온다면 어떤 권리 주장을 담은 요구를 써서 올리 생각해 보고 ‘~할 권리’로 간단히 적어본다.</p> <p>④ 모둠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모둠의 전지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보완한다. ✓ 이 대회에 더 초대받아야 할 사람은 없나요? ✓ 이 대회에 이 사람은 왜 초대되었을까 싶은, 가웃겨려지는 피켓(또는 깃발)을 든 인물은 누구인가요? ✓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피켓(또는 깃발)은 없나요?</p> <p>⑤ 다른 모둠의 작업 전지를 모두 살펴보고 보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p> <p>⑥ 모둠별 작업 결과를 살펴보면서 ‘논쟁적 권리’로 지목받은 권리들에 대해 추가 토론을 진행한다. 예) 지적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선거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할 경우 오히려 시설장 및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도 모두 투표를 해야 하나?</p> <p>⑦ 진행자가 추가로 던지고픈 쟁점적 권리가 있다면, 추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본다.</p>	마음(목소리)의 자유	몸의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	평화적 생존	저항과 불복종
마음(목소리)의 자유	몸의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	평화적 생존	저항과 불복종		
주의할 점						
강의 정리	○ 인권과 관련한 현실에서 참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권리들(인권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보고 정리함.					
기타						

M E M 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memo. At the bottom left corner of the box, there is a small, stylized illustration of a person wearing a hat and a dog, possibly a guide dog, in a field with some plants.



CHAPTER
04

장애인 인권의 이해

-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다시 연립으로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다시 연립으로

김도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정립(正立)에 대하여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서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이 본격화된 후 대략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장애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재활(rehabilitation)’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굳건하며 또 강력하다. 이러한 재활에 대한 지향은 197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사회 이용시설—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이름이 바로 ‘정립회관(正立會館)’인 것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부정(不正)한 존재이자 또한 부정(不淨)한 존재인 장애인을 정립(正立)하게 만들고 정화(淨化)시켜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재활이다. 재활은 장애를 가졌다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기약 없는 통과의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왜 재활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 살아왔던 200만여 년의 시간 속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과 범주가 최초로 발생했던 300~400백 년 전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의 태동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형성기, 즉 본원적 축적기는 토지에서 쫓겨났지만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했던 소위 ‘부랑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였다. 느리고 자율적이며 유연한 형태의 노동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맑스(Karl Marx)가 『자본』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자면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부랑자가 되었는데, 이들을

임노동 관계로 포섭하기 위해 국가는 강제 수용과 훈육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구빈원(workhouse)은 사실 바로 이러한 강제 노동과 결합된 수용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구빈원에서는 일정 시점부터 효과적인 훈육과 나태의 방지를 위해 수용된 부랑자들을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bodied)’과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bodied)’으로 구분하게 되며, 이로부터 ‘장애인(disabled people)’이라는 범주가 발명된다. 요컨대,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생겨난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근대의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배제 당해온 사람들, 즉 ‘불인정 노동자(不認定 勞働者, Unacknowledged worker)’ 집단을 가리켰던 개념인 것이다.³⁾

이러한 폭력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자본주의 체제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으로, 즉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에 따르면 본래적인 의미에서 결코 상품이 될 수 없는 토지와 화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말이다.⁴⁾ 손상된 상품은 (충분한 사용가치가 있을지라도!) 교환가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수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폐기처분되지 않으려면, 헐값이라도 팔리려면 말이다. 노동이 인간의 몸과 분리될 수 없다고 했을 때, 손상된 노동력 상품인 장애인도 수선의 과정을, 즉 재활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받는다. 무미건조하게 말하자면, 재활은 손상된 노동력 상품을 재활전문가라는 수리공에게 맡겨 수선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2. 자립(自立)에 대하여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아닌 무산대중(proletariat)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어야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자활(自活)’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게으르고 무능력

3)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p. 72

4)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홍기빈 옮김, 길, 2009.

하며 의존적인 존재라는 낙인이 부여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존적’이라는 비난이 겨냥했던 핵심적인 지점, 혹은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 자체에서 배제되어 재활이라는 영역에 편입된 장애인에게는 이와 연동되지만 한층 더 생의학적(biomedical)이고 기능적인 의미에서 의존적이라는 낙인이 부여되어 왔다. 비정상적인 신체를 지닌 장애인은 혼자 일어나고, 씻고, 요리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용변을 보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존재는 다 할 수 있는 자기 돌봄(self-care)의 활동을 비정상적인 존재인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재활이란 그러한 ‘비정상적’인 존재인 장애인을 ‘정상적’인 존재로 탈바꿈시켜 내는 것, 즉 그들의 신체와 삶을 정상화(normalization)시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신체-노동활동-일상활동’이라는 일련의 연쇄적 맥락 내에서 장애인들은 ‘의존적’이라는 낙인을 부여받고 억압을 겪어왔기에, 자립이라는 목표와 지향은 마치 독재 시대의 민주주의만큼이나 강력한 열망과 결집력을 부여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의 선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립의 개념을 의료적이고 기능적인 정의에 따른 자기 돌봄의 수행이 아니라 “표준적인 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마음의 과정”(주디 휴먼)으로,⁵⁾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마이클 올리버)으로⁶⁾ 전환시켜낸다. 또한 이러한 자립 개념의 전환에 따라 전미자립생활협의회(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NCIL)는 자립생활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 자립의 핵심이 된 것이다.

5) Judy Heumann, “Independent Living Movement”, <http://www.disabilityexchange.org/newletter/article.php?n=15&a=134>. Berkeley, CA, August, 1977.

6) Michael Oliver, *The Politics of Disablement*,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0, p. 91.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자립 개념은 근대적인 주체 중심의 철학을 확립해낸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코기토 개념(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및 몸과 마음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자립생활운동이 재정립해낸 자립의 개념도 의료 중심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한계는 넘어섰지만, 근대 서구사회의 인간 중심적이고,7) 이성 중심적이며,8) 개인 중심적인9)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의 과정’에서 비발달장애인과 차이를 나타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문제에서는 일정한 딜레마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10)

3. 연립(聯立)에 대하여

‘고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孤: 홀로고)’와 ‘독(獨: 홀로독)’은 유사한

- 7)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나르시시즘적인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는 인간/비인간(자연)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인간을 다시 인간다운 인간(인격체)/인간 이하의 인간(비인격체)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인간중심주의는 자연(환경)에 대한 대상화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인간에 대한 공격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민족주의가 타민족에 대한 혐오만이 아니라 자민족 내에서 순수한 혈통과 오염된 혈통의 가려내려는 민족정화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생학 사상에 기반을 두었던 나치즘은 이의 극단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 근대적 인격 개념에도 각인되어 있는 이러한 이성 중심주의는 권리의 주체 역시 ‘이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의 담지자로 취급되지 않은 노예나 식민지 원주민, 이성적 존재가 아닌 감성적 존재라고 치부된 여성, 이성이 미성숙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아동, 이성의 작동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정신적 장애인(정신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는 역사가 쓰여 왔던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지만 사실상 인간 이하의 인간, 즉 비인격체(non-person)로 취급되어 왔다고, 혹은(특히 정신적 장애인과 아동의 경우) 여전히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 철학자 김상봉은 데카르트 이래로 근대 서구철학의 주체 개념에서 확립된 이러한 개인 중심성을 ‘홀로주체성’이라는 맥락에서 비판하며 ‘서로주체성’을 주창한다. 그가 말하는 서로주체성은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연립’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주체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길, 2007을 참조하라.
- 10)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도 않거나 무시한 채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난 정신은 멀쩡한데 사람들이 자꾸 지적장애인 취급을 한다”며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이러한 딜레마와 혼동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고립’과 ‘독립’도 사전적으로는 다른 의미이지만 맥락적으로는 유사한 함의를, 즉 ‘홀로 서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독(獨)’과 ‘자(自)’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독립’과 ‘자립’도 유사한 함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 처음 Independent Living이 소개될 때, 이를 자립생활로 할 것인가, 독립생활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독립생활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생활센터라’는 이름의 단체들도 제법 존재한다. 그렇다면 고립과 독립이 같은 맥락에 있고, 독립과 자립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결국 고립과 자립도 유사한 함의를 지니며,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자립생활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통합’과 ‘고립’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임을 생각하면 명시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과 개인의 선택권(choice)이라는 이념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무비판적이거나 다소간 동조적이기까지 했던 서구 자립생활운동의 오류와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의 일부 흐름을 보면, 그리고 ‘자립’이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자활’과 연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자립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에 포섭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립/의존이라는 이분법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공백이나 한계에 대해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은 ‘개인성(individuality)’이나 개인의 능력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관계성(sociability)’이 (인간의 자격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격(personhood)에 있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동쪽의 섬나라인 바베이도스(Barbados)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율적임을 증명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독립적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집단의 조화는 구성원들 각각의 기여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구성원이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도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¹¹⁾

즉 동시대에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적인 문화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바베이도스 사회에서는 자율/자립/독립이라는 개념이 의존과 대립적인 무엇이 결코 아닌 것이다. 마치 인권의 두 축인 자유와 평등—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것처럼 묘사되는—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은 의존이 하나의 낙인으로서 존재하는 사회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 존재론에서 원자화된 개인은 개체가 지닌 능력의 확장과 경쟁이라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러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을 때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¹²⁾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간(人間)’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론을 나타낸다. 즉 원자화된 개별자로부터 출발하는 근대 서구의 주류적 존재론과 달리, 동양의 관계론적 존재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間’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존재임을 의미하며, ‘人’자는 필연적으로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존재자임을 표상한다. 결국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의지하는’ 존재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존재 형태는 우리 자신의 일상을 조금만 돌아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필자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컴퓨터, 책상, 의자, 스탠드, 물 컵, 그 물 컵에 담긴 생수, 내 입에 물려 있는 담배는 물론이고, 내가 입고 있는 옷, 점심에 먹었던 쌀과 김치와 반찬들, 그리고 이 부족한 글을 쓰기 위해 들춰보았던 책에서 얻었던 지식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은 없다. 그 모두를 타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인은 고독하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분해시켜버렸고(또는 그렇게 표상해 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폐를 매개로 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관계로 치환해 버렸으며, 이를 통해 의존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존·의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dependence(또는

11) 베네틱테 잉스타수잔 레이놀스 화이트,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김도현 옮김, 그린비, 2011, p. 34.

12)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p. 89.

reliance)가 ‘신뢰·신용’라는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 간에는 당연히 일정한 맥락과 연계성이 존재한다. 즉 우리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대상을 신뢰할 때 (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저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의자에 몸을 의지할 수 있다. 서울의 수도물을 신뢰하지 못하니, 서울 사람들은 식수를 ‘아리수’에 의존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말을 믿을 때, 나는 그/그녀의 말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의존이 부정적인 하나의 낙인으로서 존재하는 사회란 곧 인간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신뢰 관계를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 관계가 대체해 버린다. 즉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있다’는 것은, 지불해야 할 돈을 제때 잘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용등급이란 이러한 돈의 지불능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자립/의존(independence/dependence)이라는 이분법은 정상/비정상(normality/abnormality)이라는 이분법과 일정한 동형성을 지니고 있다.¹³⁾ 즉 정상인(비장애인)이 비정상인(장애인)을 상정한 후에야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자립적인 존재자란 먼저 의존적인 존재자를 상정한 후에야 이야기 될 수 있으며, 자립=정상/의존=비정상이라는 구분 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또한 좀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대부분의 이분법적 대립항은 사실 A와 B를 말하는 게 아니라 A와 not A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이원론이 아니라 A라는 한 가지 기준만이 존재하는 일원론이기 때문에, 어느 한

13) 영어의 ‘stand on one's own two feet’이라는 표현—축어적으로는 ‘자신의 두 발로 서다’로 옮겨질 수 있는—은 ‘자립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정상적 신체성과 자립이라는 도덕적 가치 간에 존재하는 신체화된 은유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자립이라는 가치는 정립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신체화된 은유를 통해 드러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는 Jackie Leach Scully, “Disability and Thinking Body”, eds. Kristjana Kristiansen, Simo Vehmas and Tom Shakespeare, *Arguing About Disabi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 London and Lew York: Routledge, 2009, pp. 68~70을 참조하라.

14) Steven R. Smith, “Social Justice and Disability”, eds. Kristjana Kristiansen, Simo Vehmas and Tom Shakespeare, *Arguing About Disabi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 London and Lew York: Routledge, 2009, p. 19.

쪽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흔히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 개념적으로 앞면의 반대는 뒷면이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분명히 반대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실체를 다른 쪽에서 바라본 것일 뿐이기에 언제나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동전의 뒷면을 바라본다고 앞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앞면이 사라지려면 동전 자체를 녹여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분명히 사전적으로는 반대 개념이지만, 우리는 또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왜 그럴까? 잘못된 사랑을 깨고 싶다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미움이라는 이분법의 틀 ‘바깥에’ 있는 감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관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작금의 환경 ‘파괴’가 과연 환경 ‘보호’라는 구호로써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환경 파괴와 환경 보호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반, 즉 개발과 성장의 페러다임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의 귀신은 말한다. ‘빨간색 휴지 줄까? 파란색 휴지 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휴지를 선택하든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고 만다. 왜? 그건 귀신이 정한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려면, 우리는 휴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¹⁵⁾ 좀 찻찻하더라도 ‘됐거든’이라고 쏘아주고 얼른 화장실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아니면 얘기해야 한다. ‘나는 손이 불편해서 휴지를 쓰기가 어렵거든. 그러니 비데를 줘’라고 말이다.

장애인운동의 목표는 비정상인 존재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비정상이라는 이분법과 그 틀을 해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의존적인 존재를 자립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존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자립/의존이라는 이분법이

15) 이와 관련해서는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나영 옮김, 삼인, 2006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들의 프레임 내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없다. 관건은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해체되었을 때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가 바로 ‘함께 어울려 섬’, 즉 연립(聯立, interdependence)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립/의존이라는 이분법적 대당을 넘어, 홀로 서기도 낙인화된 의존도 아닌 함께 서기로서의 연립생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립은 또한 사회적 존재이자 ‘사이존재(Zwischensein)’¹⁶⁾인 인간에게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然) 존재함(立)의 형태, 즉 연립(然立)이기도 할 것이다.¹⁷⁾

4. 교육권 다시 생각해보기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된지 오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72.5%) 30세 이상 성인 3명중 1명이 고등교육을 받은(32.4%) 나라이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그러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들 중 45.5%(2005년 45.2%, 2008년 49.5%)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즉, 둘 중에 한명은 학교를 아예 안 다녔거나,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었거나,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녔을까? 이미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94년에는 한차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육도 일반 교육 과정에 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였으며, 2007년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심지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규정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자체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 마르틴 부버, 『인간의 문제』, 윤석빈 옮김, 길, 2007.

17) 물론 정립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단절’이었다면, 자립에서 연립으로 전환은 그 성과와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하게 쇄신해내는 ‘계승적 발전’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교육적으로 특별한 필요(special need)’를 지닌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학문의 영역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만 분리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만든 것을 ‘특수학교’라 하고,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일반학교 내에 설치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투쟁이 한창 벌어지던 당시의 『2005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142개 특수학교와 4,676개 특수학급 등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58,362명인데, 이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추정 인구 230,045명의 25.4%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즉 특수교육기관이 절대 부족으로 학령기 장애인 4명 중 3명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정부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교육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며 이에 호응해 왔는데, 왜 유독 장애인들 교육으로부터 배제를 당하며 국가는 왜 이것을 문제시하는 않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교육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근대 국민국가는 왜 공교육(公教育)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지부터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의미는 지닌다. 첫째, 사회학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흔히 군대, 경찰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 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고 부른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 ‘건전한’ 생각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종교가 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종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둘째,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본(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인데, 인적자원(人的資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 자원의 하나로 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업에게 쓰일만한 인적자원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 교육의 역할임을 아주 제대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해주는 명칭이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필요에 의해 국가는 교육을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규정하고, 공교육 체계를 통해 교육을 제공(혹은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왜 여기에서 배제되고 방치되는가? 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다. 건전한 국민을 만든다는 것은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주체는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미 무능력화 되어있는(disabled) 장애인들은 교육을 통해 강제하지 않아도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집단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권한강화(empowerment: power to the disabled people)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2/3에게 노동의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쓸 만한 노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노동 자체의 혁신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노동권 다시 생각해보기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정부에 이러 저러한 투쟁 요구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보통 한국보다 장애관련 정책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외국의 사례를 함께 정리해서 첨부하곤 한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관료들이 잘 알아먹지도 못하고, 생떼를 쓴다고 필필 뛰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영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은 35.5%이다. 즉 3명 중 1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고용률은 소위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이자 장애 정책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통계마다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장애인’이라는 근대적 범주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던 바로 그 국면 속에서 다소

역설적으로 노동이 지닌 역사성을 읽어낼 수 있다. 즉 그들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규정되어야 했다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코 초역사적이거나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자. 주변의 동료들은 종종 필자를 보고 워커홀릭(workaholic)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내가 '노동' 중독자란 것인데,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얘기가. 노동의 가장 간결한 사전적 정의는 '몸(육체와 정신)을 움직여 일을 함'이지만,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동이란 이것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어떠한 활동을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대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활동→가치의 인정→대가의 제공'이라는 계열 내에 있는 활동만이 노동인 것이다. 대학 졸업 후, 나는 늘 무언가 꿈지락 거리고 애를 써가며 일을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공단이 내가 노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24개월 정도에 불과하니, 나머지 기간에 나는 사회적으로 보자면 '놈팡이'로 지낸 셈이다.

이렇게 내가 '워커홀릭 놈팡이'라는 역설적 존재가 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대개의 경우 '자본의 이윤 창출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즉 그들이 '불인정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노동이 이윤 창출의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동력 상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 '가치'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해왔던 활동도 충분히 공인(公認)된 노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의 노동도 새로운 지평 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한 일은 큰 범주에서 보자면 교육활동과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아학에서 성인학생 분들을 가르쳤으며, 장애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법률들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로는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내가 해온 정치활동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공식적인 정치활동보다 가치가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과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약 4년 정도 사람들 밥해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는데, 이 땅의 많은 누이들과 어머님들이 가족들—가족도 사회구성원이다!—을 위해 매일 같이 해온 가사활동이 내가 했던 일보다 가치가 없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해온 교육활동과 정치활동,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 가사활동도 당연히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은 대충 좋은 거 같긴 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찌하자는 얘기일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단기적’ 구상은 대충 이렇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러 저러한 공약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곤 한다. 좌파적인 구상이나 정책도 우파 보수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다들 이상하게 망가져서 튀어나오곤 하던데, 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는 우파적인 맥락에서 소위 ‘자활’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근로’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정책을 한번 좀 좌파적으로 망가뜨려서 리뉴얼을 해봤으면 싶다. ‘공공’이나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은 건 죄다 없애버리려 하는 요즘 추세에서 보자면, 이 정책들은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윤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 공공이 대가를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전혀 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러한 일을 통해 제공되는 대가가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연명을 하기에만 간당간당한 수준이라는 것. 둘째, 그러한 공공적(사회적)인 일자리의 목록에 들어가는 활동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

그래서 필자는 이 두 가지 지점을 확 바꿔서 공공시민노동이라는 이름으로¹⁸⁾ 새롭게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공공시민노동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첫째, 노동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교육의 예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시장의 영역에 상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권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이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거나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민노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공공시민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2011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저 약 150만원)에서 정해진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시민노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제3섹터’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위들과 공공시민노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 자신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단위 및 개인이 신청한 일(자리)이 공공시민노동에 합당한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꾸러지는 ‘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물론 이러한 위원회에는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인·이주민·청소년 등의 소수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위원들이 2/3 이상 참여를 하며, 그 심의 기준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풍요로움에 기여’를 하는지가¹⁹⁾ 될 것이다. 물론 위원회와는 별도로 이러한 업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공공시민노동청’도 중앙과 지방에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능력에 따라

18) ‘공공시민노동’은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사용한 ‘시민노동’ 개념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다. ‘시민노동’ 자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울리히 벡,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 생각의 나무, 1999를 보라.

19)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생존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노동이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되며, 그/그녀의 생존(활동)은 그/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정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고'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또는 남성)의 가사활동도 새롭게 그 가치를 공인받을 수 있으며, 현재 광범위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민노동의 적용 집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동에 대한 정의와 관념이 일정하게 재구성 될 수 있다면,²⁰⁾ 그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의 전면적 도입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그리고 이러한 때만이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만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놀이'가 아니라,²²⁾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민권'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장애등급제 다시 생각해보기

장애등급제란 장애인들을 생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손상 및 기능 상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렇게 등급이 매겨진 장애인들을 국가에 일괄적으로 등록시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기준은 1982년에 마련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대한 개정 투쟁이 한창 벌어지던 1988년 11월부터 장애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20)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유행해 왔다. 필자는 진보의 재구성이 '노동의 재구성'을 수반해야 하고 수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계급적 환원주의로 오해되거나 확대 해석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노동의 재구성은 진보의 재구성에 있어 충분조건이 아닌 하나의 필요조건,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21) 노동의 재구성 전략과 기본소득 전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6장 장애와 노동을 참조하라.

22) 공지영, 『의자놀이: 공지영의 첫 르포르타주, 쌍용자동차 이야기』, 휴머니스트, 2012.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쟁점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을 통해 장애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나 복지 급여들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면서, 장애등급제가 지닌 폭력성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등은 2급까지만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서비스나 급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내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그러한 서비스와 급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즉 투여해야 할 예산이 늘어나자 장애등급심사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하락하고 있다(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실시된 총 9만 3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급이 하향조정 된 비율은 36.7%이며, 상향조정된 비율은 0.4%에 불과함). 결국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을 장애인으로 재생산해내는 강도 높은 규율권력이자 기계장치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장애등급제라는 게, 시선을 조금만 넓게 잡아보면 얼마나 낯설고 폭력적이며 또 기이한 제도인지 금방 깨닫게 된다. 인류의 역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몸에 어떤 먹거리처럼 등급을 매겨 관리했던 적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즉, 우리는 여러 부족 사회들의 문화나 의례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만큼 이례적인 제도도 없는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많이 배껴왔는데, 장애등급제도 그렇게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장애인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제도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장애등급제가 발생한 것은 현재의 ‘장애(障害)’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쓰였던 ‘불구(不具)’라는 용어와 무관하지 않다. 불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이전,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쓰였던 용어이다. ‘불구’는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의 몸을 불구라고 표현했을 때, 그 갖추지 못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바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신체조건’이었다. 즉, 불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낳은 상당히 군사주의적인 용어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장애인 말고도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군대로의 징집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남성들의 몸에 이러한 등급을 매긴다. 장애등급제란 바로 이렇게 군사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맥락 안에 놓여 있는 제도인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장애인들에게 각종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분들도 등급제가 없다면 각종 면제 및 감면 혜택(지하철 무료 승차, 철도·항공 등의 요금 할인, 전기세·수도세·가스요금 등의 감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그 대안은 무엇일까?

사실 외국에서도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용어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중증장애인법은 ‘근로능력 상실률(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 MdE)’—현재는 같은 기준을 용어만 ‘장애의 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로 변경함—을 기준으로 해서 MdE(GdB)가 30%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 이상인 경우 최종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어권에서도 장애의 정도를 표현할 때 단계별로 ‘mild : 경도(輕度)’, ‘moderate : 중등도(中等度)’, ‘severe : 중도(重度)’, ‘profound: 최종도(最重度)’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사람의 몸에 획일적으로 매겨진 등급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 영역에서 그 사람이 겪는 불리함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 정도는 노동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직업적 장애(職業的 障礙, work disability)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여타의 사회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장애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도/중등도/중도/최중도라는 구분도 특수교육적 서비스나 지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용어가 일상생활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미 그 필요도를 측정하는 자체적인 기준과 사정(assessment) 도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이 사정 도구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지원, 그리고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소득지원의 영역 대해서는 직업적 장애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장애 정도 구분도 복잡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접적 소득지원(장애인연금), 간접적 소득지원(각종 면제 및 감면 혜택) 등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현재로서는 직업적 장애 정도도 이러한 구분만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그리고 일본)처럼 장애 인구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국가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장애관련 통계나 문헌들을 보면, 그 영역과 연구 주제에 따라 장애 인구의 수치가 다 다르게 잡힌다(국제기구에 제출되는 미국의 장애 인구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상의 장애급여를 받는 장애인구일 뿐임). 더 나아가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아예 장애인구가 몇 명인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고, 따라서 국제기구에도 장애인구 통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란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특질(trait)'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상태(state)'라는 관점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정된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상황에 장애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 뿐인 것이다. 결국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장애인의 필요(need)를 무시한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바꿔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며 : 사회통합 다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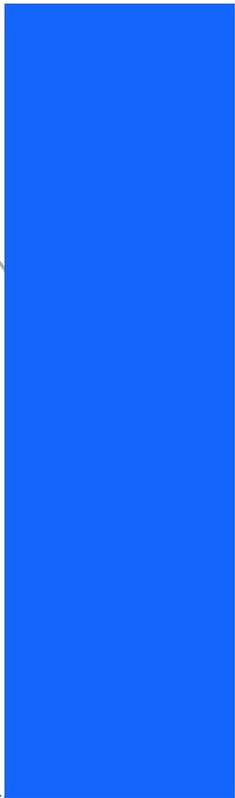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구획과 규정들, 그리고 이름 짓기(naming)에 대한 비판에 있어 그 핵심은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 문제 해결의 대원칙처럼 얘기되고 있으며, 누구도 별 이의를 달지 않는 방향성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실현이 아닐까 싶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철저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그 역방향으로의 진진인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조금 더 날카롭게 버려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 통합이 어떠한 조건에서 누가 누구에게로 통합됨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개념,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이념은 결국 비주류인 장애인이 주류인 비장애인의 사회에, 비정상인 장애인이 정상적인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통합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고통과 딜레마를 안겨 줄 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장애인 주체의 노력 속에서 일부의 장애인은 '정상화'되어 비장애인의 삶과 함께 흘러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의 장애인은 여전히 그 외부에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잘 해야 장애인 대중 전체에 대한 새로운 분할과 이에 기반을 둔 더욱 공고한 배제가 만들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이라는 구호 속에서 여성은 남성이 차지했던 세계로 편입되고 있지만, 남성도 여성이 머물렀던 공간으로 함께 진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공사(公私) 분리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성적 분업 구조 속에서 기존의 성 역할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슈퍼 우먼'이 되기를 강요받아왔던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 역시 장애인의 몸이 지닌 차이와 경험을 고려한 속에서 비장애인의

세계와 장애인의 세계의 상호 통합의 과정이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정의와 관념,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라는 속도의 문화는 전면적인 혁신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비장애인이 지금까지 건설해온 문명 중 장애인에게 가장 적대적인 문명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거쳐 가야만 할 것이다.

1960~1970년대 일본의 급진적 장애인 운동에서 핵심을 형성했던 푸른잔디회(靑い芝)라는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의 「행동 강령」 중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들은 비장애인의 문명을 부정한다”이다. 근본주의와 분리주의에 기반한 극단적 입장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러한 강령은 앞의 설명과 결합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결코 극단적이지 않다. 극소수의 국지적인 사례를 논외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은 비장애인 중심의 문명이었다. 즉 이러한 강령은 자본주의 문명이 비장애인 중심의 문명 중 마지막이 되어야함을, 새롭게 건설될 세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설해나가는 문명이 되어야 함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CHAPTER
05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 1
-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박옥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 1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 실제적인 사례의 모듈별 역할극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살펴본다.
강의 준비물	역할극 사례 5개, A4색지(연한 색), 크레파스, 가위, 풀, 스키테이프, 프로젝터, 노트북
진행내용	<p>① 도입부에 참여자 각자가 “내게 이용자는 00이다. 왜냐하면...하기 때문이다.” 1/2A4에 적어서 각자 발표한다.</p> <p>② 시설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사례 5개를 모듈별로 나눈다. 사례는 ■ 이용자의 개인의 안전 등 ■ 이용자 개인의 사적 삶 보장 ■ 장애인의 의사표명 ■ 타인과의 공생관계 ■ 사회적 규범의 유지 ■ 물리적 환경의 보장 ■ 장애인과 종사자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사례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듈별로 인권 딜레마 또는 인권 상황을 확인하여, 인권의 시선으로 사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 간단한 시나리오와 배역 배분으로 역할극을 만들어 발표한다. 사전에 모듈별로 역할극에 필요한 등장인물을 표시할 수 있는 도구(A4용지 등)를 미리 준비하여 모듈에 배치한다. - 역할극을 마친 후, 역할극을 맡은 사람들의 느낌을 공유하고,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함께 공유한다. 이후 각 참여자들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비슷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p>③ 시설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자기결정권 관련 사례를 확인하고 대응의 방법들을 생각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경험한, 혹은 알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1/2A4 색지에(연한 색) 또는 포스트잇에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경험 또는 들은 이야기를 단어로만 표기하여 칠판에 붙인다. 붙여진 내용을 참여자가 자신의 것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이 내용을 그룹핑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형별·부문별 어떤 사안이 있는지를 서로 확인한다. - 그 중 3-4가지 사안에 대해 대응한 활동을 공유한다.
주의할 점	○ 인권의 문제인지, 딜레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강의 정리	○ 시설에서 나타나는 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대응하는 방법들을 PPT를 통해 마무리 강연을 한다.
읽을 거리	시설이용자의 인권, 여준민, 201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례 1

평소에 A씨는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표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치실, 물치실” “옷방, 옷방” “모자, 모자” “콜라, 콜라, 라면”이라고 표현하면 물리치료실과 피복실에 놀러 가고 싶다는 표현이라 교사가 알아듣고 다녀오도록 합니다. 모자를 쓰고 놀러갔다 오고 표현하고 콜라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하면 교사가 정확한 언어로 이용인의 욕구를 되묻고 욕구를 들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래서 평소 교사와 라포 형성도 잘 되어 있고 같은 방 식구들과 잘 지내는데 목욕 지도 후 옷을 입혀 드리면 꼭 옷도리를 찢고 하지 못하도록 말리면 교사를 물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일단 옷 찢는 것을 막고 교사가 다른 일을 하면 어느 틈인가 옷을 찢고는 찢은 부분을 본인이 다시 묶어놓습니다. 교사가 다시 찢은 옷을 갈아입히면 교사 몰래 옷을 찢어서 입고 있습니다. 옷 찢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신문지 찢기 놀이를 해 보고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면 찢는 행동이 감소 될 것 같아서 자신이 찢어버린 옷을 세탁 후 마음껏 찢도록 옷을 주었으나 외면하고는 꼭 새로 갈아입힌 옷만 찢어서 매듭을 지어 입고는 안정이 되는지 밝게 웃으면서 평온한 모습으로 잘 지냅니다. 이 이용인분은 옷을 찢은 후 자신이 매듭을 지은 옷을 입어야 안심이 되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입힌 옷마다 찢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옷을 찾기 힘들고 매번 새 옷을 사 줄 수도 없고 고민이 됩니다. 교사가 모르는 사이에 옷을 찢고 이 옷을 입고 원내를 다니실 때 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다른 방 교사, 자원봉사자 등)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행여 외부 손님이 왔을 때, A씨를 보게 된다면 마치 폭력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목욕 후 옷을 입을 때 찢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2

C씨는 22세의 지적장애 3급 경증장애인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1년간 직업재활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재미가 없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외부취업을 해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본인의 꿈은 놀고 먹는 노숙자가 꿈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출을 한번 경험한 후 시설퇴소를 희망하여 공동생활이나 다시설로의 전원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고 또다시 무단가출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가 심한 상태인데도 약을 바르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또 약을 발라주어도 바로 씻어서 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만드는 편이며, 약에 대한 불신이 큼(발라도 낫지 않고 더 따갑기만 함) 본인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약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는 피가 배여 나오고 범위도 무척 넓어지고 있어 보기에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약을 강제적으로 발라주어야 되는 것인지(강제로 도포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방을 나가버림) 아니면 본인이 감수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3

D씨의 잦은 생활실 이탈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문을 열쇠로 잠궈서 무단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자나 이용자의 가족방문 시 문의 잠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출입이 힘들고 방 안에서 갇혀 있는(?) 이용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니 고민이다. 가끔 산책을 하거나 방을 열어 놓기는 하나 이전 다수의 이탈사고와 근무자의 사고 불안감으로 자주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 출입문 앞에 표찰을 설치하여 사전 출입문 잠금 사실을 공지하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렸고, 출입문에 넘어갈 수 없는 높이의 나무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D씨는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다.

본 생활실은 거주인의 예상치 못한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인)
 ○○○○ 원 장 (인)
 보 호 자 (인)
 인권지킴이단 위원장 (인)

사례 4

이용자 E씨(지체장애/보행가능)는 최근에 같은 방 거주인 O씨(지체장애/휠체어사용하며 팔에 힘이 없음)를 때렸다. 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O씨의 머리를 힘껏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직원이 보고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는데 직원 앞에서도 O씨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직원의 중재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했는데 오후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치질을 하고 있던 O씨의 머리를 힘껏 때리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 때리려고 팔을 휘두르는 행동을 해 장소를 옮겨서 E씨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팔에 여러 군데 꼬집혀 상처가 나고 다리에 차여 멍이 들었다. E씨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발음은 부정확하나 의사소통은 원활하다. 평소에도 직원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말로 표현하므로 대화로써 중재가 가능한 이용자이다. 명절에 집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데리러 안 오실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전에도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예를 들면 직원에게 꾸중을 들었다든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다든지 등) 힘이 없는 거주인들을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로 견지 못하고, 힘이 없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주인들을 때리곤 하는데 때리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사실 화가 난다. 그 순간은 E씨가 밋고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므로... 주로 그 대상이 같은 방에 사는 O씨였는데 O씨는 E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어린 E씨에게 맞고만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앉아서 생활하고 팔에 힘이 약함)를 최근에는 매우 속상해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때리지 않게 해야 할까?

사례 5

F씨는 시설 내 이용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지체장애를 가진데다가 상당한 실력으로 이용자들이 인권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권위원장직을 내놓으려 한다. 그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고 자꾸만 회피한다. 시설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F씨가 인권위원장이 된 이후에 시설에 발생하는 이용자 인권 문제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이용자 인권위원회의 주장이 시설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심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F씨는 한편으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활동하지 않겠다고 한다. 내가 담당하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자꾸만 물어봐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다른 이용자들은 여전히 F씨가 이용자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 6

28세 여성 뇌병변 장애인으로 무정위성 운동장애가 있으나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어눌하긴 하지만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거주시설에 있으나 보호자가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가정복귀도 종종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거주인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다. 보호자는 거주인이 많이 아픈 ‘애기’이므로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며, 자립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므로 절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인은 주변 다른 친구들이 자립생활훈련을 하면서 체험 홈 활동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나가고 싶어 하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생활재활교사 및 같은 생활 실 다른 이용자에게 풀고 있다. 거주인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야 할지 시설에서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사례 7

시설 장애인 당사자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 1명이 6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고, 각 개인의 특성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삶 주체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직원에 의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삶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기관에서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활재활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소진되고, 힘이 듭니다. 결국 이는 직원의 이직으로 연결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주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이 시설 장애인에게 더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요?

<읽을거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권리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름의 가치와 인권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갖는 기본적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노동자권리, 여성권리, 아동권리, 장애인권리, 청소년권리, 이주노동자권리, 성수수자권리 등 특수한(사실 특수하기 보다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요) 상황에 처하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별도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역으로 살펴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품위있고 존엄한 존재이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과 위치 때문에 침해당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원치 않는 각각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사실이기 이전에 진리지요?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세상의 이치입니다. 똑같은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피부색, 민족, 국가, 신체적 특성(장애와 상관없이 외모, 키, 몸무게 등 포함), 정신적 특성, 나이, 성별, 성적체성, 지역,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좋아”란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재미없겠지요? 모든 것이 같다면 말입니다. 사람살이란 서로 다른 나와 너가 만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람’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다름’이 가진

풍요로움은 삶의 깊이와 넓이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혹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것 일수 있고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아 질 수도 있으며, 두려울 수도 있구요.

요즘처럼 효율과 경쟁이 우선되는 세상은, 익숙하지 않으면 어느새 ‘배제’와 ‘외면’, 그리고 ‘구분’ 짓기를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마치 “나 하나 제대로 숨 쉬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라며 속으로만 울부짖으며 앞만 보고 내달리는 형국 같습니다. 숨이 가쁜데 숨 쉬려 나갈 수 있는 방법조차 혹은 갈 곳조차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거나 무력감에 포기하고 마는...

효율과 경쟁이 우선되며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사회분위기와 현상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낭만과 자유, 행복과 자존감 같은 아름다운 가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배제와 외면 그리고 구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멋대로의 ‘편견’을 가져오고 입장과 역할을 고정 짓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생각이 뉘지 깊이 있게 ‘소통’하지 못하면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인권을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지켜나감과 동시에 남이 날 존중하고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하고 소통하면 끝일까요?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은 ‘사람’을 둘러싼 주체적인 역량과 객관적인 상황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어도 조직 안에서 결정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합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정’과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설이란 틀 안에서 살고 있다면 시설이 운영되는 원칙과 방식에 대해 주체로서 참여하고 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질 수 있어야 온전한 ‘인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인권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반영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민주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이지요. 인권은 자기 힘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즉 ‘시설’이란 틀 안에서 참여와 소통, 결정이란 과정까지도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권력관계가 명확한 상황 속에서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그것은 민주적 관계, 평등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누군가 ‘보호’해주는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화’ 속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작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답시고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정치는, 요컨대, 민중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넓히는 데 기여하는 노력일 뿐이다.<중략>.....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한 마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근원적인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2012. 7. 16일자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의 글 중 -

위 글의 주요 요지는 선거철을 맞이해 ‘국민의 행복’이 정치선전도구로써 말만 무성하지만, 정작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선 ‘민주주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글입니다.

하지만 시설과 시설 이용자들의 관계에서도 이 글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발언할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자기 결정의 힘을 갖고 행사할 때 비로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인권과 민주주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아, 말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란 무엇일까요 말하려는 것인데요, 시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이란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으로 치부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무엇!

공동체 vs 서비스 기관?

시설에 살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란 무엇이고 ‘시설’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인권을 말할 때 여성이 가진 특수성과 현실인식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시설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나 가장을 잃은 부녀자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 곳이죠. 이 때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호정책의 이름을 갖긴 했지만 정부 정책도 없었고, 예산도 없어 해외 원조품을 나눠주거나 해외선교사들이 거주지를 만들어

‘보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해외선교사들은 학교나 고아원 등 시설들을 만든 후 자신들과 함께 일한 한국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자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시설 1세대 운영자들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국가 지원 없는 민간의 빈약한 물질적 기반을 토대로 운영하다보니 ‘사랑과 봉사’란 가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코 잊어서는 안될 가치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가치가 본래 의미를 잃고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국가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운영기관은 후원금으로 그 부족분을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이라는 것이 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시설운영자들은 후원금 일체를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을 중심에 두고 운영을 했더라면 인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설 운영자들은 후원금을 모아뒀다가 다시 건물을 짓거나 하면서 시설을 점점 더 늘려나갔습니다. 한 개의 시설에서 시작했지만 일단 법인 인가를 받고, 건물 등의 시설 확충 조건이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가능하니까요. 법인 전입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설을 확충해나가 규모를 늘렸고, 결국 한 법인이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시설, 부랑인 시설, 정신요양원, 병원...까지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은 늘 뒷전이었고 시설운영자들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기 보다는,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운영이 방대해지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니까요.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관리’에 치중해 왔지만 사람은 주체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관리 당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장애가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습과 사회적 용인(?)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고, 결국 제반 환경의 열악함은 또다시 직원들에게 사랑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조하게 되는...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이지요. 물론 모든 시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규모를 줄이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약간의 실험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들도 많지요. 여기서 언급한 시설의 운영 구조는 역사성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후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와 제공하는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졌지만, 직원과 이용자와의 관계는 오래된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애매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이용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설측은 국가를 대신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의무가 있지요. 계약서란 형식을 빌린 법률적으로 완벽한 갑-을의 관계는 아니어도 법적 지위와 관계는 분명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입니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생활인→거주인→이용자로 바뀌어간 것에서도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이용자-제공자의 관계가 무색합니다.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직원과 이용자의 관계는 가족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아빠, 엄마, 형, 누나라고 호칭하거나 선생님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직원은 친숙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허물없이 대합니다.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도'를 넘으면 곧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겠지요. 예를 들면,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잘못했을 때 체벌이란 이름으로 벌서기 등을 한다거나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정을 대신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익숙했을 때 오는 부드러움도 있겠지만 역으로 편견이 작용해 존중대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권감수성인데, 친할수록 습관화되어 역할이 고정되고 정당한 요구나 새로운 시도가

묵살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관계의 모호함에서도 오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안전과 보호의 논리’가 지배적인 운영방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체생활을 해야 하니까 누군가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 없지요.”

“바쁘고 힘든 이 와중에 자기주장만 하고 살면 어떡해요? 남들 생각도 해야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같이 사는 처지인데, 자기보다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는 공간인데 자기가 깨끗이 청소하고 치워야죠. 기본 아니에요?”

“자기 먹을거리 생산해내는데 일해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밥 일 좀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전동휠체어요? 아휴 그거 위험해서 타면 다쳐요. 여긴 다 언덕이고 경사가 급한데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호’만이 강조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주체성이 무시당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된다는 것이며, 누군가 대신해줘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시설 내 질서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허락’을 구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용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점점 더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가겠지요. 상대방이 독립된 주체로 자기주장과 발언권을 가질 때 관계도 쉬어지고 부담도 덜게 되는 것이지만,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가 고착화되면 상대방도 점점 힘들어지기는 매 한가지 일 것입니다. 매순간 “이래라 저래라”를 얘기해야 하고 더 보살펴야 할 것 같은 책임감만 늘어날 뿐이니까요. 서로가 힘을 갖게 되면 그만큼 관계도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설의 원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나, 나갔다 와도 돼요?”와 “나, 나갔다 올게요.”의 미묘한 차이가 바로 이용자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준다구요.

이용자 인권과 시설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책임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시설은 지리적으로 도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나 칸막이 없고 좌변기가 아닌 화장실, 10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침실, 큰 거실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들, 높은 담벼락, 징별방, 운동장 하나를 가운데 두고 학교, 병원, 요양원,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모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허락’이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하고, 똑같은 옷 혹은 츄리닝, 짧은 머리, 정해진 식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 당 8명의 이용자를 케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담장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일부 시설들은 정부 보조금, 후원금을 횡령한 후 적은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다른 시설을 또다시 만들어야 하니, 그곳에 사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그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었죠. 그러한 예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과 1997년 에바다 복지회 사건, 1998년 양지마을 사건, 석암재단, 성람재단 사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 광주 인화원, 현비동산, 메아리동산, 명심원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운영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비도덕성은 이용자 개인의 삶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폭력의 형태로 연결됩니다. 시설에 살고 있지만 주체이지 못했던 이용자 인권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체이지만 객체로 대상화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와 일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책임자들 사이에 힘의 관계, 즉 권력 관계가 명확한 곳입니다. 주체적인 힘으로 스스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국가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이용자는 대상이고 운영자가 주체였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용자의 목소리가 제한적이었고 운영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아니라 인적, 물적 한계 속에서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 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등 비민주성과 폐쇄성이 고질적인 관습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나 몰라라'하는 소극적 국가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가 해 준 게 뭐가 있어!"라는 식으로 반응 합니다. 시설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실천하기보다 '사적 재산'으로 인식하며 국가를 향해 '간섭 하지마'란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당시에서도 알 수 있듯, 이사회에 외부이사 2-3명 의무화하는 것도 거센 저항에 부딪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설의 현 모습만 비판할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는 제3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고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구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시설책임만으로 전가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위임을 받았다면 국가는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용자 인권은 시설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국가의 의무는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시설 측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 당혹스럽고 서글픕니다. 국가란 존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오만하며 얽치없을 줄 몰랐습니다.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그 후속 대책이 고작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설치 의무화 등이기 때문입니다(외부이사 참여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시설 측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본질적 접근이 없는 대책도 국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가란 이름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인권보장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부터

'보장'은 연관된 모든 사람이 지키고 책임이 있다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함께

합의하고 때로는 그 내용을 제도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들이 나오겠죠?

첫 출발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편하고 즐겁지, 항상 의지하고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면 올바른 관계 형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생활이 가져오는 어쩔 수없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이 해결된다면 시설에서의 폭행과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안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면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 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곳의 현실이 어떠한 지, 시설에 사는 이용자들의 가슴 저 깊숙한 곳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내부고발'이 아니면 인권침해 사안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시설 안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말 할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는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내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은 '시설'이란 구조의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지 않고, 현재처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권력관계가 명확한 이상, 이용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며 투명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화된 인권보장

그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일단 '생활시설'의 개념과 역할은 크게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지는 않겠습니다. 풀어서 재해석하자면, 이 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은 장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특별한 거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등록해서 일정한 시설물의 설치와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해 법인 등이 대신 운영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들은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언적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지요. 그래서 더욱 더 “인권, 인권, 인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기본권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한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을 담고 있는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국민은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거나 주장하는 것이구요.

인권과 관련해 국가의 3대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보호의 의무, 존중의 의무, 실현의 의무입니다. 장애인 인권, 특히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를 게 없겠죠? 맞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들의 인권은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특별한 권리만 강조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비롯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빈곤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을 포함한 장애관련 법률이 기본권인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실현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시설 이용자’의 구체적 권리는 어디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복지부에서 발행한 2012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책자를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최저서비스 기준에 대해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이 2011년 신설됨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한 번 살펴볼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와우!~

개요와 목차를 살펴보면,

1. 시설의 선택
 - 서비스 이용자 안내
 - 이용상담
 -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퇴소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욕구사항
 - 개별서비스 이용계획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의사결정
 - 참여
 - 위험관리

- 비밀보장
-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이의제기

- 4. 능력개발
 - 개인적인 발전
 - 교육과 직업
 - 지역사회 연계와 네트워크

- 5. 일상생활
 - 여가
 - 관계
 - 사생활
 - 식사

- 6. 개별지원
 - 개별지원
 - 건강관리
 - 약물관리
 - 노화와사망

- 7. 환경
 - 시설과 설비
 - 개인침실 : 공간요구
 - 개인침실 : 가구와 시설물
 - 화장실과 욕실
 - 공용 공간

보조기구와 설비

- 위생과 감염예방

8. 직원관리

- 역할
- 자격과 자질
- 직원구성
- 훈련과 개발
- 지도감독과지지

9. 시설운영

- 질 관리
- 정책과 절차
- 기록유지
- 안전의 실천

등 약 40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개별 목차에 따라 또다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이 정당한가?’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 토론을 해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 상담에서 필요한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목록에 ‘위험 요소’란 표현이 있는데, 장애로 인한 상황 자체를 ‘위험’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것은 ‘장애로 인한 특이사항’정도로만 표현해도 무엇을 말하는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애를 ‘위험’하다는 논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로 개념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란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는 자칫 ‘시설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 인권과 밀접한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상황논리에 따라 권리를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저 ‘최저기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용자와 시설운영자들이 서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잘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겠지요. 인권이란 법, 제도에 의해 보장되기도 하지만 법, 제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과 내용들은 일단 참고사항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상상력을 펼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이용자 인권보호 ‘권장’기준? 그게 뭘 의미야?

위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이 국가와 지자체, 시설운영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라면,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사업안내-부록>편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서비스 권장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이용자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권장’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뭔가 좋은 말들은 무성한데 현실은 그걸 뒷받침 못했을 때의 자괴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생색내기용 포장기 아니라 실천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때 내 것, 동시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권장’이지만 ‘책임’이며 ‘일상’이 되기 위한 시설의 구조 변화, 서로의 관심과 노력 등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인권권장기준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더 절망으로 다가가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일 뿐 당사자들의 토론과 합의로 더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력이 없는 '권장' 수준이고 기본 권리의 범위를 법 테두리 안에서 설정하고 있지만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용자의 권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시설 이용자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권리를 갖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 원칙>에서는 19개의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면서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 법률이 보장하는 내용들을 더 실제화 시킨 예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만 잘 지켜내도 이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이 기본이고,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운영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독을 권하며 토론도 하면서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 행복해야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효를 위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사후복구 안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인권침해예방 조직구성 2)인권 사업 체계화 3)인권침해 예방 활동입니다.

이는 지난 2. 9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1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2. 2. 9일자)를 참고로 살펴보면, 성폭력 사안은 가해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외의 ‘인권’보호대책은 <내부고발 및 외부감시체계 구축>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내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외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외부 참여프로그램을 늘린다, 등이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체가 없는 것이니 어떻게 추진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와 종사자, 보호자, 관련 외부 인사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항시적으로 내부의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것이 시설 자체에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정부지침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과 평가를 통한 인권보장이란 것은 그 주체가 달라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권문제는 권력, 즉 거주인과 운영자간의 힘의 관계와 맥을 함께 하고 있어 ‘시설의 민주주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권지킴이단>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 개념 자체를 협소화시켜 단지 눈에 보이는 폭행과 성폭력, 학대 등만을 초점에 둘 경향이 매우 큽니다. 태생적 한계라고 할까요? 정작 해결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는 남겨두고 매번 폭력과 성폭력 중심으로 섬뜩한 감시체계만을 갖춰 더욱 불안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인권문제는 <인권보호기준>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체 삶의 모습과도 맥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과도 연관지어야 하는 문제이며, 절대 ‘감시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설 구조와 구성원들의 변화가 없다면 그저 형식적인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습니다.

안전과 보호의 논리를 넘어

시설 내 인권문제는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폭력, 성폭력, 감금 등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단체생활’을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시설이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 한다면, 신체적 자유, 선택과 결정의 자유, 생명권 보장, 의료, 문화 등사회권 보장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권’이라 부르지만, 왜 유독 ‘시설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행과 성폭행 등만을 ‘인권’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일까요?

서비스 수급과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안돼!” “하지 마!” “못해!” “허락 받아!” “너 왜 그러니?” 등등의 말이 쉽게 툭 튀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쉽게 내뱉어지는 말 속에 이용자의 인권이 산산조각 난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 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언의 압력이고 주눅들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이죠. 결국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란 깊은 체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길어지면 체념이 일상화되고 결국 내 온 몸을 휘감는 무기력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욕구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실현하지 못했을 때,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과잉행동을 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내 몸에서 ‘나’란 자아가 분리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분노하다가 포기하고 만다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말이 쉽지 일상을, 일생을 절망하며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몸과 의식이 분리된 채 절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침묵을 강요받으면 말하는 법,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법도 잊게 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물망처럼 얽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이 관계 맺기를 통해 거듭나기도 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주눅들게 키우지 않고 당당히 키우겠다는 게 바로 ‘나’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 삶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이 반영되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능동적 삶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가장 큰 인권문제겠지요.

그럼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동일한 일과시간을 강요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잔소리와 훈계, 체벌(감금, 결박도 체벌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기도 함)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은 위험하다며 외출을 막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소할 수 없다는 말만 귀가 아프게 듣기도 합니다. 자원 봉사자를 이용해 매번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유행하는 머리모양이 뭔지도 모른 채 해주는 대로 머리모양을 가져야 하고, 시장 한번 못가 본 채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비슷한 종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시설이 어떤 마을 속에 있는지, 어떤 학교가 있고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밖에 나가 세상살이의 정보를 얻고 싶어도 적절한 보장구나 이동수단, 보조 인력이 없어 그저 참아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직원이 쉴 때 혹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부탁해 간신히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설에서 직접 이용자들이 증언한 최근의 ‘사실’ 들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럼 보다 유형화된 틀을 통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말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시설내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유형	세부내용
신체 자유 침해	불법 구금, 외출 금지, 적절한 보장구 미지급, 폭행, 성폭행, 동의 없는 불입시술, 강제 삭발, 강제 투약 등
통신 자유 침해	외부와의 편지, 전화, 면회 검열과 제한, 핸드폰 소지 제한
종교 자유 침해	종교 강요, 종교 제한, 종교 집회 강제 동원, 강제 안수·금식 기도
사생활 자유 침해	도청, 감시카메라, 강제 결혼, 개인 소지품 제한
생존권의 침해	열악한 의식주, 의료서비스의 부재, 징벌목적으로 음식물 제공 제한 또는 금지, 살인, 암매장
재산권 침해	수급액, 장애수당, 장례비 등 갈취, 입소금 착취, 신용도용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전락 등
노동권 침해	강제노동,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돈을 지불함
자기결정권 침해	입·퇴소 결정권 제한, 일상에서의 자율 제한

- 1) 시설생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일단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저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
 -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학교에 가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 2) 내 신분증과 도장, 돈과 통장을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다.
 - 신분증은 시설에 들어왔을 때 강제로 가져갔다.
 - 신분증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시설에 주었다.

- 신분증과 통장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다.
 - 시설에 살면서 나에게 돈이 나오는 줄 몰랐다.
- 3)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몰래 전화하다가 혼났다.
 - 특별한 전화외에는 바꿔주지 않는다.
 - 전화비용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하고 감시 한다.
 - 자꾸 전화하면 집에서 싫어하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라고 원장님이 그랬다.
 - 사무실 전화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 사무실에만 컴퓨터가 있다. 인터넷은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
- 4) 내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 “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묻지 않고 다 깎아 버린다.”
 - “파머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못하게 한다.”
 - “자유가 없다. 머리를 기르려면 허락 받아야 한다.”
 - “내 옷을 두고도 시설에서 준 옷을 입어야 한다.”
 - “내 옷은 없고, 옷을 돌려가면서 입는다.”
 - “주는 옷만 입어야 한다. 헌옷을 몰려 입는다. 구입할 수 없다.”
- 5)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가 있다.
-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예 나를 부르지 않는다.”
 - “내 나이 63세인데 시설장 부부를 엄마아빠라고 부르라 한다.”
 -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친구처럼 ‘야, 자’한다.”
 - “시설에서 대화한 적이 없어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 6)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외출할 권리가 있다.
- “위험하다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 “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예 모른다.”
 - “나갈 수 없고, 이동수단도 없다. 병원 외에는 못나가게 한다.”

- “나갈 수 없고, 일요일에만 차타고 교회에 간다.”
- “도망가 본적이 있다. 그러나 다시 잡혀왔다.”,
- “길 잃어버린다고 혼자 못나가게 한다.”
- “나가면 다친다고 못 나가게 하고, 밤7시에는 아예 문을 잠근다.”
- “봉사자가 오면 겨우 집근처에 있는 공원에 간다.”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고 싶었으나, 시설에서 못 나가게 했다.”
- “혼자 나갔는데, 누가 신고하여 다시 붙들려 왔다.”
- “나가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시설 내 운동장을 도는 정도이다”

7) 내 몸이 필요한 보장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휠체어는 실내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실내에서는 그냥 기어 다닌다.”
-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보장구를 어떻게 요구 하나?”
- “정보도 없을뿐더러, 보장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시설장은 그런 것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줘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소용없었다.”
- “안경이 필요하지만 시설에서는 안 사줬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8)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해도 강제로 예배드리러 가야한다.”
- “원래는 불교였는데 여기 와서 기독교로 바꾸었다.”
- “열성신자가 아닌데 강요하는 것이 많아 스트레스 받는다. 나 혼자 안한다 할 수 없다.”
- “예배 안 드리면 몽둥이로 3대 맞는다.”
-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몰래 기도한다.”

9) 시설거주인 자치회를 구성할 권리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런 걸 만들어도 돼요?”
- “그게 가능해요?”
- “있기 한데 생일잔치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 경조사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이야기해요”
- “운영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에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10)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에 먹을 권리가 있다.

- “끓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여건이 안되니 감사하게 먹어야 한다.”
- “그냥 주니까 먹는다,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 “맛이 없다. 푸드뱅크로 학교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너무 달다.”
- “하루 3끼 반찬이 똑같다.”
- “주로 된장국과 콩나물국이 나오고 반찬은 김치 하나, 한 그릇에 맡아주는데 맛이 없다.”
-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 먹여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느냐?”
- “단체생활이라서 요구하면 안 된다.”
- “빵, 음료수 나오는데 음료수는 오줌 싼다며 나한테는 주지 않는다.”

11) 내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배울 권리가 있다.

- “나는 학교에 너무 너무 가고 싶어서 시설 옆에 있는 학교에 갈 때 운동장을 기어서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휠체어가 모자라서 내가 타고 다닐 휠체어가 없다며 나를 학교에 안 보내줬거든요. 난 악착같이 기어서라도 학교에 갔지요.”
-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서 시설에 들어간 셈이에요. 근데 시설에서는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고선 학교에 안 보내는 거 있죠. 내가 시설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학교 보내달라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결국 학교에 보내주더라고요.”

12)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만들기 등 일을 하는데, 평소 일요일은 안하다가 바빠지면 일요일도

- 단체로 하고,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일하기도 한다.”
- “농사일 한다. 못하면 혼난다. 간식이나 품삯은 없다.”
 - “못하면 혼나고 일 많이 하면 간식을 많이 준다.”
 - “일하니까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개밥을 주는 것이 내 임무이다.”
- 13)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아프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프다고 하니, 병원은 안 데리고 가고 기도해 줬다.”
 -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보낸다. 거기서 정말 안 좋아서 말을 잘 들어야 한다.”
 -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 “아프다고 하면 혼난다.”, “아프다고 말해 본적 없다. 그냥 참는다.”
 - “재활치료를 받고 싶으나 요청한 적 없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어떻게 요구하냐?”
- 14)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에 진정할 수 있고 정부 담당자와 면담할 권리가 있다.
- 그런 거는 전혀 모른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 가끔 공무원들이 시설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는다.
 - 무슨 함 같은 것이 있는데 뭘 용도인지 모른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진정함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
- 15) 이런 저런 잔소리를 듣지 않고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뭔가 요구하면 화를 내고 귀찮아 한다.
 -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한다.
- 16)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에만 물어본 후 맘대로 사진을 찍어갔다”
 - “시설 측에서 내가 쓰거나 내게 온 편지를 먼저 읽어 본다.”

- “한방에서 10명씩 생활한다. 내 개인 생활이란 없다.”
- “개인 사물함은 가져본 적 없다. 내 것은 칫솔뿐이다.”
- “단체로 목욕해서 창피하다.”
- “소지품을 검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7) 선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듣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투표가 뭔지 모른다.
- 투표소에 가 본적이 없다.
- 총선, 대선 헛갈려 하고,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18)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시설에서는 남자애들만 대학에 보내고 저는 여자라고 안 보내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요.”
- “시설에 들어올 때 오천만원을 내고 왔다는 ○○씨는 방도 혼자 쓰고, 컴퓨터도 있고 전화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다고 12명이 함께 방을 쓰고 전화나 컴퓨터는 꿈도 못 꾸요.”
- “중증장애인인 나한테는 간식도, 음료수도 주지 않아요. 밥도 국물은 주지 않지요. 대소변을 자주 보면 귀찮다고 말이죠.”

19)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 “목욕은 2주에 한번 씩 하는데 그때만 속옷부터 겉옷까지 갈아입는다.”
-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밖에서 불을 지펴서 물을 데워서 떠 와야 한다.”
- “내가 자는 방에 용변기가 있다. 냄새가 지독해서 잠을 잘 수 없다.”
- “강당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잔다.”

20) 내가 원할 때 퇴소할 권리가 있다.

- 니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한다.
- 사회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한다.

나가며....

위에 예시된 사례들이 좀 우울하죠? 기분전환도 할 겸 위 내용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죠.

시설직원들의 인권교육이 1년에 8시간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재확인하는 자리인데요, 직원들이 이용자권리항목에 적어 넣은 내용들을 한번 보실래요?

- 내 생각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 네일아트 할 권리
- 머리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머리 기를 권리, 파마 할 권리
- 야단, 잔소리 듣지 않을 권리
- 칭찬과 긍정적인 말을 들을 권리
-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
-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 /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을 권리
- 수다 떨 권리, 욕할 권리
- 느낄 수 있을 권리
-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권리, 결혼할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 행동할 권리
- 핸드폰을 소유할 권리, 자기 것을 소유할 권리
- 위험에 노출될 권리, 실패할 권리
- 마음대로 나갈 권리, 도망칠 권리
- 눈치 안 볼 권리
- 화 낼 수 있을 권리, 불만을 말 할 권리
- 담배 피고 술 마실 권리

- ‘아니오’라고 거부할 권리
- 늦잠 잘 권리
-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
- 단체복 입지 않을 권리
-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
-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
- pc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
- 행복할 권리
- 치료받을 권리
- 혼자 조용히 쉴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
-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중복되는 권리들이 많아 이 정도로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금세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단체생활’이라는 환경과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면, 위에 나타난 권리항목은 대부분 너무나 기본적인고 익숙하고 평범한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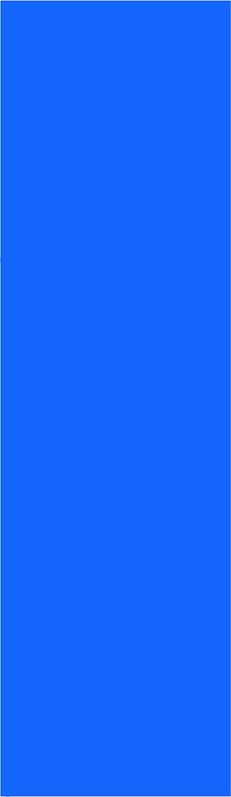
자유권과 사회권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설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권리가 바로 ‘자유’라는 것은 화성을 탐사한다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이용자의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면 너무 소소하고 기본적인 거라 말로 주장하고 문서로 정리한다는 거 자체가 기운 빠지게 합니다.

이용자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인정하고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보장하려면 시설이란 구조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세심하게 살펴보고 출발했으면 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삶,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삶 자체가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HAPTER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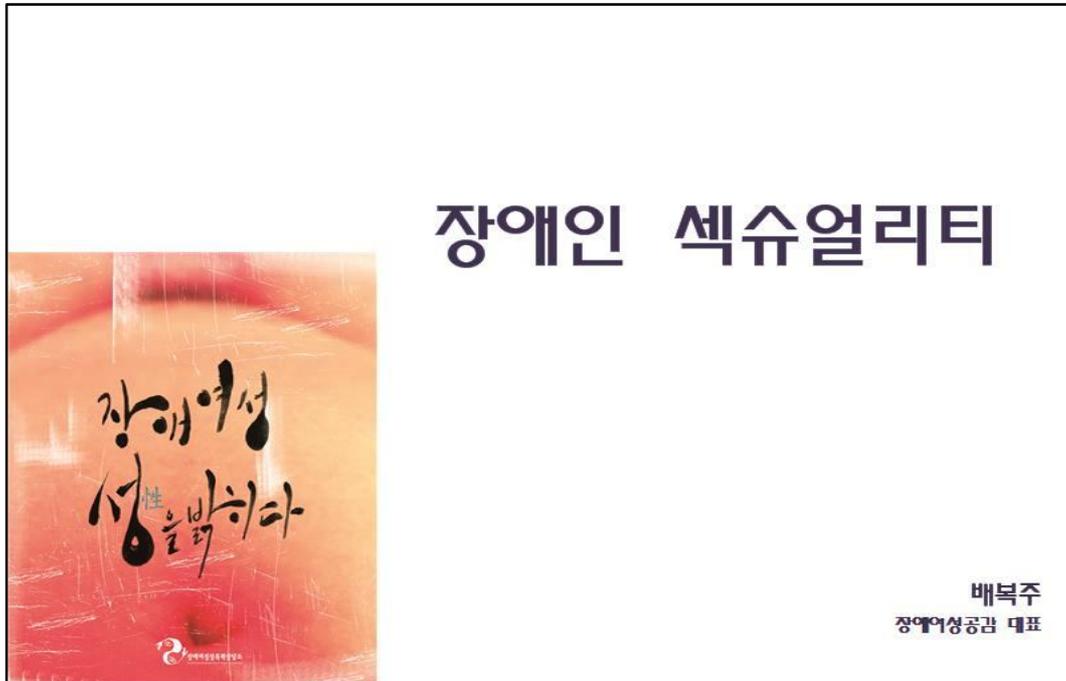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 2
- 시설이용 발달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시설에서의 삶과 딜레마2

배복주/장애여성공감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종사자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점검 ○ 장애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특히 시설생활장애인의 보호와 통제, 그에 따른 성적권리 혹은 성적 문제에 대한 소통 ○ 성적 즐거움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강의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사례질의, PPT 사용 기자재
진행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하는 사람들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정도 공감 이끌기 2. 장애인 섹슈얼리티 강의; 시설생활장애인/발달장애 중심 3. 개인별로 제출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4. 질의응답
주의할 점	
강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성교육이후 제작한 '장애여성 성을 밝히다' 교재에서 이미지를 이용하여 섹슈얼리티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음.
읽을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여성의 삶과 성적자기결정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기타	



성적자기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 혹은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도' 성적 욕망을 가진 주체이며,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 장애인의 몸은 연애의 조건, 결혼의 조건, 섹스파트너의 조건으로 경쟁이 되지 않은 몸. 장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과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장애인은 성적 존재인가?

-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다?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혼인 외 관계 등)
- 무성적 존재 : 장애로 인해 무성적 존재로 취급 혹은 요구
-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 장애인 **성서비스** 제도(?)
- 장애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
 - >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인정해야 하는
 -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타자화** 되는 문제
- 성적주체로 인정되는 범위.
 - 우리가 허용(용인)하는 성행동 범위?



다양한 몸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적장애인 성 관련 동향

지적장애인의 '성적권리' 담론

•우생학적 논리가 팽배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탈시설 수용화와 정상화 원칙이 주창됨에 따라 지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권리도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생각 됨.

•지적장애인의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계에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 옴.

지적장애인 성 관련 동향

- 개인적인 사생활 가질 권리
- 성인으로서 존경과 위엄을 받을 권리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형태로 성적 표현을 할 권리
-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사회적·성적인 행동에서 훈련받고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성교육을 받을 권리
- 성에 관한 지원 서비스(피임, 유전 상담, 성 상담 등)와 의학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
-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
-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할 권리
- 아이를 가질지 결정할 권리
- 성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등

미국 (MITCHELL, OLASOV, 2000)

보호와 통제; 시설내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 성은 관계적인 맥락 안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시설생활 발달장애인의 성적욕망이 구성되고 표현되는 것은 **시설 내의 성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성(sexuality)이라는 어려운 이슈를 회피하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Craft and Brown, 1994).**
-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특정한 행동(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동성간 성행위 등)이 법이나 사회적 바운더리와 논쟁을 일으킬 만한 것인 경우에도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시설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 사안마다 전혀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호와 통제; 시설내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 시설의 금지적 규율에 순종하고 아무런 논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생활인들은 시설에서 긍정적 보상을 받거나 모범적인 사람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 성적인 것을 발현하거나 경험한 생활인들에게는 '문란함', '성적으로 과잉된', '절제하지 못함' 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님.
- 일부 시설들의 경우, 남녀 간 유사 '애인관계'를 허용하거나 '짝'을 맺어주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들이 스스로 성행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인 성행위에 대해 일정한 수위로 제한을 두고 있었음.

보호와 통제; 시설내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 시설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생활인들에게 역할모델이자, 보호자, 교사이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자들이다. 때문에 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직원들이 드러내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기도 한다.
- 시설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행위와 시설직원들의 가치관, 문화 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고 맞추어 나가는데 익숙한 것으로 보였음.
- 그래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성인식 및 가치, 태도에 대한 점검과 토론,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활인에 대한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종사자들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보호와 통제; 시설내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그러나, 시설종사자들은

- 시설의 운영주체는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되어 종교적 신념이 시설안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침. 종교적 교리가 가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행위에 대한 견해는 시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이는 시설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간에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하며 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제약할 수 있다.
- 발달장애를 가진 자식의 부모나 보호자는 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때문에 시설 종사자들은 부모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개입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들이 전문가집단보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부모들의 경우 자식들과의 감정적 결속력이 크고, 무엇보다 자식의 성과 관련하여 훨씬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Rose, 1990; McCarthy, 1999). >

보호와 통제; 시설내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

• **종사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자들의 성과 관련하여 시설차원의 합의나 소통구조 등이 부재함으로서, 종사자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신념이 없다면 그들 역시 발달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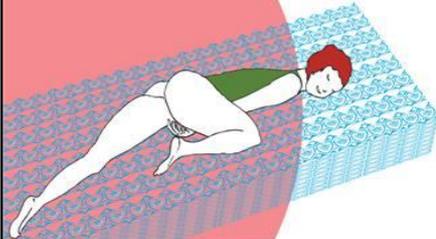
•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의 문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위탁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위치해 연계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시설생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대비 종사자들의 수는 턱없이 적다. 때문에 종사자들은 생활자들의 신변처리나 안전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과 프로그램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 많음. 그렇기 때문에 질 높고 개별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위에 대해

우리들은 모두 나 혼자만의 성적인 느낌을 즐길 수 있어요.
성적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몸에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위'라고 해요.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기 몸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뭔지는 알지만 왠지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또는 그건 남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성적인 즐거움이 자연스러운 것만큼이나,
자위도 잘못된 일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누구든 말이죠.
자, 선생이가 뭐 하고 있나 볼까요?



자위에 대해



선영이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방에 있군요.
 나의 비밀스러운 성적인 몸짓을
 남이 볼까봐 불안해할 필요없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선영이는 자위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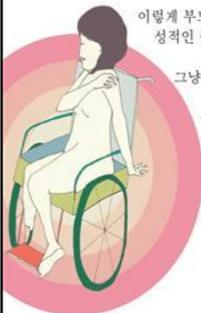


꼭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자기가 마음 편히 성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지요.
 물론 더 편하고 더 색색한 공간일수록 좋긴 하겠죠.

자위에 대해



자위를 할 때는 몸을 만지는
 몸이 만져지는 느낌에 훨씬 더 집중해요
 그리고 만지는 행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성적인 상상'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 몸을 만지는 걸로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평소엔
 그냥 내 몸을 만지는 거랑
 무엇이 다를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고,
 빛은 몸을 상상할 수도 있고,
 나만의 신비로운 공간이나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위를 하건 성적인 상상은
 우리가 더 크고 풍부한
 성적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몸을 만지지 않고도 성적인 상상만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위에 대해

나에게 질문하기

- 나는 자위를 하는가?
- 생활인들이 자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자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한다면 어떻게?
- 집단거주를 시설내에 자위하는 방을 따로 두어야 하는가?
- 과도한 자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자위하는 장면을 갑자기 목격했을때, 어떻게 대처할까?

성적인 즐거움

서로의 성기와 성기를 이용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해요.



* 여자와 남자가 서로 성기를 결합하는 성스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책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꼭 읽어봐야 해요

어떤 자세와 순서로 해야 한다는
정답 같은 건 없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방식을
같이 찾아 봐야겠죠.



나의 느낌과 상대방의 느낌은 모두 소중한 것이고
각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 지는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느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성적인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어떤 성교육으로 접근할까?

- 욕구표현 및 관계 중심의 성교육 변화하는 성
- 다양한 사회문화적 시각을 반영하는 성
- 즐거움과 행위중심의 성
- 일상적인 소통과 일관된 성교육



우리들의 즐거운 탐구생활은 끝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읽을거리>

발달장애여성의 삶과 성적자기결정권¹⁾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²⁾

서론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운동과 연구들 안에 ‘성폭력’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오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능력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이 지속되는 원인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위협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간단한 거짓말에도 너무 쉽게 속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므로 작은 돈이나 음식에도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할 수 있다(곽민영, 2007).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취약한 인권실태와 차별적 현실은 성폭력을 증가시키고, 지속되게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본 상담소의 성폭력피해 상담 사례 건수에서 발달장애인(여성)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지원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발달장애여성이 성적인 폭력의 대상을

1) 본 원고는 대구장애인재활협회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2) 2001년 8월 31일에 개소한 장애여성 성폭력전문상담소로서, 이 글은 2009년도에 본 상담소에서 장애인생활시설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소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임을 밝힙니다.

넘어 관계 안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 것은 상담소 활동의 커다란 몫이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조항³⁾은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제정된 법조항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논리를 만들어 내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주장해 왔다. 조문의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장애=항거불능’의 도식을 낳고, 이를 긍정하게 될 때 장애는 무력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틀 내에서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재할 여지도 없다(장애여성공감, 2005)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성폭력 법조항의 ‘항거불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나아가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주체성’이라는 말이 발달장애여성을 어떻게 수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다 할 깔끔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상담소는 2006년 성인지적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⁴⁾을 개발하여 복지관 이용(지역사회 생활)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2회기의 성교육을 시행한바 있다. 이어 2007년에는 발달장애여성들의 보호자들(부모, 교사,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여성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심층 인터뷰하여 발달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작업⁵⁾을 수행했다. 2009년 올해는 발달장애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생활 장애여성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생활시설 다섯 군데에 나가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 당 총 6회기의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상담소는 이렇듯 발달장애여성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어렵지만 한 말의 개념을 풀어내기 위한 지난한 활동의 과정에 있다. 지역사회와 시설 내 장애여성들은 물론

3)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4)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게요: 정신지체여성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2006

5) 「임신과 낙태안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찾기: 정신지체여성 성교육프로그램 연구」, 2007

부모나 교사, 사회복지사들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그 과정에 언제나 함께 하였고, 앞으로도 또 함께 할 공동의 연구자이다. 특히 상담소가 올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여성과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역동들과 고민의 과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이 글은 200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여성 성교육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며, 활동과정에서 얻은 고민과 역동들을 발달장애인 성과 관련한 기존 상담소의 운동과 접목해보고,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기 위함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도전으로 삼고 변화시켜가야 할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풍부한 연구를 통해 메워 지리라 기대한다.

I.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성에 대해 권리나 주체성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시작된 것은 이제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의 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며 비정상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존의 규범적 성권력(비장애/이성애/남성을 중심으로 한)이며, ‘장애인의 성’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한 규범적 성권력을 비판하고 해체하면서 대안적 상상을 해나가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장애/이성애/남성중심으로 짜여진 규범은 ‘정상가족’ 안에서 비장애 남녀가 지속적으로 성기삽입 섹스를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재생산 하는 것을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게 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성을 ‘정상화’ 한다거나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간의 일부 논리들이 가지는 한계는, ‘장애인’이라는 단일한 이름하에 그것의 비교대상을 기존의 성규범으로 놓고, 가치절하 되었던 장애인의 성이 그것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있다.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해법들 : 누구의, 어떤 욕망인가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가장먼저 관심을 끈 것은 아마도 ‘성적 욕구의 해소’인 듯하다. 성적 욕구를 먹거나 자는 행위들과 같은 생물학적 필요로만 볼 때, 성적인 것도 단순히 ‘해소’하면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구매나 ‘섹스자원봉사’ 혹은 ‘섹스활동보조’ 등으로 명명되는 성적대리인인 것이다. 영화 ‘핑크팰리스(서동일 감독)’는 50대의 장애남성이 일생의 소원인 성관계를 해보기 위해 성구매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또 다른 영화 ‘아빠(이수진 감독)’는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성문제(성욕구) 해결을 위해 아빠가 딸의 섹스파트너가 되어 준다는 이야기이다.

성을 생물학적인 필요로만 보고, 성관계를 단지 성기중심적인 행위로 볼 때, 장애인 성의 ‘해결책’은 이와 같은 것이 된다. 이러한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성기중심적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여성에게 피임이나 임신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영화 ‘아빠’가 보여준 대안은, 여성의 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고 있는지를 입증해준다. 영화에서 아빠는 딸의 자위행위를 도와주기도 하고 딸의 남성 섹스파트너를 돈을 주고 사는 등 시도를 하다가 결말에 가서 스스로 딸의 성적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서만 성을 실천할 수 있고(자위마저도 남성이 개입되어야 한다) ‘여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며, 근본적으로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에 의존적인 주체로 가두어 두려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성적 욕망의 서사를 보여준다.

‘장애’라는 이름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코 단일할 수는 없다. 장애라는 이름 아래 겪는 억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될 때 그것은 장애 안의 또 다른 억압의 빌미로 작용한다(장애여성공감, 2005).

발달장애여성에게 성은 일차적인 성적욕구의 해소(뿐 아니라) 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적 삶과 성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혼이라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구에서도 ‘정상화 원칙6)’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결혼하여 살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나 보호자들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있다. 이는 삶의 유형의 다양한 결들을 결혼과 이를 통한 제도적 가족의 틀로만 한정하는 ‘가족주의’와 특히 결혼제도 안에서 취약한 여성의 위치를 간과한 채, 기존의 규범 안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상화’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발달장애여성들이 결혼제도 안에서 남편의 장애유무나 정도에 상관 없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혹은 둘 다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과 가사일이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젠더, 계급,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적 문화가 ‘정상적 양육’이라는 규범을 확산시키는 속에서, 발달장애여성들은 더욱 평가절하와 무시, 폭력의 상황에 놓인다. 또 남편과의 성관계가 아내의 ‘의무’인 결혼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여성들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표출하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

피임방법은 일반적으로 성중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나, 이미 그것은 성차별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상당수 발달장애여성의 보호자들은 딸이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자궁적출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루프나 일부 경구용 피임약 등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영구적 불임을 초래하기도 하는 피임법이, 많은 비장애여성들이 그러하듯 발달장애여성들에게도 강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모자보건법7)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 6) 정상화원칙은 1950년 경 이후 서구에서 발달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제기된 이론이다. 이는 가능한 ‘일반적인’, ‘주류’ 사회의 규범과 양식에 가깝도록 발달장애인의 생활조건과 양식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상화원칙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결혼과 정상가족 형성, 이성간의 연애, 남녀 성역할 등을 수행할 때 ‘정상화’ 된다.
- 7)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생학적 낙태 정당화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분열증, 유전적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성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를 들어 발달장애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발달장애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낙태를 한다.

성행위와 성적즐거움이 오로지 남녀의 성기결합으로만 간주되고, 남성의 발기와 사정에 의해 행위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우리사회 성문화는 또 어떠한가. 이 속에서 여성의 성적 즐거움과 표현이란 온전히 존재하기나 할 수 있는가? 포르노와 성매매 등 남성중심 성행위가 당연시되고 남성들의 ‘권리’로까지 명명되는 문화 안에서 여성 일반이 주체적인 성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이라도 할 권리를 부여받는가? 하물며 발달장애여성은 성행위에서 쾌락을 기대하지 않고, 또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윤가현, 2002)이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으로서 행위와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언어를 가지지 못한 채 타자화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발달장애여성들을 더욱 더 열악한 현실에 놓이게 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경 부터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 삶의 현실에 보다 집중하여 젠더문제와 동성관계표현, 성적폭력 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여성들의 삶에 대한 젠더인지적 관점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젠더적 상황과 젠더권력관계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McCarthy, 1999)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비슷한 정도의 장애와 환경, 주변인 등을 갖춘 발달장애인그룹임에도, 성별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성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논의에서 발달장애인 일반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는 생각은, 발달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더 광범위한 삶의 경험들을 삭제하도록 만든다. 발달장애여성에게서 ‘여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1)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들이 가지는 성적욕망

성은 관계적인 맥락 안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의 성적욕망이 구성되고 표현되는 것은 시설 내의 성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성(sexuality)이라는 어려운 이슈를 회피하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Craft and Brown, 1994).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특정한 행동(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동성간 성행위 등)이 법이나 사회적 바운더리와 논쟁을 일으킬 만한 것인 경우에도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시설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 사안마다 전혀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설 성교육을 진행하며 시설 안에 생활하는 다양한 개개인들 중에는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시설의 금지적 규율에 순종하고 아무런 논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시설에서 긍정적 보상을 받거나 모범적인 사람으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성적인 것을 발현하거나 경험한 이들에게는 ‘문란함’, ‘성적으로 과잉된’, ‘절제하지 못함’ 등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시설들의 경우 남녀 간 유사 ‘애인관계’를 허용하거나 ‘짝’을 맺어주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들이 스스로 성행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인 성행위에 대해 일정한 수위로 제한을 두고 있었다.

시설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생활인들에게 역할모델이자, 보호자, 교사이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자들이다. 때문에 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직원들이 드러내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한다. 자신은 아무런 성적인 욕망이 없다거나, ‘짝’과 손잡는 행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발달장애여성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억압의 흔적이나 욕구 불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설에서 허용되는 만큼의 행위와 시설직원들의 가치관, 문화 등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고 맞추어 나가는데 익숙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우리가 만난 거의 모든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이 ‘자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성적인 즐거움을 발현하는 방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여성 성기의 음핵(클리토리스)의 존재를 모르고, 음핵자극을 통한 성적 즐거움을 알지 못했다. 발달장애여성이 이해하는 성행위는 남성의 성기에 또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윤가현, 2002). 물론 성행위에 있어 여성의 표현이 제한적이고 남성 의존적으로 구축되는 현상은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나, 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성적인 것을 표현하고 발현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여성들이 자위를 통한 성적 즐거움의 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시설이라는 환경의 특성, 특히 한 방에 여러 명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고 개인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성은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의 성적욕망 발현을 분명히 제약하는 요소이다. 더군다나 남녀가 엄격하게 분리된 채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는 공간 안에서 동성의 생활자들 간 성행위나 애정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성 간 성행위와 동성애는 시설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또 문제행동으로 읽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환경이 가지는 특성은 시설에 생활하는 발달장애여성들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명백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이나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시설에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성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시설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비취지고, 때문에 그들의 성적인 문제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거나 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을 둘러싼 성과 관련한 문제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혹은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까지’ 라는 생각 하에 문제로 다루어지지 조차 않기도 한다.

2) 시설생활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성교육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성적인 건강함’이란 단지 질병이나 폭력에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성과 성적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함(WHO, 2002; The Centre for HIV and Sexual Health, 2007)을 포괄한다.

상담소가 시설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교육은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보다는 여성의 몸 알기, 자신의 감정/욕망 표현하기,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의 주체적 성적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성교육의 내용은 시설종사자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고, 많은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시설에서 관계와 성적 즐거움 중심의 성교육이 우려를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상담소가 실시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성교육을 실시해 본적이 없거나 1년에 한 두번 정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직원들은 성적인 것이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혹은 직원들 스스로가 갖는 성적인 경험이나 의식의 제약 때문에, 혹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이유로 일상적으로 성에 대해 생활 장애인들과 열린 소통을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시설 발달장애여성들은 생물학적 성기중심의 혹은 성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만을 받아왔다. 이러한 기존의 성교육은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생물학적이며 남녀 성기 중심적인 성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교육자들을 무성적인 주체로 상정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하기보다 일차원적으로 잠정적 피해대상자(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인 양 상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성교육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권력관계 안에서 개인의 성적 주체성과 성적 권리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단화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설 밖의 사람들과 같이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나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 성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는

나이나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여성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인 욕구,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며,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와 행동에 대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주변사람들(부모나 교사, 보호자 등)에 의해 규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과 성폭력을 경험하는 상황에서조차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성적 권리, 성적 즐거움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폭력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성폭력이나 성착취를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설명할 언어를 가질 수 있게 한다(The Centre for HIV and Sexual Health, 2007).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성적인 존재이며, 원하던 원치 않던 사회 안에서 타인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성적인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집단에게 성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금기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 역시 성적인 지식이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인 것을 더욱 열어 놓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임파워먼트에도 필수적이지만 주변사람들에게도 발달장애여성들의 성적 욕구와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3)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

시설생활자들을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역할은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의 성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발달장애여성들의 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입과 교육,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많은 시설들이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되어있고,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시설 안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 내에 종교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설생활자들은 종교의식을 하루의 일과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종교적 신념도 강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시설의 종교적 기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 교리가 가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행위에 대한 견해는 시설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설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간에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하며 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를 가진 자식의 부모나 보호자는 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때문에 시설 종사자들은 부모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개입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들이 전문가집단보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부모들의 경우 자식들과의 감정적 결속력이 크고, 무엇보다 자식의 성과 관련하여 훨씬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Rose, 1990; McCarthy, 1999).

셋째, 종사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자들의 성과 관련하여 시설차원의 합의나 소통구조 등이 부재함으로서, 종사자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신념이 없다면 그들 역시 발달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성적으로 영원한 어린아이 같다거나 과잉됐다는 식의 고전적 편견에서부터, 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성에 집착한다, 혹은 성에 대해 본능적으로 집착한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들과 일상을 함께할 때, 발달장애인의 성적주체성과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역할은 애초에 기대할 수도 없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관한 사회적 무지와 고정관념부터 깨고, 발달장애인 성과 관련한 인권적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의 문제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위탁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장애인 시설들이 대부분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위치해 연계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시설생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대비 종사자들의 수는 턱없이 적다. 때문에 종사자들은 생활자들의 신변처리나 안전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과 프로그램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속에서 질 높고 개별화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발달장애여성과 폭력

발달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 살아가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흔하며, 그러한 이유로 학대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윤가현, 2002). 여러 가지 학대의 범주 중에서도 신체적인 학대나 정서적인 학대보다 성적인 학대가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하면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Nosek&Howland, 1998; 윤가현, 2002)

발달장애여성들이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발달장애여성들은 작은 위협이나 매수 등으로도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는데, 이는 가해자가 분명한 위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여성들은 위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교육받고,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보고된 시설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시설 종사자들(특히 원장 등 절대적 권력자)이었는데, 보호자의 위치에서 발달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들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성교육(윤가현, 2002)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 역시도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논의이므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다수가 시설에 살며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만 그들 역시 젠더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Simpson, 1994; McCarthy, 1999)는 사실이다. 시설 내에서 발달장애남성들의 성적표현은 더욱 빈번하고 자주 목격된다. 또 본 상담소 성교육 중에 일부 발달장애여성들은 같이 생활하는 장애남성들에 의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제보했지만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종사자들 눈에 띄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살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여성들의 상당수가 시설 입소 전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폭력의 경험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설의 고립된 특성 상 외부서비스와의 연계가 어려운 것과, 종사자들이 폭력피해의 심각성과 징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 등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커다란 원인이었다. 많은 장애인시설들이 일반 지역사회의 세팅과 분리되어 외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생활자들 개개인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발달장애여성에게는 또 다른 편견이 존재하는데, 시설 종사자들도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즉, 그녀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성폭력의 영향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학대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격성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발달장애라는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규정(Reinolds, 2002&Sobsey, 1994; 광민영, 2007) 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여성의 보호자들이 발달장애인은 성폭력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판단을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의 신고를 선택하고, 이후 피해의 치료와 치유에는 무관심한 경향과 맞닿는 면이기도 하다. 시설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여성들의 폭력 경험과 이후 징후에 대해 주목하지 않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녀들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한 성격이나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환원할 뿐 이를 특별히 치유하거나 상담해야 할 문제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변화를 위한 제안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들은 시설이 문제의 방지책으로 성을 금기시 하면서 적절한 성교육이나 조치, 상담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자기 자신과, 관계, 성적 즐거움 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그녀들은 시설이나 직원들의 신념, 가치 등에 따라 성적인 태도, 가치관 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또한 시설 내에 존재하는 젠더적 상황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 생활 발달장애여성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와 대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상담소가 성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들과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부딪치고 고민했던 지점들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적 변화가 필요하며, 종사자들의 인식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내 종사자들은 장애인생활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들이 취하는 가치관이나 생활자들과의 역동에서 보여지는 태도 등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인권이나 성적인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들의 문제에 적절하게 상담 및 조치할 수 있는 적절한 원칙 제시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부모와 종사자는 엄연히 다른 위치에 있다.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우려, 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삶의 역동 등을 충분히 존중하되,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권리와 (특히)성인으로서의 성숙함,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은 관계적으로 형성되며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성교육이 생물학적 지식전달에 갇혀 있고,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혹은 집단 생활 공간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방적인 금지나 외부의 판단을 들이대기에 앞서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며, 그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설이라는 환경적 조건은 개인의 성적 실천이나 표현, 관계 맺기 등에 있어 제약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시설이라는 환경에 처해진 개인에게 성적권리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구조는 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시설은 유일한 대안이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시설은 그 형태나 성격이 변화하여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단기적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공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반성폭력, 교육 등 관련 법 제도가 발달장애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에게까지 뻗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외부 자원과 제도들이 시설 내에 들어가 발달장애여성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나 교육 등의 제도들이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 우리사회 현실에서 단시간 내에 발달장애여성들의 독립과 성적 주체성 확보가 어렵다면, 시설 안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 및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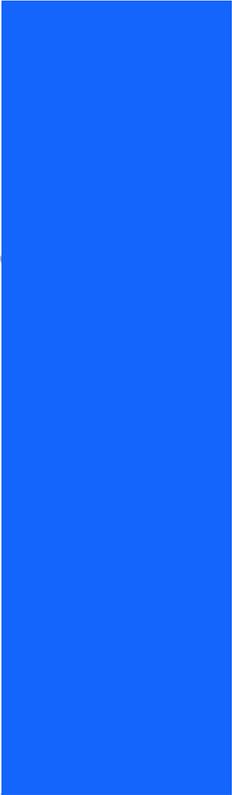
지금까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가 발달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주체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2009년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여성 성교육 사업을 정리하며, 우리사회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담론, 그리고 시설 내 발달장애여성 섹슈얼리티를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들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사회 발달장애여성들이 성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자유롭게 성과 관련한 실천, 관계 맺기 등을 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운동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비장애/이성애/남성중심의 성규범을 해체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설만이 장애인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회의 장애혐오와 분리를 깨기 위하여, 우리들의 연대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형성한 대안적 상상력과 담론, 도전들이 시설 안에도 투입되어 시설생활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은 장애인권 및 반성폭력, 성소수자 운동진영 등이 적극 가져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상담소가 올해 실시한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들과의 만남은, 그간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에서 쌓아온 성과들을 시설 안으로 가져가 역동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평가해보는 바이다.

지배적인 성적 규범 안에서 장애여성으로서 성적인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차별적이고 협소하게 구획된 기존의 욕망의 언어를 넓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더 많이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은, 시설에 생활하고 있지 않고 발달장애여성이 아닌 우리들이 그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할 때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광민영(2007),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 지속적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윤가현(2002), 「정신지체장애와 성」, 전남대학교출판부
- 장애여성공감(2005), 「공감-8호」
- Craft, A & Brown, H(1994), 「Practice issues in sexuality and learning disability」, London: Routledge
- McCarthy, M(1999), 「Sexuality and women with learning disability」,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The Centre for HIV and Sexual Health(2007), 「Pleasure: A booklet for workers on why and how to raise the issue of sexual pleasure in sexual health work with young people」



CHAPTER
07

시설, 그 울타리를 넘어서
- 탈시설 필요성과 운동을 중심으로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시설, 그 울타리를 넘어서

- 탈시설화의 필요성과 운동을 중심으로1)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I. 들어가며 - 탈시설화의 대두

2000년대에 들어 장애인인권운동은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등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처음 알려진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은 그간 벌어진 사회복지시설의 참혹한 현실을 종합세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계는 물론이고 지역운동단체와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모여 공대위를 구성하는 최초의 사건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30여 동안 시사방송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방영되었었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비리책임자와 인권침해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장애운동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이 화두가 되면서, 장애인의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일부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사건들이 부각되면서, 장애인의 비인간적 시설수용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대형시설에서의 삶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1) 이 원고는 필자의 석사논문 「장애인의 시설경험과 탈시설 이후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인권법평론 「장애인권운동의 새로운 흐름 - 탈시설운동을 중심으로」의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외에 인용된 자료는 참고문헌에 소개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의 변화와 확산, 복지수준의 향상, 자립생활이념의 대두 등이 ‘탈시설화(d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논의를 현실로 가져왔다. 그동안 장애인의 정상화이론에 근거한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개론서 안에서만 잠자던 권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탈시설화는 사회변화와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9년 ‘마로니에 8인’으로 불리는 구 S법인의 중증요양시설에서 나온 여덟 명의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투쟁은 그야말로 탈시설화의 촉발제가 되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이 투쟁은 서울시에 ‘전환서비스’라는 개념과 ‘탈시설정착금-체험홈-자립생활 가정’으로 대표되는 지원체계를 만들게 했다. 이후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II. 시설과 탈시설 - 그 경계 위에서

1. 장애인의 시설생활과 탈시설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우리 보다 앞선 1960-70년대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운동이었고, 인권과 복지 패러다임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시설보호와 전문가중심의 전통적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이뤄낸 결과이며 이후 서구 국가들은 대형시설을 폐쇄하고 제한이 최소화된 지역사회 내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을 우선 지원하게 되었다 (Emerson & Hatton, 1996; Shannon, Lason & Lakin, 2001).

서구사회가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게 된 데는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운동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과도한 시설수용에 따른 비용 부담, 서비스 당사자의 비판과 저항이 함께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1) 시설생활 경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시설생활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경험’이 많다. 남구현 외(2005)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생활인들과의 만남에서 ‘인권’은 무색할 정도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생활인들은 아침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더 이상의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단순한 수용보호는 당사자들에게 지역사회와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통해 무기력 상태가 강화되는 ‘시설병(hospitalism)’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무기력이 강요되고 있는 시설생활에 대해서 김경미(2005)의 연구에서 더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김경미(2005)는 활동보조를 이용한 전후경험을 비교한 질적 연구에서 시설에 살았던 장애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설에 살았던 이들은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집단생활이었으며, 또한 시설의 장기 거주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시설에서 생활은 개인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은 어떤 ‘꿈’도 갖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 장애인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시설에서의 삶은 개인의 자유가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설의 일정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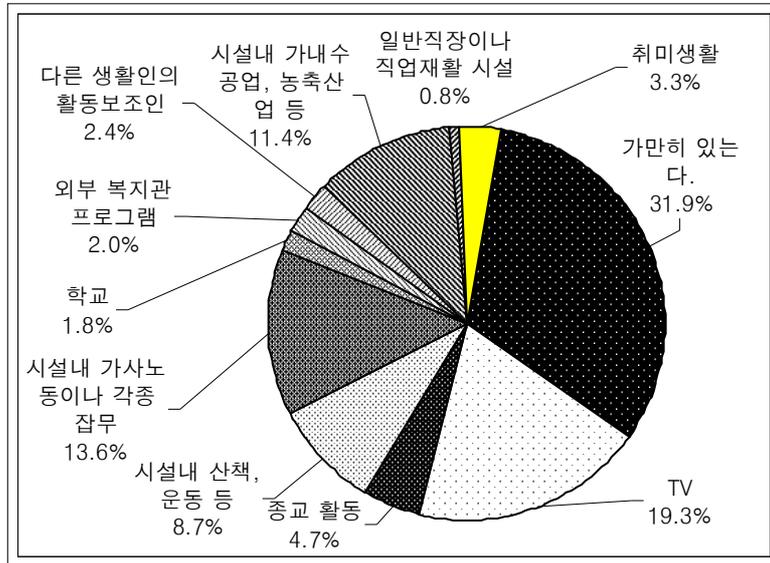
이 연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수용시설에서는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욕구들은 채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하고 싶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연구한 장애인의 탈시설 전후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시설생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경험한 것은 ‘단체생활 속에서 내가 없다’는 획일적인 삶에 대한 원망이었다. 정해져 있는 하루 일과에 자신을 맞춰야 하고, 식사시간외에는 ‘따분하고 지치고 할 일도 없는’ 스스로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일상이었다고 경험을 토로했다. 시설에서 규율한 물리적 제약 속에서 자유롭지 않고, 개인보다는 규율과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는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무시, 위계, 동정적 관계형성과 통제, 폭력, 획일적인 삶을 강요 받는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결과적으로 무기력이 ‘습성’이 되었고,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시설’은 분명 번지수를 가진 물리적 장소이지만, 또한 도덕적 장소이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서점이나 박물관이나 병원에 가는 것과는 다르다. ‘시설’에 들어가면서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라는 낙인을 맘속에 찍게 된다. 명목상으로는 돌봄을 받기 위해 들어가지만, 그것은 주변에서 돌봄을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²⁾.

아래 표는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 ‘낮 시간 동안에 무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가만히 있다’, ‘TV 시청’, ‘종교 활동’, ‘시설 내 산책, 운동’, ‘시설 내 가사노동이나 각종 잡무’, ‘다른 생활인 활동 보조’, ‘시설 내 가내수공업, 농축산’ 이라고 답한 92%는 실상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설 내’에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시설 내 가사노동이나 각종 잡무, 다른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 시설 내 가내수공업과 농축산 일을 담당하면서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고병권, 「탈시설, 그 ‘함께-함’을 사유하기 위하여」,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 밖으로! 탈시설 워크숍』, 2009, 41쪽.



[표1] 시설에서의 낮 시간 활동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해 학자들은 거주시설의 유형³⁾을 수용보호의 형태에 따라 인간창고형(warehousing), 원예형(horticulture), 정상화형(normalization)으로 나누기도 한다(정미원, 2004: 9).

‘인간창고형’은 정신질환이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유형으로 창고 속에 가구를 보관하는 것과 같이 시설생활자를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형태로 수용된 노인들이 일렬로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TV를 보는 경우, 시설의 직원들도 시설생활자들을 시설에만 붙들어 놓고 먹이고 씻기고 대소변을 가리게 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예형은 주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독립을 위한 자극을 주는 시설유형을 말하며,

3) ‘거주시설’의 유형은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공영(公立公營), 공립민영(公立民營), 사립민영(私立民營), 사립공영(私立公營)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설립 운영하는 ‘사립민영’의 형태가 가장 많다. 이용대상에 따라서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나눈다.

정상화형은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소규모시설로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삶을 강조하는 시설이 해당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시설은 위의 조사결과와 같은 ‘인간창고형’이다(박숙경, 2008.).

(2) 탈시설-자립생활에 욕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재까지 탈시설 개념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미국 일반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정의한 개념이다. 미국일반회계국은 “탈시설화란 ①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②시설 내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전재일 외, 2002).

앞서 고병권(2009)씨는 시설과 탈시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은 일단 법제상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공간을 하나의 ‘배치’로서 이해할 때, ‘시설’이라는 이름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삶을 박탈한 채 자연적 생명만을 관리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가령 장애인이 수십 년 간 집 안에 갇혀 있을 때 ‘집’은 ‘시설’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은 일차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을 격리시키는 모든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소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50.7%가 퇴소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퇴소를 원하지만 못하는 이유와 퇴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이는 시설 생활인들이 퇴소를 원하지만, ▲장애나 빈곤 등으로 독립할 기반이 없고,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입소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82.8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시설을 떠나 살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57.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거공간,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하겠냐는 질문에 62.14%가 자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 탈시설화를 향한 법제도와 정책방향

시설 보호는 장애, 빈곤 등에 의해 스스로 거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 치료, 휴식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시설 보호는 병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사람들을 집단수용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생활시설(institution, Asylum)에 의한 수용을 주로 말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거주(residential)와 보호(care)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칭하기도 한다.

(1) 법제도의 변화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8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거주인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 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각 시도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등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법제도에서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권리가 명시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법제도상에서는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산의 문제이다. 법제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정작 예산의 분배는 탈시설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큰 성과이지만, 주거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 탈시설-자립생활을 정책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조한진 외)>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는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립정착금도 번번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시설거주인의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한 바도 없다. 2011년부터 국고의 지원의 받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탈시설 지원업무를 추가한 것이 전부라 하겠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사정은 다르다. 앞서 말한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이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끌어왔고, 그 결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물량은 낮은 수준이지만 탈시설지원체계를 잡아간다는 것에는 의미가 크다. 자립정착금의 경우 2012년 12월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성남시만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3년 현재 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7년에는 15백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제일 중요한 주거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형태는 다르나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전세자금 지원, 주택매입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체험홈의 개수와 입소기간은 각 지자체로 차이가 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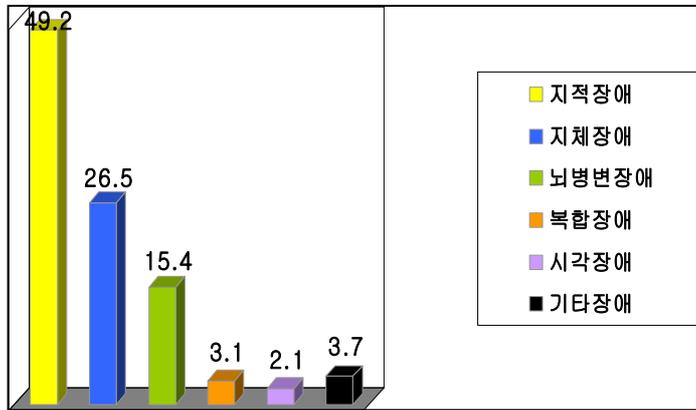
[표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공간
(2012년 12월 현재) :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서 인용]

구분	주거공간	개수	운영 방식	지원 형태	
				주택구입비	운영비
서울	체험홈	17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자립생활가정	9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직영	지자체 (매입임대)	지자체
부산	체험홈	2	위탁	지자체 (전세자금)	지자체
인천	체험홈	4	위탁	지자체 (전세자금)	지자체
	자립주택	2	위탁, 구 직영	지자체 (전세자금)	당사자
대구	체험홈	6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대전	체험홈	2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경기 성남	체험홈	2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자립생활가정	2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경북 경주	체험홈	1	위탁	지자체	지자체
경북 경산	체험홈	1	위탁	지자체	지자체
경남	자립홈	9	위탁	지자체 (주택매입)	운영 주체
전남	체험홈	2	위탁	지자체 (전세자금)	지자체
충북	체험홈	3	위탁	운영 주체	지자체

3. 정신적 장애인의 시설생활과 탈시설

특별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시설생활을 끊어볼 필요가 있다. 입소된 장애인의

약 70%가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입소자



[표3] 2008년 국정감사 시, 이정선의원이 발표한 장애인시설 사망자 중 장애유형

약 3만 명 중 약 2만 명 정도라 추산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정신요양원과 병원에 약 8만 명 정도가 입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8, 국가인권위).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 은 약 9만 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쉽고 이후 대응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인권을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보고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들이었다.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자기보호’나 ‘자기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인권유린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2008년 한나라당 이정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아동 사망통계’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정선의원은 ‘18세 미만의 비시설수용 비장애아동’에 비해 ‘18세 미만의 시설 수용된 장애아동’의 사망률의 28배가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시설 사망자 중 49.2%가 지적장애인이라고 밝혔다. 워낙 지적장애인의 수용율이 높기도 하거니와, 지체장애를 가진 시설생활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암전하게 할 목적으로 CP라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거나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가 말을 못하니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병이 악화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뒤늦게 병원에 간다’거나 ‘병원가도 병원에서 별로 하는 게 없다, 가족이 없는데다 말도 못하니 그냥 링겔만 꽂고 그냥 둔다’고 증언한 경우도 있었다.

“시설(조사)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4명 이었다. 그분들은 모두 시설에 온지 10년 이상 되었고, 학력도 초졸에서 중졸. 그곳 생활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능동적인 면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그저 종사자가 시키는 대로 할뿐.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직업 재활 한다는 명목 하에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저녁에는 TV보고 취침 시간이면 모두 자야하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다. 또 목욕이나 이·미용도 모두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 이걸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욕구조차 없는 그런 생활. 내겐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나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다. 위의 두 시설 같은 곳으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 1급이어도 누군가가 자기 누나에게만 돈을 주고 저에게 주지 않으면 골도 부리고 뼈질 줄도 아는 아이이다. 배가 고프면 서랍 속의 돈을 꺼내다 김밥도 사먹을 줄 알고, 우유도 사 먹는다. 제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좋은 새 옷이라도 입지 않는 제 소견이 멀쩡한 아이이다. 그런 아이를 시설로 보내면 몇 년 뒤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있다 - 장애부모 박씨4).”



[표4] 2008 국정감사 자료(한나라당 이정선의원, 출처 복지부, 통계청)

노력이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신적장애로 인해 지역사회 자립이 어렵다고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자립가능성을 먼저 포기해서는

따라서 지적, 자폐성장애 인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시설에 거주 하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던 지 특별한 옹호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Protection & Advocacy system(권리옹 호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4) 박문희, 『2005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2006, 국가인권위.

안 된다. 더욱이 본인은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오히려 시설거주를 원한다고 해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복지 선진국들도 다양한 경험과 시도, 또는 실패가 있었기에 현재의 사회적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왔다.

더욱이 유럽의 탈시설화는 지적장애인의 정상화 논의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에도 주거정책으로 장애인 서포티브 하우스링 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케어의 수준에 따라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규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Ⅲ. 시설, 그 울타리를 너머 - 탈시설로 가기 위한 노력

1. 탈시설화로 가기 위한 사회 환경의 변화

(1) 장애인정책의 전반적 변화 요구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일까?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아래 표와 같이 간단히 요약해 볼 수 있겠다.

[표5]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가치,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보호에서 지원으로, 수용에서 탈시설-자립으로) - ‘탈시설과 자립’에 대한 정부원칙의 명문화
○ 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인권보장을 위한 P&A(Protection & Advocacy) 시스템 도입 - 사회복지 신청권의 실질화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전환 계획 수립 - 탈시설전환기관의 설치 - 자립정착금 지원 - 부양의무 기준 폐지 - 긴급 사회안전망 구축
○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식 도입 (예, 직접지불(다이렉트 페이 Direct Pay) 방식 도입) - 공공의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도입 (예, 미국의 탈시설 전환서비스국 도입) -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화 (인권보장 및 탈시설 전환 정보고지의 의무화) -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시스템의 개선 - 시설내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임시(시험)거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 대안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할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 (체험홈 및 자립주택의 확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 - 실질적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확대 공급 -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 도입⁵⁾ - 그룹홈 미만의 주거서비스 확대 및 내용의 다양화 - 대형시설의 폐쇄와 소규모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로의 재편성

(2) 소송을 통한 국가책임의 요구

미국의 탈 시설 운동은 소송이 대표적이었다. 탈 시설 관련 각종 소송은 옴스테드 판결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옴스테드 판결(Olmstead v. L.C.)⁶⁾ 은 1999.6.22.

5) 2009. 12. 31. 국회에서 15만1천원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푼돈, 꺾값’ 연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장애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장애인법(ADA -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1990)에 의해 국가가 장애인을 시설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미국의 탈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판결로 유명하다.

인도의 경우는 빈곤계층과 소외 계층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시스템 운용과정을 개편하여, 공익소송 신청을 대법원에 편지한통으로도 할 수 있도록 사법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익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1990년 실라 바스(Sheela Barse)라는 사회 운동가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 당시 비범죄성 정신이상자라는 범주로 분류된 채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무기한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실상을 폭로한 기사를 대법원에 보낸 것이다. 그 결과 인도의 대법원은 향후 정신장애인을 감옥에 수용하지 말 것과 정신병원 시설 개선을 위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대학 병원과 지역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채용하여 정신과 진료를 제공하며, 일차 의료에 정실질환 치료를 통합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명령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했으며,

6) 루이스(Lois Curtis)와 엘라인(Elaine Wilson)은 1995년에 조지아주('Georgia 주 지역병원 (Georgia Regional Hospital)'을 떠나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주(州)법률과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병원 공무원들은 그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적합한 지역사회에서 그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위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들의 주치의는 그녀의 장애 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에 있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그에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도 된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에 그녀들은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갈 것을 말했으나, 병원과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녀들은 정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것은 지역사회에 사는 것이 거부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루이스는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8개월 후 엘라인 역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결과 '제11 순회항소법원(The 11th Circuit Court of Appeals)' 역시 원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항소법원은 지역사회 배치가 적정함에도 주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개인을 시설에 구금하였다면 이는 주정부가 미국장애인법의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핵심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옴스테드 판결은 지역사회에서 살만한 충분한 근거와 기반이 됨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에서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판결은 승소하게 이룬 것이다. 이 판결로 미국장애인법은 주정부의 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문제가 처음 폭로되었던 콜키타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대학 수련의 과정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정신병학과 심리학을 이수케 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일축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목적의 예산을 배정하라고 정부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⁷⁾. 인도의 경우 사법부가 공익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 공익소송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이하 ‘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⁸⁾.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신청권’이 행사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나 가족들의 뜻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거나 조치되는 무기력한 대상으로 다뤄져 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보호 말고 자립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존 시설보호를 받아왔던 3명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과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지역사회내 거주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로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 서비스변경 신청 운동은 사문화되어있던 서비스 신청권을 작동시키고, 장애인당사자가 자기가 선택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이 명문화된 자립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지원정책으로의 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소송은 충북 음성군과 서울시 양천구를 상대로 진행 되었는데,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시설보호를 원치 않는 어느 장애인이라도 서비스 신청 및 변경을 통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⁹⁾.

7)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2009, 교양인.

8)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9)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9. 12. 16일자. 탈시설 정책위원회.

IV. 나오며

경기도 모 시설에 시설조사를 간 적이 있었다.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에 변화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라셨다. 그간 자신이 이 모든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데에 부끄럽다고 했다. “시설병은 여기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는 것이군요.” 그날 원장님이 한 말이다.

대전에 있는 모 정신요양원에 조사를 간 적이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직원 한명이 시설내부를 돌면서 설명해 주는데, 직원 왈 “나는 여기에 직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여기가 참 고향 같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같아요.”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이 높아 보였다.

잠시 후 거주인들과 면접조사를 하는데, 한 정신장애인이 말했다. “내가 여기 온지 30년이 다 됐소. 처음에 아버지가 날 여기 들여보낸 후 돌아가셔서 형제들은 나를 절대 꺼내주지 않으니, 내가 젊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오십이 넘었소. 그 세월동안 나는 연애 한 번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평생 여기서 늙고 있단다오.”

요즘에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의 모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있다. 언어장애가 심한 한 장애여성을 상담하는데, 자립은 아직 못하겠지만 며칠 동안 밖에서 살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 용기가 생기겠다고. 5살쯤 부모에 의해 입소된 이 여성은 다행히 가족들이 계속 면회를 오고 있었다. 자립은 왜 하고 싶냐고 묻는 내 질문에 그 여성은 종이에 푹푹 눌러썼다.

“늦잠 자고 싶어서.....”

이 시설에서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소박한 듯 하지만, 전혀 소박하지 않는 이 여성의 한 마디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존재의 정체성을 묻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거기에는 누가, 무엇이 있는가. 시설이 보호와 육성의 공간인지, 파괴와 감금의 공간인지를 논하기 전에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자. 시설에 격리된 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것, 일 년에 한 두 번 놀이공원에 간 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 그 삶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제거된 채, 삶의 모든 색깔이 벗겨진 채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 무색(無色)의 삶은 무엇인가. 조르지오 아감벤(G. Agamsen)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발가벗겨진 삶 (barley life), 날 생명(just life)’이다. 인간의 삶이 생물학적 생명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다시 말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고, 성장을 하다 또한 쇠약해져가는 ‘그저 생명체’로 축소되는 것이다¹⁰⁾.

이탈리아의 바자리아¹¹⁾는 고리치아 주립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정신병원의 비참함을 보고 개혁을 착수했다. 개방화를 통해 800명의 환자중 반을 사회로 복귀시킨 것이다. 그러나 외박을 나간 환자가 아내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바자리아는 원장자리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것이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다시 상조반니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갔다. 그는 가면서 ‘나는 상조반니 병원을 좋은 병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가는 것이다.’

10) 고병권, 앞의 책. 43쪽.

11) 이탈리아의 정신과 전문의. 개방적인 의료정책으로 대형정신병원을 폐쇄시키고,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180호’를 개혁적 정치인과 의료인들과 함께 통과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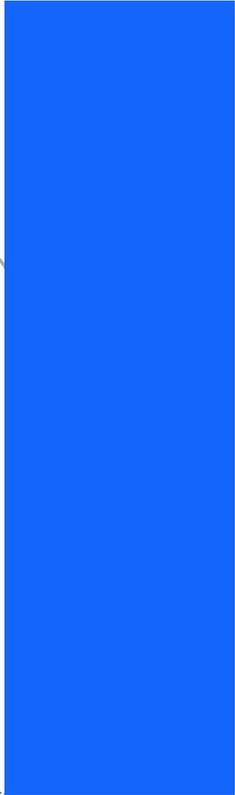
그는 자신의 원장으로 있는 동안 상조반니 병원을 폐쇄시켰고 180호 법안을 통과시켜 정신장애인의 수용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가 폐쇄시킨 상조반니 병원 외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자유가 곧 치료다”¹²⁾

12) 이시가와 노부요시, 『마음을 앓는 사람들』, 1995, 예영커뮤니케이션. 최근 소위 ‘바자리아법’이 통과된 이후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We can do that”가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한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린 영화이다.

참고문헌

- 강희철. 2008.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 비교”. 『장애인거주서비스의 동향과 쟁점-2007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 성과 발표회자료집-』. 2007.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고병권. 2009. 「탈시설, 그 ‘함께-함’을 사유하기 위하여」.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밖으로! 탈시설워크샵』. 노들장애인야학 외.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Vol .57, No. 4. 11, pp253-274.
- 김도현. 2007a. 《당신이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도현. 2007b. 《차별에 저항하라》. 박종철출판사.
- 김병하외 3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실태 및 운영개선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제2권 제1호. 1996:27.
- 김용득. 2005.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 №3. 363-387.
- 김정하. 2008. 『장애인의 시설생활과 탈시설 이후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 석사학위논문 : 장애인의 시설생활과 탈시설 이후의 경험은 어떠한가?』.
- 김진우. 1999.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264-272. 김용득·유동철.편저. 인간과 복지.
- 김통원외. 2004. 『2004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성균관대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남구현 외.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박숙경, 2005a, "한국사회의 탈시설·사회복지시설 민주화 운동 분석"(미발표자료).
- 박숙경. 2007. “거주지원서비스 유형별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 연구”. 『장애인복지학회 2007 추계학술발표』. 장애인복지학회.

- 변용찬. 2000.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0년 3월
- 보건복지부. 『2005보건복지통계연보』 .
- 보건복지부. 2005.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결과발표 보도자료(2005.7.)
-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2008. “내가 시설에 있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탈시설을 위한 시설생활인 증언대회 자료집』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이배근. 1998. “아동의 권리와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고찰” , 『국회인권포럼 제1회
정책 심포지엄자료집』 .
- 이성규. 2001.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라이제이션:정상성 개념의 형성과 진화』 .
홍익재.
- 이성규. 2003. “시설·탈시설화를 넘어”. 『장애와사회』 창간호. 우경서원
- 정개원, 2003, “맹목적인 탈시설화의 위험성” 『장애와사회』 창간호, 우경서원.
- 조한진. 2006. “탈시설화를 넘어서”. ≪반(反)시설-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조한진 외, 2012.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 이사가와 노부요시. 1995. 『마음을 앓는 사람들』 . 예영커뮤니케이션.
- 샌드라 프레드먼. 2009. 『인권의 대전환』 . 교양인.
- Cathy Ficker Terrill M.S, “Closure of Government Operated Institutions and
Building Inclusive Community Supports(정부운영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제의 수립)” 『시설폐쇄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제의 수립을
위한 토론회』 . 2007. 12. 4.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8

시설 종사자, 노동을 말하다
- 돌봄과 노동을 중심으로

양미 / 서부비정규노동센터

시설 종사자, 노동을 말하다

양미/서부비정규노동센터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노동인권 현실을 돌아봄으로서 노동자성 자각하기 - 나와 우리가 노동자로서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발견하고 찾아가기 - 나와 내 현장, 지역공동체, 제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강의 준비물	전지, 매직, 스카치테이프, a4용지 반 접은 것, 프로젝터, 노트북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가제<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 00씨의 하루>라는 짧은 글을 읽고 자신의 노동인권 현실을 살핀다. <방법> 1. 각자 <~00씨의 하루>를 읽고 마음에 꽂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골라 주어진 용지에 쓴다. 단, 용지 하나 당 하나씩만 쓴다. 2. 작성한 용지를 모아 비슷한 주제와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왜 자신의 마음에 남았는지를 이야기 한다. 3. <~00씨의 하루>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 한다. - 주제별로 모듈활동을 통해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인권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방법> 1. 모듈을 6명씩 5모듈으로 나눈다. 2. 선택한 주제에 대해 각 모듈별로 토론 후 전지에 작성한다. 예) 주제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는 누구이며, 어떤 차별에 처해 있는지 차별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필요한 권리를 찾는 것에 방해가 되는 현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 일자리 영역과 지역사회, 정부 또는 제도의 영역으로 자세히 작성. * 형식은 각 모듈에서 원하는 대로 가능. 3. 모듈별로 발표하고 느낀 바를 이야기 한다.
주의할 점	
강의 정리	PPT
읽을 거리	- '빨간거북의 우화' 등

<읽을 거리>

<빨간거북의 우화> 1)

철수의 시(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자작시)²⁾

대학로

밤마다 사랑은 별이 되어 극장마다 술집마다 켜지고
청춘은 들개처럼 골목을 쏘다녔다.

노랗게 익은 은행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찬바람은 불고, 서울대 병원을 혼자 빠져 나오는 길
군밤 떡 김밥 오징어 좌판, 풀빵 수레가 군데군데 들어서
흰머리, 두꺼운 외투, 텃 손으로
포근한 마음을 기다리고
위산과다 억제제 프로젝트 MB893 피험자가 되면
공짜 병원 밥에 거금 260만원이 생기는데
쉬우면 사는 게 무슨 재미냐고
경쟁자는 모두 20대 나만 30대 후반이다.
누구의 욕심에 치였는지

-
- 1) 2010년, 2011년 은평지역의 노동자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현실 속 가상 인터뷰와 동화로 만들어봤습니다.
 - 2) 철수는 제가 상임활동가로 있는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의 회원입니다. 그는 시인지망생이죠. 그의 허락을 얻어 실었습니다.

까만 교복으로 퍼렇게 멍든 상처를 가리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햇살보다 밝게 떠들며 노는 소리에
외려 위로를 받으며
방값 이십만 원 빼고 남은 만 원
새마을금고 물어 물어 인출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하는데
앞서 뛰어간 단발머리 여성은
터진 올에 용이로 드러난 부은 다리를
까만 스타킹으로 새로 감싸고 있다.

반지하 원룸

창문에 어린 어스름
오직 시계만이 아침인지 해거름인지 알려 준다
빛은 세상을 햇갈리게 할 뿐이지
우기의 밤이었나
바퀴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차르르 싱크대 밑으로 숨는다.
축축한 마음에도 바퀴벌레가 까맣게 자랄 것 같아
사랑하는 그녀에게도 뽕뽕 숨겨 두었던 동굴을 떠나
따사로운 햇살에 흠뻑 젖으며 한 장 두 장 마음을 꺼내 말리고
푸른 한강물에 충혈된 삶을 식힌다.
정착을 꿈꾸지만 유랑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주차된 차가 창을 가리거나
방범 쇠창살 사이로 어둠이 밀물지면
교도관도 동료도 없는
드물게 찾아 온 노크소리에 마음 줄이는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는, 자기 검열하는
감옥의 독방이 된다.
지상의 소음이 하나 둘 꺼지고
매일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늘도 늦잠을 잔다.

햇살도 평등하지 않다.

**【현실-미래는 없다, 팔아버렸기에
여성노동자 수다카페 가상 인터뷰】**

영미) 저는 혼자서 두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죠.

<일>

아침9시 출근해서 밤8시에 퇴근해요. 원래 퇴근시간은 저녁7시지만 이것저것
마무리 하다보면 항상 8시를 넘겨 퇴근하게 되죠. 작은 병원이라 탈의실도 없고,
식사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편해요. 식사 중이라도 환자분이 오시면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맙죠.
결혼 전에도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임신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아이 낳고 쉬었더니
이혼하고 다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랑 먹고 살 수 있으니 이 일자리가
고마워요. 아이도 키워야하고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열심히 벌어야죠.

<건강_잠>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아요. 일할 때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집에 있을 때도 아이 챙기랴 정신이 없으니까... 대충... 잠은 아이가
깨기도 하고 해서 쪽잠을 자요. 대충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크게 아프지만
얕으면 좋겠어요.

<돌봄_교육과 육아>

아이를 가까운 보육원에 맡기고 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일을 해야
아이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일하는 시간도 길어서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찾아오면 아이는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일하는 평일에는 아이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아이에게 늘 미안하죠. 그래서 그런지 주말엔 아이와 함께 보내요. 주로

동네 대형마트에 가서 아이가 사 달라는 장난감 같은 걸 사 주죠. 아이는 늘 저에겐 큰 힘이 되요.

<여가시간_술, 놀이>

퇴근하면 곧장 아이 찾아오고 씻기고 먹여서 재우죠. 항상 정신이 없어요.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는 아이에게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따로 휴식이나 휴가를 갖진 못해요. 그래도 아이 얼굴 보는 게 낙이죠. 아이에게 뭐든 다 해 주고 싶어요. 늘 피곤하긴 해요. 가끔은 5분 대기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요? 꿈도 못 꾸죠.

미희) 5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도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부업인 셈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일>

식당에서 알바로 부업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일하다가 다쳐서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식당(고기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요. 지금은 남편도 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두자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어려운 점요? 글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치마 입고 일해야 하니까 신경이 쓰여요. 가끔 짜증나게 하는 손님들도 있구요. 술을 따르라던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든다던가... 뭐, 이런 걸로 피곤하게 하는 경우죠. 그렇지만 남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12시가 넘어서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인원감축 때문에 일이 늘었다네요. 잠도 잘 못자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안쓰러워요. 그래야 겨우 회사에서 안 쫓리고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가장인 남편은 그럴 수도 없고... 참 안됐어요.

<건강_잠>

큰 식당이라 일이 많아서 손목과 팔 관절이 시큰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지만 그냥 개인이 알아서 참거나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죠. 잠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나눠서 자니까 피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 밥 해 먹여야 하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잠깐 더 자다가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죠. 대부분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많이 늦은 시간이라 티브이 잠깐 보다가 바로 잠드는 것 같아요. 남편요? 술 좀 안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 들었어요. 아프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일 년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그때 진 빚이 아직 있어요. 그때 집도 줄여서 월세로 옮겼는데 아직 다 못 갚았어요. 나이 들어서 아이한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크게 아픈 사람도 없고 건강한 편이라 다행이에요.

<돌봄_교육과 육아>

아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냉장고 뒤져서 저녁 먹고 태권도 학원에 가요. 그런 것 보면 아이가 불쌍해요. 그래도 아이 미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자꾸 맞고 들어와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돈을 받아서 혼자 사 먹거나 제가 몇 가지 반찬 챙겨서 보내곤 해요. 요즘엔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아이가 따라가기 힘든가 봐요. 얼마 전엔 영어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왕따 안되게 하려면 보내야죠. 부모가 아니라 돈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여가시간_술, 놀이>

생각도 못해요. 시간 있으면 일해야죠. 아이 학비 대고, 집 때문에 대출 받은 게 있는데 빨리 갚아야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돌려구요.

은영) 정규직이고 결혼은 아직 안했고 부모님들과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살아요.

<일>

신발회사에 다녀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죠. 아침9시 출근, 저녁6시 퇴근이지만 정시 퇴근은 하기 힘들어요. 저녁 먹고 다시 야근하는 경우가 많죠. 결혼요? 글썄요. 그냥 일하다 보니... 기회가 되면 하게 되겠죠. 월급은 카드값으로 대부분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집에 함께 사니까 집 걱정은 안 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학 다니는 동생 학비 때문에 아파트 경비직 하시는 아버지 월급으론 가족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제 월급까지 보태서 겨우 맞추고 있어요. 동생이 졸업하면 독립하고 싶단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당분간 집에 보탬이 되긴 어렵지 싶어요. 부모님 연세도 있고, 또 보증금 마련도 해야 하고...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지금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아파트 경비직에서 쫓렸다고 해서 걱정이예요. 더 일을 많이 하더라도 급여가 더 쎄테로 옮기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내가 디자인한 구두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_잠>

하루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출근하죠. 집에서 잠만 자요. 건강요? 특별히 나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되고 가끔 기분이 우울해 지고 쳐지는데 그럴 땐 쇼핑으로 해결해요.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나이 드는 것이 무서워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제가 실직하거나 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부탁해서 보험들을 몇 가지 들었어요.

<여가시간_술, 놀이>

퇴근하면 직장 동료들이랑 술 한잔씩 하고 들어가요. 이 시간이 켈 편해요. 퇴근 후에 한잔 하지 않으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없어서..ㅎㅎ 놀이요? 백화점구경이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희) 저는 청소노동자예요. 대학 다니는 아이와 대학 졸업 후 정식 일 자리를 찾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남편은 정년퇴임 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일>

새벽6시 출근해서 오후4시까지 일해요. 대학 건물 한 동을 혼자 감당하는 일이 벅찰 때도 있지만 제가 청소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죠. 그런데 청소하는 일이라고 무시하면 기분이 상해요. 없는 사람 취급하거든요. 우리 근무시간도 학생들 눈에 띄게 학생들이 없을 때 청소해야 해서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돈도 너무 적게 주고. 예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빗자루 밖에 몰라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_잠>

새벽에 첫차 타야 출근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 전날 일찍 자요. 저녁 먹고 누워서 텔레비 좀 보다가 자요. 애들이 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들 들어오면 잠깐 깬다가 다시 자요.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특별히 아픈 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냥 여기저기 쭈시고 하죠. 그래도 허리 숙여서 일하고 건물 하나를 혼자서 다 치워야 해서 일이 많기도 하고 하니까 더 아픈 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큰 돈 들여서 치료해야 하는 일만 없으면 좋겠어요.

<돌봄_교육과 육아>

작은애가 대학에 다니는데 학비가 엄청나요. 남편 퇴직금은 아이 학비로 벌써 다 들어갔고. 그래도 집 하나는 건졌으니 다행이죠. 큰애는 대학 졸업하고 정규직 일 자리를 아직 못 구했어요. 알바하면서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죠. 작은애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도 부족한지 알바를 하더라고요. 애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부모가 못나서 애들이 고생이죠. 그래도 우리 부부가 아직 일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가시간_술, 놀이>

영화관에 가 보고 싶어요. 애들이랑요. 나중에. 쉬는 날이나 시간엔 밀린 집안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잠을 자요. 쉬는 시간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생각중이에요. 봉사하는 모임 같은 데 나갈까 싶어요.

동화 : 바뀐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은...

식당노동자 미희 씨의 하루

아침9시. 남편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식사와 등교준비를 맡기고 미희씨는 출근준비를 서둘렀다. 남편은 지난 주말에 텃밭에서 수확해 온 감자와 채소들로 이제 막 아침밥을 차려 놓고 든든하게 많이 먹으라고 성화다. 남편은 지난달에 직장을 그만뒀다. 좀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아이의 어린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였다. 식당에서 일해 버는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 돈을 벌지 않아도 기본소득³⁾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안

3) 돈을 버는 능력과 상관없이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基本所得)

과거에 '빈곤'은 곧 '게으름'을 일컫었었죠.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가난합니다.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엿한 '소비자'가 되지 못하면 결핍되고 부족한 인간, 비정상적으로 취급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늘 열외인간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임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노동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노동도 있지요. 고정수입이 없어도,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소득자격이 실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능력과 다를 수 있다' - 클라우스 오페

"노동윤리 시대에 임금노동을 중시했던 것에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본자격부여와 기초보장이라는 전제로 관점이 변화하고 그 실현이 뒤따른다면 이 해결책은 실현가능하다. 이 개념은 자산조사와 노동의지 평가를 폐지하고 과세를 통한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으로 구체화된다." "그것은 다른 것, 다시 말해 노동work과 노동시장labour market의 분리로 보완되어야 한다."

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미희씨는 일하는 것이 좋고 남편의 수입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다. 남편도 미희씨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미희씨의 직장생활을 응원해 주었다.

10시30분. 버스 기사들의 파업으로 미희씨는 직장에 늦었다. 출근시간이 길어 조금 피곤했지만 버스기사들의 요구(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라는 요구)에 동의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의 파업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꺼이 불편을 감수했다. 미희씨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미희씨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11시. 영업시작.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릴까? 미희씨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자신의 일이 만족스럽다. 이제 1인 이상 식당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나 사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희씨는 자신의 일이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가끔 무례하게 구는 손님이 있긴 하지만 몇 년 전처럼 참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손님이 몰려오는 12시부터는 바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시간에 점심 식사를 미리 해 둔다. 준비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고 편하게 식사한다.

낮12시. 점심식사 손님이 몰려온다.

오후3시. 저녁식사 준비시간이다. 한 시간 동안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역시 그 동안에는 가게 문을 닫아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었지만 식당노동자의 식사와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캠페인이후 제도가 바뀌어 식사와

- 『새로운 빈곤』 지그문트 바우만

기본소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가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가와 관계없이 받게 되는 소득입니다. 즉 내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내가 재산이 있고 없음이나 많고 적음, 혹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되느냐’나 ‘얼마로 평가되느냐’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든 안보이든 곳곳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노력의 결과를 세상에 있는 모두(사람, 자연)와 나누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오로지 혼자만의 실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식시간엔 가게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었다.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3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미희씨는 계약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더 일 할 수 있고, 정규직보다 임금은 더 높지만 노동조건에 차이가 없고, 퇴직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있으니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저녁6시. 저녁 근무자와 교대하고 퇴근한다. 미희씨는 바로 집으로 향할까 하다가 집으로 전화를 건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시아버님 요양원에 들릴 생각이다. 만60세 이상이면 언제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노인 요양원은 그 동안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애써 온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노인요양원이란 곳이 자칫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그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 결과 요양원이 권력화 되고 그 결과 사회에 위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반대의 의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친지 등 평소 노인들이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이나 생활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네마다 마련하여 서로 왕래가 어렵지 않도록 했다. 그래도 미희씨는 뭔가 미흡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노인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잘 모르겠다. 한숨이 나온다.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내일 할 일들(내일 저녁에는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갈 예정이다), 다음 달 여행계획을 이야기 한다. 올해 결혼 13주년이 되는 미희씨네 부부는 그 기념으로 다음 달 휴가동안에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아이를 재우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

대학원생이자 시인 지망생인 철수의 하루

아침8시. 부모로부터 막 독립 해 나온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공동거주구역(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에서 벗어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간다. 벌써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노란색, 분홍색. 회색빛을 띠었던 나무들에도 길가에도 푸릇한 빛의 새싹들이 환한 빛을 띠며 봄이 왔음을 환영해 준다. 바람에도 겨울

동안의 매서움이 언제였냐는 듯이 따스함을 머금었다. 상쾌한 바람. 그래서일까. 겨울동안 느끼기 힘들었던 햇볕에서도 봄을 느낀다. 상쾌함을 느끼며 한 시간 가량 산책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아침은 뭘까? 얼마 전 ‘동네부엌’이 만들어 진 후 아침식사는 늘 그곳에서 해결한다. 혼자 사는 사람, 아침을 직접 해 먹기 바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네부엌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다. 동네부엌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 준비 해 놓고 가기 때문이다. 동네에 있는 공동텃밭에서 일군 작물들이 그 재료다. 철수도 다음 사람을 위해 카레를 만들어 놓고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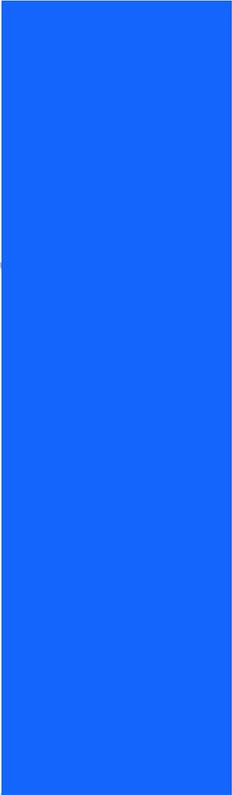
오전10시.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이다. 그를 지도하는 교수가 말하길, 지도교수를 지도했던 교수는 대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교에서 하는 생체실험의 실험자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야 했는데, 졸업 후 사회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몇 백에서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이상한 가치관이 만연했던 시절의 이야기란다. 철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공부를 하는 것도 노동인데 당연히 돈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시절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복지라는 이름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겼었다고 하니 말이다. 지도교수의 말에 의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랬었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점(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에서 자전거를 빌렸다. 그가 공부하는 대학원은 자전거로 30분 거리에 있는데(지금은 누구든 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치구 마다 대학과 대학원이 하나씩 있다) 자동차가 거의 없는 거리에서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수업이다. 과거에는 육체노동?, 정신노동?(그게 뭐지?)을 구별했고, 정신노동으로 불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지위를 보장 받았다고 한다. 높은 지위가 뭐가 좋다고! 쳇! 이상한 세상이었던 것 같다.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오후5시. 도서관에 들렀다가 시집을 한권 빌려 왔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서너개 썩은 되지만 철수가 구하고 싶었던 시집은 오래전에 절판된 책이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제일 큰 도서관에서만 빌릴 수 있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동네부엌에 다시 들렀다. 오늘은 동네부엌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다. 동네부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겨울에 만들었던 김장김치로 김치전을 해 먹기로 했다. 철수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도 멋지게 해 낼 테다! 하하.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밤9시. 동네부엌에서 푸짐한 김치전을 배불리 먹고, 작년 겨울에 담은 포도주도 한잔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공동주택은 거실을 공유하는 구조로 각자에게 방이 배치되는 형태다. 오늘은 철수가 쓰레기를 치우는 당번이다.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한 달 동안 쓰레기가 20L나 나왔다. 네 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꽤 된다. 쓰레기통을 정리해서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다. 쓰레기들은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더 분류되어 현재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들의 재활용을 연구하는 실험에 사용되기도 한다. 쓰레기를 생각하자 한숨이 나온다.

밤10시. 읽고 있던 시집을 덮고 오늘 아침의 기분을 음미하며 자작시를 써 본다. 향긋한 꽃과 풀냄새를 다시 생각하니 그 향이 맡아지는 것 같다. 내일은 동네부엌 게시판에 이 시를 붙여 볼 생각에 흐뭇해진다.

밤11시. 이제 자야지하다가 내일 할 일이 떠올랐다. 내일은 동네골목에 패인 곳들을 다시 정리하는 작은 공사가 있다고 했다. 그곳에 가서 땀이나 흘려볼까~. 음냐. 시간이 몇 시부터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공지 글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든다.



CHAPTER
09

인권교육, 한 발 더 1, 2
- 인권교육 시연 나누기

이묘랑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한 발 더 1, 2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요청에 의한 교육 진행시 요청자의 의도와 요구를 잘 파악할 때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인권교육 요청에 따른 ‘교육 준비-교육 실행-평가’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교육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강의 준비물	○ PPT 사용 기자재, 시연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준비물
진행 내용	<p><워크숍 진행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교육 참여자에게 준비된 교육요청안을 제시하고 워크숍 일주일 전까지 교육기획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한다. 교육요청 내용 가운데 필요하다면 진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시연 시 조정의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 참여자의 기획안 가운데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 워크숍에서 시연 여부를 조정한다. <p><워크숍 당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연은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진행처럼 진행하며 워크숍 참여자들은 실제 교육참여자의 역할을 한다. 단,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시연은 10~15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축약해서 진행한다. ○ 시연 후 프로그램에 궁금증, 조언 등 피드백을 진행한다. ○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한다.
주의할 점	○ 시연 후 피드백이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권교육의 적절성, 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강의 정리	○ 전체 시연 후 인권교육 준비-실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본다.
읽을 거리	○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인권교육 오르락 내리락 고개넘기(2010) 인권교육센터 들
기타	

<참고자료> 인권교육 시연 강의를 위해 사전 진행된 인권교육기획안 과제 내용

1. 개인신고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요청 (인권일반, 인권감수성)

- ① 목적 : 종사자 인권교육
- ② 소속 및 단체 : 나눔의 동산(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인신고시설
- ③ 교육대상 : 원장 및 종사자 10명
- ④ 참여자 정보 : 근무한 지 5년 이상 되었으며 인권교육 경험 없음
- ⑤ 원하는 내용 :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

규모가 작다보니 교육시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장애아동시설 종사자의 장기 인권교육 요청(아동, 청소년권리 혹은 노동권 등)

- ① 목적 : 종사자 인권교육
- ② 소속 및 단체 : 동서아동재활원(지적장애(1~3급)아동 100명 거주)
- ③ 교육대상 : 전체 종사자 40명
- ④ 참여자 정보 : 매년 인권교육 진행. 모든 종사자가 인권일반교육은 받은 상태.
- ⑤ 원하는 내용 : 인권 전체를 훑을 수 있는 장기교육

매회 1회성 교육을 받다보니 깊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올해는 5회 정도의 장기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용인들이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종사자분들이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동의 권리나 이용인, 종사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되면 좋겠습니다.

※ 전체 5회차 교육기획안을 모두 작성하되 그 가운데 집중하고자 하는 1회분에 한하여 상세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가능하면 1, 2회 교육보다는 교육이 좀 더 심화되는 3회차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부모 대상 인권교육 (교육대상의 변화에 따른 교육기획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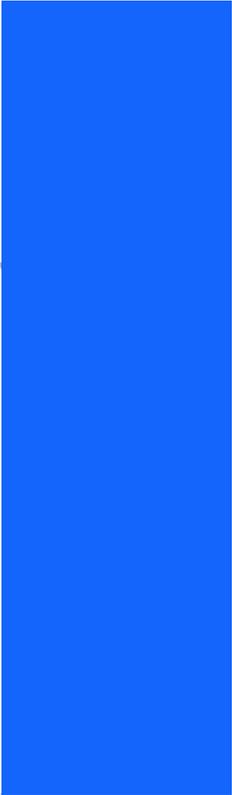
- ① 목적 :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
- ② 소속 및 단체 : 남부주간보호시설
- ③ 교육대상 : 장애인부모 40명
- ④ 참여자 정보 :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모두 다름
- ⑤ 원하는 내용 :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다.

시설에서 나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적으로 대해도 집에 가면 여전히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변화가 더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저희 시설에서 처음으로 부모님 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 경기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사례 나눔)

- ① 목적 : 생활 속의 갈등사례를 통한 인권이해
- ② 소속 및 단체 : 경기지역 개별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
- ③ 교육대상 :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 60명
- ④ 참여자 정보 :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로서 각 시설의 이용자 인권관련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원함.
- ⑤ 원하는 내용 : 사례를 통한 현장에서의 갈등해결.

시설 내 인권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이용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본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기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제 종사자들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등 시설 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HAPTER
10

인권교육, 내겐 너무 어려운!
- 인권교육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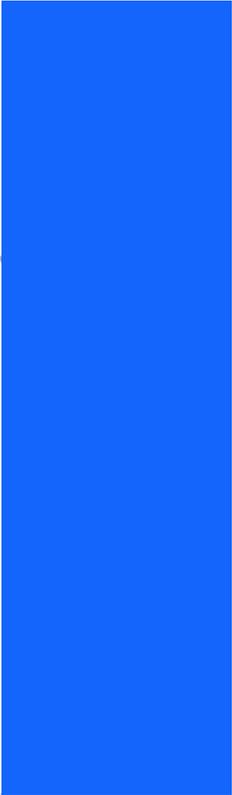
이윤경 / 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내겐 너무 어려운!

이윤경/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교육진행안	
강의 목표	○ 인권교육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고개들을 살피고,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강의 준비물	○ 전지 6장, 크레파스, 스카치테이프, 노트북, 프로젝터, 칠판
진행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듈별로 아래 고민카드를 하나씩 고른다. 2. 선택한 고민에 대해 전지 반쪽에는 “왜 이런 고민이 생겼는지”, 다른 반쪽에는 “고민 해결 비법”을 모듈에서 논의해서 정리해본다. 3. 내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 전지를 돌릴 수도 있다. 4. 모듈별로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고, 인권교육의 어려운 지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고민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장에 도착했더니... 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와 책상이 고정식이네... - 식사시간이라고 2시간 교육인데 30분 일찍 끝내라니... - 원장님이 함께 있는데 참여자들이 말을 안해요.(이걸 여기에 넣는게 좋을까요?) - 몰랐는데 청각장애인이 있었네... 2. 나한테 왜 이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꾸 말도 안 되는 개그치면서 분위기 흐려! -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 말꼬리를 잡으면서 내가 틀렸다고 지적해! - 무반응... 3. 아니 벌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풀기 마음열기 하다가 40분이 지났어.. - 모듈활동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배치해야해? - ‘요고이겨저거’정도는 다뤄야 인권교육인데...시간이... -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 때문에 정리강연을 할 시간이... </div>

	<p>4. 아니 선생님... 허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대접한다면서 국장님이 참여자 중 여자쌤한테 음료수심부름을... - 분위기 띄운답시고, 누군가를 희화화하는 그! - 살짝 왁자지껄한 참여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호통치는 “장”님! <p>5.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관 종사자 교육을 했더니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하는거 같아. - 인권교육 하러 나가는 게 눈치보여... - 인권교육을 듣고 나니 기관 내 불편한 장면이 보이는데 말은 못하겠고 찝찝하고.. <p>6. 왜 나에게 정답을 알려 달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인권적이냐 아니냐 자꾸 물어봐. - 너무 어려운 문제에 내 생각을 묻더라고... -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본인이 이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라고 따져.
주의할 점	
강의 정리	
읽을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고개 넘기」 ○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권교육메뉴얼」
기타	



CHAPTER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획회의록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을 거쳐 심화과정까지 이어지는 이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용자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하였습니다.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이끌어 낼 ‘인권 교육 진행자’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장애인 인권 단체 활동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민을 거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과정을 참가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강의를 어떤 지점들을 목표로 기획했는지, 그 목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지, 참가자 여러분들과 어떤 가치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실린 회의록은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기획을 위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미 2012년도에 기획한 기본과정 논의 내용보다 심화과정 논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애초,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에게 촉박하게 동의를 구하긴 하였습시다만, 개괄식, 문답식으로 작성된 것을 다시 정리하다보니 편집의 어려움으로 회의록 전체를 신지는 못하였습니다. 맥락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참가자 여러분들이 전체 기획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거름 삼아 장애인시설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 고민 해주신 기획회의 참가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 시 : 2013년 2월 6일(수)

참가자 : 김영문, 김진숙(동천의 집)/ 최은숙(동원재활원)/ 박지현(가온들찬빛)/
이승한(승덕재활원)/ 박문희(전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이찬미, 홍진수, 박옥순(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 본 회의록에서 한장협 참가자는 생략함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강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강사의 역량 강화를, 강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2012년 10월, 한장협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장협의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은 교육내용과 과정을 인권교육 진행 경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교육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시설 종사자와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서로의 가치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다시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2012년 기본과정에 대한 전체 평가 내용을 상기해보고, 올해 기본과정 방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에 진행했던 강사양성 과정의 전체 평가회의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전체적 느낌, 둘째, 교육내용, 교육주제, 물리적 조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 셋째, 참가자 피드백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세부 내용으로는 ○장기간 숙박일정으로 인한 참여 어려움 ○ 1,2,3차 교육 간의 간격 조정 ○법률 강좌의 통합 필요 ○인권 딜레마 관련 강의 내용의 반복 ○시설 이용자의 자립 지원 관련 강좌 필요 ○‘탈시설’가치와 개념 공유 필요 ○인권딜레마, 인권침해, 구조나 정책적 접근 필요 ○인권 교육시연 및 주제 강화 필요 ○많은 교육주제로 주제 당 논의시간 부족 ○2012년 기본과정 수료생을 2013년 교육과정에 투입하여 역량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에 첨부한 2012년 총평가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기본과정만 진행하는지, 아니면 심화과정만 진행하는지요? 아님 둘 다 진행이 되나요? 그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준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둘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평가가 있는 해여서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본과정은 평가 전에, 심화과정은 평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본과정 후에 본인이 교육진행을 해 본 경험이 있어야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양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종사자가 속한 시설 측 입장에서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간격이 길어야 해당 종사자의 업무를 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인권교육 강사양성의 핵심 주제, ‘나의 정체성 찾기’와 ‘비폭력 대화’

-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3년 기본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신설했으면 하는 교육주제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안에서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합니다. 시설마다 이 부분이 큰 고민거리죠.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도구개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치료학과교수, 환경(상황)중심 교수법 전문가, RT센터

소장 등을 TF로 더 구성하여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 의사소통도 분명 중요한 교육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협회의 인권 교육 강사양성 과정에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안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논의과정과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기간에 기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게다가 도구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이라기 보다는 연구주제 같은데요.
- 저도 동감합니다. 만약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에 의사소통 관련 강좌를 넣는다면, 장애와 비장애가 아닌 '소통' 중심의 내용을 심화과정에 넣었으면 합니다. 강사양성과정과 연구는 분명 다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의사소통 지원은 연구로 진행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의사소통 관련해서는 '소통' 중심의 강의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본과정에서는 '나의 정체성 찾기' 강의와 '비폭력 대화' 강의가 강사의 일정 때문에 2012년 순서와 반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 참가자들 간에 라포가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라포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정체성 찾기'를 진행할 경우 교육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참가자의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도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이 필요한 교육의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 그래도 인권교육은 본인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순서보다는 참가자의 긴장되고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 기본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진행했던 강의안들을 보면, 위 두 강의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마 인권감수성 과정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도록 두 강의의 시간 배정을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찾기'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한 2박 3일은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작년에 처음 할 때도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요. 그래도 10시간을 배정한 협회의 결단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비폭력대화 강의라도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 둘 다 가장 기본적인 강의여서 시간을 대폭 늘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비폭력대화 시간을 한 두 시간 늘리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본과정의 강의 중에 '소수성'에 대해 참가자들이 낯설어 때문에 강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수성' 강의는 '인권의 의미와 원칙'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두 강의를 연결되고 또 심화되는 과정임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는 기본과정의 '인권과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이해' 강좌를 통합했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현재 종사자들의 대표적인 어려운 인권딜레마에 대한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고민하는 사례가 정말 인권 딜레마인지 아니면 장애인 정책 및 시설의 구조의 문제인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인권과 시설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경 소장님이 연구한 내용을 추천합니다.
- 동의합니다. 이 강의는 사실상 기본과정의 제2워크숍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올해는 작년 기본과정의 3워크숍에서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기법, 교육안 기획에 관한 강의를 심화 과정으로 진행하고, 기본 과정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 참가자 본인의 인권 의식을 돌아보고 향상시키는 강의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은 단순한 강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을 진행해보면, 강의 기술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과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기본과정에서는 참가자 본인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인식을 높이는

측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기본과정 참가자들은 인권교육 기법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3워크숍을 기본과정에서 빼는 것 보다는 기본과정에서는 인권교육 기획에 초점을 두고, 심화과정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에 바탕을 둔 교육 기법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기본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과정 수료 후 바로 해당 시설의 인권 교육을 강요 혹은 의뢰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참 난감한데...
-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차 워크숍은 기본과정에서 맛보기 형식으로 진행합시다. 내용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기획 및 기법, PPT 기획 세 가지로. 진행 방식에 있어서 기본과정에서 했던 그대로 갈 것인지, 혹은 역할극이나 시연을 넣을지, 아니면 역할극이나 시연을 심화과정에 넣을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하죠. 다만 시연은 준비된 강사가 진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차 워크숍은 첫 날 저녁 참가자에게 인권교육 기획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 날 강의 시연을 합시다. 아, 그리고 올해는 '인권교육가'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짚었던 것처럼, 단순히 강의 기법과 기술적인 것으로만 무장한다고 인권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할지 점검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의 정리**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사 양성과정 2013년 개선 사항

- 숙박일정과 장소접근 재검토→ 1, 2차 서울 여성플라자 예약
- 워크숍 간 날짜 간격→ 2차와 3차 워크숍 연장 진행
- 법 관련 강의 통폐합 진행
- 자립관련강좌 별도 배정→ 기존 강의에 녹이기로 하고 별도 배정하지 않음
- '탈시설' 강의 정리→ 2차 회의에서 정리하기로.
- 비폭력 대화 강의 증강→ 6시간에서 8~10시간으로 증강 예정.
- 인권딜레마 분석에 대한 관점 강의→ 제2워크숍 마무리 강연으로 준비

- 교육시연→ 기본과정에서 유지, 심화과정에서 연결시킴
- 많은 교육 주제로 주제 당 시간부족→ 교육과정 중 하루는 저녁식사 이후 논의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2년 수료생을 돌음으로 배치→ 2012년 수료생들에게 회의 참석과 강의 진행을 제안하기로.
- 강의시연 과제 미리 부과→ 강의 진행자와 다음 회의 때 논의

2.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 과정 강의 시간 및 순서 논의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내에서 의사소통 도구 개발을 위한 과정은 적절치 않음.
- 기본과정은 참가자들이 인권교육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의 이해, 장애인 시설 및 관련 쟁점 이해참가자 스스로 본인의 인권 의식을 돌아보는 강의로 구성함. 인권교육 진행과 관련한 강의는 기본, 심화과정에서 깊이에 차등을 두고 다루기로 함. '인권교육가란 누구인가' 주제로 강의 신설함.

● 1차 워크숍 순서(나열 순서대로 진행)

- 평화를 만드는 의사소통/ 나의 정체성 찾기/ 인권의 의미와 원칙/ 인권의 가치, 소수성 및 복합차별은 통합하여 반차별 강의로 변경

● 2차 워크숍 구성(향후 순서 정해야 함)

- 안전과 보호 VS 인권/ 공간과 인권/ 노동과 사회복지/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실천/ 인권의 역사와 사회보장/ 내 위치 찾기/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법과 제도/ 행복해질 권리 찾기/ 권리 옹호/ 장애인거주시설 딜레마 분석

● 3차 워크숍 순서(나열 순서대로 진행):

- 인권교육가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교육 기획 및 기법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참석자 : 김영문, 김진숙(동천의 집) / 최은숙(동원재활원) / 박지현(가온들찬빛) /
박문희(전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
이승한(승덕재활원) / 이찬미(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걸리진 않으셨어요?

그동안 저희는 대관을 하고 기본과정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1,3차는 대철회관, 2차는 서울여성플라자로 대관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세요. 회의자료의 강의 순서는 일정을 잡기 위해 대략 짜놓은 것이니 회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면 되구요, 일정부터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각 강의별로 교육기획안을 수정 보완해 오신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자들께서 준비하신 기획안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의 의미와 원칙

- 기획자 : 작년 기본과정에서 진행했던 동화책 및 포스터 만들기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작년 진행에서는 시간 조절이 원만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안을 수정해보았습니다.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참여식 진행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내용적인 면에서 강화되었으면 더욱 좋겠네요.
-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늘려서, 참가자들이 강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시간 조절을 위해 인권포스터 만들기는 시간을 줄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 동화 진행은 강사가 동화를 지정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모둠별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실천

- 기획자 : 작년 강의와 유사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이용자 중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탐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 목표입니다. 또 사회복지실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겪는 어려움, 갈등, 딜레마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강의 시 참가자들이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워크숍 일정 자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딜레마를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형화될 수 있다면 모둠토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기본과정의 '나의 위치 찾기'강의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강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데... '희생과 봉사'가 순서상 앞이고, 참여자들이 종사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행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 이 강의도 모둠별로 충분히 토의하고 발표할 시간을 제공하면 좋겠어요. 강의식 진행부분을 더 줄이면 어때요?
- 참가자들이 속한 시설마다 운영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 시설의 근무 방식과 형태에 대해 공유를 하고,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 해당 방식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과 편의를 좀 더 도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내 위치 찾기'와 이 강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강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소속된 시설 유형, 지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지라도 참가자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진행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반차별, 인권의 가치

- 기획자 : ‘반차별’과 ‘인권의 가치’의 강의 순서를 바꾸는 건 어때요? 차별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는 흔히 집단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가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가치’라는 강의를 먼저 진행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차별’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공간과 인권

- 기획자 : 이 강의에서는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와 의미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모둠토론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 작년에 기본과정을 논의하는 기획회의에서 합의했던 이 강의의 목표는 시설 공간과 내부 구조가 어떤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공간이 이용자의 삶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강의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 작년에는 너무 주제의 폭이 좁아서...올해는 인권교육이라는 큰 원칙에 어떤 것이 맞을지 고민을 한 뒤 이번 교육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 하지만, 올해는 진행자의 교육기획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강의 주제를 흐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시간에 진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 강의 제목은 ‘공간과 인권’인데, 교육기획안의 주 내용은 ‘환경 속의 인간’이네요.
- 이렇게 기획한 이유는 포괄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위 개념인 공간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본래 강의 주제에 맞는 부분으로 조금 더 집중화해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공간과 인권’은 공간보다 권력에 더 초점을 맞춰 그 힘이 공간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또 그 공간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자고 했던 강의였거든요.

-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공간과 연계되어있는 이용자와 종사자, 봉사자의 경우 그 관계를 면밀히 살펴 재배치 혹은 다시 관계 맺기 등을 시도해본다면 변화의 소지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권리 찾기, 권이용호

- 기획자 : 작년 강의를 토대로 기획안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저의 고민은 준비한 사례를 모둠별로 제공해 토의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에서 나누고 싶은 사례를 찾아 토의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 토론을 해야 하는 주제들이 쉽지 않고 또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워서 참여자들이 토론 중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많았는데...
- 저는 인권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혼란'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게 더 난감한데요.
- 참가자들에게 익숙하고 실질적인 주제로만 강의를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생소하고 결론을 내기 어려운 주제라도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뤄야 합니다.
- 진행자가 준비한 사례를 모둠별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참가자들에게 현장 사례를 활용하여 토론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 사례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럴 때는 극단적인 사례를 준비하면 고민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풀고 마음 열기

- 기획자 : 이 회의 참가자가 진행하는 강의 외에 외부강사들의 강의 전후에는 제가 몸 풀기 마음 열기를 진행하겠지만, 이 회의에 참석하는 진행자들은

본인이 강의 전에 몸 풀기 마음 열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맘을 좀 열게 하는 것 외에도 참가자들과의 친밀성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 저는 ‘몸 풀고 마음 열기’에 대해 작년과는 달리 하나의 강의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 장단점, 원칙, 세심히 살펴야할 점 등을 정리하여 참가자들에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가이드라인처럼요. 다만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진행방법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별로예요. 이는 교육장소, 참가자의 상황, 특성,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으니까, 다만 왜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내 위치 찾기

- 이 강의는 이용인 입장에서 종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시설 내 종사자의 위치, 역할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 ‘희생과 봉사’, ‘내 위치 찾기’, ‘권리옹호’ 강의 내용에서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자간 내용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생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강의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결론이 없는 주제로 모두 토론을 하게 되면 강의 시간 조절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회의 정리

1. 공지사항

- 장소 확정 : 1차 및 3차 대철회관, 2차 서울여성플라자

2. 강의별 수정 보완할 점

- 인권의 의미와 원칙 : 시간 조절 면에서 보완이 필요, 참여형 강의를 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 강의를 보강, 동화를 이용한 참여형 강의를 몸 풀기와 맞물려 진행할 수 있도록 앞 순서로 배치. 동화 선정은 참여자들이 선정토록.

-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실천 : 참여자 토론 시간을 늘리고 나의 역할 찾기 시간은 줄이기, 토론 시간 늘리기
- 반차별, 인권의 가치 : 반차별과 인권의 가치 강의 순서 바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의하는 방식으로 강의 진행.
- 공간과 인권 : 공간과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 강의안을 기획하였으나, 강의 주제에 맞는 강의 내용으로 보다 집중화 시켜야 함. 수정 필요.
- 권리옹호 : 참가자들에게 현장 사례 제공, 모듈별 발표로 진행.
- 몸 풀고 마음 열기 : TF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사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강의 진행자가 각자의 강의에 직접 적용.

3. 기타

- 오늘 회의 결과로 나온 수정된 강의계획안, 강의원고, 읽을거리 원고를 3월 4일까지 메일로 송부.
- 3차 회의는 강의 원고를 회의 자료로 하여 회의를 진행함. 기본 과정 회의가 마무리되면 심화 과정 준비 회의를 실시하기로 함.

일 시 : 2013년 3월 6일(수)

참가자 : 김영문(동천의 집)/ 최은숙(동원재활원)/ 박지현(가온들찬빛)
박문희(전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이찬미, 홍진수, 이윤경(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이승한(승덕재활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기본과정 강의 진행자에게 수정을 부탁드렸던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과 심화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기본과정의 각 강의 진행자 분들이 다시 교육기획안을 수정 보완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은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3박 4일, 약 30시간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과정 교육기획안을 수정하신 것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회의 자료로 첨부된 각 교육기획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의 의미와 원칙

- 기획자 : ‘당신의 선택은?’ 활동에서 질문에 O와 X로만 수료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 쪽의 의견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원칙을 다시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 이렇게 진행하려면, 여섯 문항은 많은 것 같은데, 질문을 줄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실천

- 기획자 : ‘내 위치 찾기’, ‘권리옹호’ 강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 고민이네요. 세 진행자가 개별 모임을 통해 강의 내용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 작년 기본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종사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이 낮설어했던 것 같아요. 강의 목표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참가자들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소속 시설이나 주변 환경의 부조리함, 어려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진행자가 강의 결론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모두 별도로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한 긍정적 사례를 공유하며 결론을 도출하고 진행자는 다만 참가자들이 도출시킨 결론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피드백하는 역할을 하는 해야 참가자들이 강의 주체로 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참가자들이 어떻게 결론에 접근하는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를 세심히 봐야겠지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현장 사례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모둠에서는 주제에 벗어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사례만 나열해 시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우리가 논의했던 이 강의 목표에 대해 다시 공유를 하자면, 희생과 봉사를 강요당하는 천사표 사회복지사가 아닌, 진정한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공간과 인권

- 기획자 : 지난 회의 때 나온 의견대로 강의 주제와 내용을 세분해 보았습니다. 교육기획안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의미 및 가치와 인권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간 배분과 모둠 활동 시 토의 주제에 대해 의견이 필요합니다.
- 현재 시설에서 샤워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현재 본인

소속 시설에서 공간과 인권에 관련된 상황과 사례를 논의 주제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 장애인복지법 상 시설 내 설비 운영 기준 및 공간에 관련된 법과 지침에 대해서 모두 별로 재설정 및 재설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권교육가란 누구인가

- 기획자 :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인권교육가에 대해 상황극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권 강사로서의 수칙, 실천사항, 약속 등을 손 코팅지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의견 내용을 취합하여 인권 강사 행동강령으로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PPT 마무리 강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들이 인권교육 강사로서의 각오와 생각과 의지를 담은 손 코팅지 혹은 책갈피를 가져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 교육과정 마지막 날 인권교육 강사로서의 각오와 생각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 모두 별로 제작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심화 과정은 참가자들이 기본 및 심화 전체 과정을 이수하면서 느낀 본인의 변화, 소감 등을 인터뷰해보면 어때요?
- 작년의 기본과정 수료생들이 시설에서 크게 요구 받는 것 중의 하나는 소속 시설 이용자의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은 소속 시설의 종사자가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심화과정에 반영할지도 같이 검토해야겠죠.
- 중증 장애인은 외부 강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꺼려하고, 이용자의 개별적인 소통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진행한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시설 직원보다는 외부 강사가 이용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의사소통 도구와 전문적인 인권교육 강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동료들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기 어렵고, 권력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에는 수료생들이 서로 교환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참가자들과 충분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과정의 교육기획안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셔서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다음 회의까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심화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심화 교육과정의 목표부터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심화 과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 기본과정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료생들은 이미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용자 인권교육과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장애 유형 별, 장애유기 별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시설 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화과정을 설정할 때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 시설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인권교육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너무 세부적이거나 확정적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수료생들에게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조급함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종사자 안에 있는 위계와 경계,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권력 관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관계 맺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 되어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의 참가자들이 인권교육 강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심화 과정에서는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설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방법과 자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인권이라는 큰 테두리와 그 안에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와 맥락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기본과정만으로 그런 지원을 충분히 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인권교육의 기법은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지 정보나 일방적인 강의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화과정에서도 기본 역량 다지기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심화과정의 주제를 이용자 인권교육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 자체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된 어느 한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심화과정 주제로 선정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강의 기법은 인권교육의 기본을 갖추고 난 뒤의 순서일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기법만 배우게 된다면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어버리는 역효과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정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거나,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주제를 다시 되짚어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인권교육 강사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딜레마 상황에서 경계를 인식하고 이를 고민하여 실천할 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부실로 정리가 어려워 중략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심화과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본과정에서 심화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다루고,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권 이론에 관한 내용, 비폭력 대화,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인권교육의 딜레마 및 시연 등에 대한 심화로 가닥이 잡히네요. 다음 회의 때는 심화과정의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 정리**

- 심화과정은 금년 8월과 9월 사이에 3박 4일, 약 30시간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임.

-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의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강의를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함.

- 심화 과정에서 다룰 교육 내용:
 - 1) 반차별 : 복합차별, 배려를 가장한 간접 차별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 나누기 등
 - 2) 시설 이용자 인권옹호 : 이용자 프라이버시, 권리항목, 자기결정권 등
 - 3)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 4) 비폭력대화와 인권적 의사소통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참가자 : 김진(교남소망의집)/ 김영문(동천의 집)/ 최은숙(동원재활원)/
박문희(전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이안나(장봉혜림요양원)
이찬미, 홍진수, 박옥순(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김홍연(애네아의집)/ 이승한(승덕재활원)

오늘 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와 강의 질에 대해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작년과 올해 교육과정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협회가 고려해야할 지점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의와 마찬가지로 심화과정에 대해 더 깊은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의 인권교육을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100시간 진행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넷 강의도 최하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심화 과정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물론 인터넷 강의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물며 인터넷만 해도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다른 시도 협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울과 멀면 사실상 협회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통일을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니까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과정 20개 강좌와 74시간 강의의 이수는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기본과정 이수 시간에 따라 심화과정 참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중앙과 지방 협회의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중앙 협회에서 기획한 교육과정을 지방 협회와도 공유할 수 있고, 시간제 학점 은행처럼 교육

이수 시간을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과정도 여러 번의 워크숍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고요.

- 기본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강의의 평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에서 양성한 인권교육 강사들에게 인터넷 카페에 인권교육 기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인권위에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는 해당 시설에 전화로 소감 등 강의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강의 피드백을 통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인데 협회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회의 때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첨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인권의 내용 중에 소수성 및 차이와 차별 내용을 심화과정에 더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기본과정 참가자들이 그 부분을 낮설어하기도 했고, 시설 종사자와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해보면 종사자들이 논의하고 싶은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인데, 사례 중에는 소수성과 차이와 차별과 관련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화한다면 참가자들이 사례 관련 강의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바탕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본과정의 반차별 강의에서 참가자 내부에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 심화 과정의 반차별 강의는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설 안에서도 사실상 장애 등급 별로 서비스와 자원이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 강의를 통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림 위와 같은 강의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텐데요, 강의 경험이 있는 1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에 인권교육을 나갔을 때 해당 시설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물어볼 때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인권 침해나 인권 딜레마 사례에 관한 강의도 심화과정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 시설 이용자, 종사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종사자들의 권리도 다시 한 번 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종사자 인권에 대해서는 특히 ‘일하는 사람’으로써의 고민이 가장 클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을 좀 더 심화했으면 합니다.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종사자의 권리 찾기 또한 중요한 바탕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화 과정에서는 되도록 참가자 본인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본과정에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종사자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기본과정에서 ‘탈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나 반감 혹은 사기저하 등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왜 ‘탈시설’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과정처럼 많은 강의를 진행하는 것 적은 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거나, 시설 종사자의 입장에서 행동의 한계가 있는 등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 기본과정의 ‘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 와 ‘노동과 사회복지’ 강의와 같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주제,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을 다시 짚는 강의가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점을 제시했다면, 심화 과정에서 주제별 강의 시간을 늘려 보다 깊이 있는 진행이 되도록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화 과정 초반부에는 인권에 대한 전체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 교육의 중후반부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를 찾아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 심화과정 강의 주제 정리
- 1차 워크숍(인권 감수성) : 권리 항목, 소수성, 반차별, 비폭력, 2차 워크숍(사회복지 현장과 인권 감수성) : 프라이버시, 자기 결정, 호칭, 종사자 노동권, 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2, 탈시설, 성 인권 딜레마, 3차 워크숍(교육 경험 나누기) : 인권 교육가의 자세, 이용자 인권 교육 경험 공유 및 정리, 경험 나누기

* 회의 정리

1. 공지사항

-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20개 강좌와 74시간 강의의 이수를 기본 과정의 기준으로 설정하며, 심화과정까지 포함하여 대략 100시간 과정을 실시함.
- 기존 수료생들에 대한 강의 평가 및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함.

2. 심화과정 진행 및 교육 내용 논의

- 심화 과정에서 다룰 교육 내용
 - 1) 인권 감수성 : 권리 항목, 소수성, 반차별, 비폭력
 - 2) 사회복지 현장과 인권 감수성 : 프라이버시, 자기 결정, 호칭, 종사자 노동권, 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2, 탈시설, 성 인권 딜레마
 - 3)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
- 심화 과정에 대해 1기 수료생들에게 사전 의견을 받아 보겠음.
- 심화과정은 기본 과정 중 중요한 내용을 심화하는 것으로 기초를 잡음. 심화 과정 초반부에는 인권에 대한 전체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심화 과정 교육의 중후반부에는 시설 및 시설 종사자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인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권리를 찾아보고자 함.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참가자 :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김영문(동천의 집)/

최은숙(동원재활원)/ 이안나(장봉혜림요양원)/김홍연(애네아의집)

이윤경, 이찬미, 홍진수(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이승한(승덕재활원)/

박지현(가온들찬빛)

2013년 기본과정의 1차 워크숍이 지난 4월 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워크숍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2차 워크숍 진행에 앞서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각 강의의 강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진행 내용이 참가자들을 강의 목표로 안내할 수 있는 흐름인지를 점검코자 합니다.

모든 강의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상 어려움도 있고 모든 강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아니어서, 우선 작년 기본과정의 강의 중에 내용이 서로 겹치거나, 진행이 어려웠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강의를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진행될 2차 워크숍에서 어떻게 이를 보완할 것인지 준비해 오신 기획안을 공유해보겠습니다.

- ‘희생과 봉사VS사회복지실천’, ‘안전과 보호VS인권’, ‘내 위치 찾기’ 강의가 시설 종사자가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토록 하는 강의다보니 내용과 진행방식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겠는데요.

안전과 보호VS 인권

- 기획자 : 작년 기본과정에서 이 강의는 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시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의 앞 부분에 안전과 보호라는 빌미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청소년이나 여성부분의 사례를 들어주고,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안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정상화 이론에 입각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안전과 보호VS인권’의 강의는 ‘안전과 보호’를 빌미로 침해될 수 있는 시설 이용자들의 자유권, 사회권 등 권리 항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현재 강의안은 폭이 좀 좁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고민이 현재 법적 정책적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게 인권의 방점으로 넓혀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스템의 맹점을 살피고 인권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저는 ‘안전과 보호’를 시설만의 상황으로 한정짓지 말고, 좀 더 열린 상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강연할 때 국가 안보가 어떻게 시민의 안전에 이용되는지, 공공안전이 시민의 안전에 이용되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안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다루면서 ‘안전과 보호’라는 것이 넓게는 사회 전반에, 좁게는 내 삶에도 밀접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 내 삶과 연동되어 있어야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탕 되어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실천

- 기획자 : 작년에 몸 풀기 프로그램이었던 ‘늑대와 춤을’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남이 말하는 사회복지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와 내가 보는 사회복지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둠토론에 대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둠토론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 이어지는, 짚어야할 지점을 제공하면 좋겠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까지 내용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만일 종사자에게 천사가 되길 요구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나오면, ‘종사자’, ‘이용인’ 입장 등으로 나눠서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사회복지사는 만능, 전문가, 스마일 맨, 에스맨이어야 한다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때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안에서 찾는 작업들을 해보고. 종사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참가자들에게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누구에 의한 어떤 권력인지까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희생과 봉사VS사회복지실천’은 시설 안에서 종사자들은 봉사와 희생을 강요 당해 왔기 때문에 본인의 노동권을 인식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종사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시간 안에 그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 위치 찾기

- 이 강의의 목표는 시설 안의 권력 관계를 살펴보자고 합의했던 것이 주요 맥락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권력 관계를 줄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이 종사자를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시키고 통제하는 권력은 종사자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은 의도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권력에 의한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내 위치 찾기’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를 고민하게끔 하자고 기획했던 강의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작년의 ‘내 위치 찾기’강의는 ‘희생과 봉사’와 유사했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유동적으로 이용자와의 관계, 종사자들 간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내가 인권

옹호자가 되기도 하고 침해자가 되기도 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과 봉사’와 ‘안전과 보호’ 강의를 재탕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작년에 해당 강의 진행자들이 기획회의에 자주 불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전달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안전과 보호VS 인권’은 시설 이용자 인권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VS 사회복지실천’은 종사자 인권이 주 내용이고요. ‘내 위치 찾기’에서 이 두 강의를 엮으면 어떨까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 확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쟁점들은 그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서로 공유되지 않고 네 권리, 내 권리로 이해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아, 저도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종사자만의 문제이고 ‘안전과 보호’는 시설 이용인만의 문제라고 이야기가 정리될까봐 걱정입니다. 사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설 이용인의 권리가 제한당할 때, 그 안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시설이 벽을 높게 쌓으면, 그 안에서 다양한 침해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벽은 시설 이용인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용자만의 문제, 종사자만의 문제라고 구별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강의 기획이 참가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각 진행자들이 그런 우려점을 충분히 녹여내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의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면 인권의 ‘주체’가 아닌 ‘가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전과 보호를 얘기할 때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에 대해서 시설 이용인, 종사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권의 가치를 침해하는 지로 접근해야 두 인권의 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 음... 이 부분을 심화과정에서 한 번 더 다루면 어떨까요?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본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강의를 재기획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과 인권

- 기획자 : 강의 내용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환경적 문제로 인해 선한 마음에서 오는 실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면, 이용자들이 목욕을 할 때, 복도에 짝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그 시설에서는 복도가 제일 따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집단 거주라는 상황에서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다루고 싶은데요. 제공하는 사람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죠. 서울시에 43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구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복도형 화장실에 방 하나 같은 시설 구조... 집단거주 형태인 공간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대안으로는 요즘 ‘코징하우스’라는 것이 있는데 왜 시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없는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간과 인권’은 전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할 때 공간이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왜 그렇게 설계되는지, 그 목적인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기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권력관계에 따라 공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 내용에 시설의 최저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기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고 곡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에서는 구조상 이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겠죠. 사실상은 이 최저기준이 최고 기준이라고들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참가자들의 사고를 현 정책의 테두리에 갇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본과정의 ‘공간과 인권’ 강의에 진행됐던 ‘참가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와 다르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 시설의 최저서비스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간을 개선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인권적인 재배치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강의에서 의논하고 싶은 내용은 인권침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면 그 구조에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설 종사자들이 먼저 공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섬세하게 시설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획자가 제시한 ‘모둠에서 생각하는 시설을 최저기준에 맞춰 생각해 본다’를 ‘모둠에서 생각하는 살기 좋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고려한 시설을 설계해본다’로 고치면 우리는 시설을 최저기준에 맞추려고 하지만 이것도 그리 흡족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 마지막 활동에 시설을 최저기준 서비스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최저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그 기준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 ‘공간과 인권’이라는 의제는 시설 이용자 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어떤 공간인지를 살펴보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는 공간이 보통 지역사회와 떨어져 있는데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공간과 인간’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여섯 개 정도 사례를 뽑아서 모둠마다 토론해보면 어때요?
- 아, 그리고 우리는 강의기획안에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안에서 종사자를 어떻게 명칭 지을 것인지도 생각해봅시다. 기획자가 제시한 사례에서 시설이라는 공간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공간과 인권’이라는

의제를 뽑을 때의 목표는 시설을 넘어서 단체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공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짚어 보자였다고 기억합니다. 이는 단지 시설의 구조나 문제만을 파헤치는 과정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스스로의 몸으로 받아 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누구랑 살 것인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이라는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공동체를 구성할 때 누구랑 살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시설에는 어떤 존재들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장소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존재감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 ‘공간과 인권’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심화과정 교육 내용 논의

- 지난 회의 때 심화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를 논의하였는데, 크게 인권일반 내용에 대한 심화,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인권, 인권교육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보기로 하겠습니다.

- 인권 일반 내용 심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심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리항목 강의는 권리항목 별 쟁점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기본과정이 인권에 대해 느껴보고 다양한 권리 목록과 시설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 했으니 심화과정에서는 시설 내에서 늘 마주치는 쟁점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항목별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차별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기본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 다루지 않았었는데, 심화과정에서는 이 관점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소수성에서는 혐오, 소위 말하는 표정, 동작 속에 차별 속의 혐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얘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차별이 어떻게 폭력으로 드러나는지 얘기해보는 것도 좋고요.

- 영국에서는 장애인 차별을 이야기할 때,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장애 혐오범죄와 같이) 장애인 차별처럼 ‘혐오’도 범죄로 보는 거죠. 이는 구체적인 행위는 차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혐오’에서 기인하는 차별도 범죄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거죠. 우리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악의적인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혐오’가 어떻게 차별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 발 더 나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성에서 이것을 잘 다루면(살짝 긴장도 더 주고 위협적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와 연관이 되면 인권이라는 것으로 다가 올 것 같습니다.
- 비폭력은 기본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심화할 건데, 이건 진행자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몇 시간으로 심화하기도 쉽지 않고...어쨌든 기본과정에서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하면, 심화에서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공감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나의 정체성 찾기는 심화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한데, 3박 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서 기본과정의 분량으로 할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비폭력대화과 나의 정체성 찾기는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인권을 머리에서만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한장협에서 ‘나의 정체성 찾기’ 프로그램만 별도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시설 이용자의 호칭,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등과 종사자의 노동권 등이 심화과정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나, 여성으로서의 나, 사회적 관계 속의 나, 사회복지사로서의 나 등 ‘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틀로 나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력 구조와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인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권 이론적인 이야기를 심화하는 것이 이번 심화과정의 맥락이라고 이해됩니다.

시설 이용자 인권 관련 주제 논의

- 시설 이용자의 호칭,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에 관한 부분은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만큼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고 자기결정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희생과 봉사’나 ‘안전과 보호’도 결국 사례 중심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사례를 뽑아 공유하고 어떤 쟁점이나 지점들을 짚어보고 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심화라면 기본에서 다른 내용보다 진전 된 내용을 다뤄야 할 텐데요.
- 기본과정에서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 실천’ 강의를 들자면, 희생과 봉사를 전부로 알아온 종사자에게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건네는 것이죠. ‘안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인권을 생각해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 그런 주제는 참가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화는 그 수위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 세부 주제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참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달라고 하고, 가져온 문제들을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인권을 적용해볼 수 있는 과정, 사례보다는 사례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껏 토론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도 많을 것 같아요.
- 적어도 이런 것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표현이 없도록 말입니다. 자기결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것이 강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가져 갈 수 있도록, 흔히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딜레마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심화과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교육을 나갈 때, 많은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례를 공유해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고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과보호와 자기결정권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시설의 중증장애인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이분은 그걸 꼭 먹고 싶어 하는 상황들이 그런 예죠. 이런 경험을 나누면 인권교육 강사로서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 현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갈증이 많습니다.
-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벽은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지원의 문제인지 장애의 문제인지를 고려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면 위에 놓고 깊이 있게 논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딜레마의 상황들은 지원의 부족이나 지원하는 사람의 편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이용자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사안들도 많죠. 그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에게 정신과적인 약을 제공하거나, 정신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님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돌봄처일 수 있는 시설에서도 이 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이분은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현장의 딜레마들을 여기서 다루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현장에서 이 분이 그동안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

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딜레마가 아닌데 딜레마라 여기는 것을 찾아봐야죠. 당연한 권리이고 자기결정권 행사인데 딜레마라는 단어로 넘기는 것은 없는지 모아봅시다.

-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자기결정과 같은 강의에서 우려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하지 말고요.
- 요즘 딜레마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딜레마가 도대체 뭔가 강의에서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성(性)’ 쪽지를 별도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되는, 방법도 모르는, 그러나 계속 딜레마로 빠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심화과정인만큼 시설 안에서 언급도 잘 안되는 시설 이용자의 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 이에 대해서 시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모으고 대안제시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사자들도 시설 이용인들의 성 욕구에 대해 고민하지만, 어찌기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 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지만, 정보는 부족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성적인 부분도 장애인의 결정권인데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보장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 일단은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에 관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섭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사자의 노동권 관련 주제 논의

- 기본과정의 ‘희생과 봉사’에서 나온 내용을 심층적 논의해봅시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요. 자신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놓치고 있는지, 왜 나는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탈시설 관련 주제 논의

- 탈시설은 장애 관련 정책과 법에서도 이미 지향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에게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은 ‘탈시설’하면 ‘시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기본과정 참가자들 중에서도 ‘탈시설’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쓰면 안되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탈시설’은 뭐고, 이것이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실제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탈시설의 역사, 필요성, 지향점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 ‘탈시설’이라는 개념이 현재 어떻게 시설에 흡수되었기에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강의를 기획했다면 좋겠습니다.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관련 주제 논의

-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는 수료생들의 의지만 있다면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다른 시간에 할당했다면 좋겠습니다.
- 기본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인권교육을 볼 경험도 거의 없고, 내가 진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피드백과 정보공유에 대한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 참가자 분들이 인권교육 진행을 해 봤을 테니, 인권교육 진행에서 어려웠던

내용을 들어서 유형을 나눠보고, 각자 그런 경험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나누면 어떨까요? 나를 힘 빠지게 했던 교육, 나를 힘나게 했던 교육 등에 대해서.

- 이용자인권교육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현재 한장협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소속 시설이나 타 시설의 이용자 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장협의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이지만, 어쨌든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참가자 분들이 시설의 이용자 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나 원칙 등을 서로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특히 지적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은 교육 내용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섬세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적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시설 이용자 모두가 다 다른 장애 정도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조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장협 기본과정 기획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기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커리큘럼을 만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논의를 바탕으로 덜컥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선블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대상자, 아니 교육 참여자가 시설 이용자인지 종사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을 매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본과정에서 모듈로 교육기획안을 만들어 시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심화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심화과정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들을 나눠보면 인권교육에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많은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 끌어낼 거지만, 그래도 교육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면 좋을 듯합니다.

*** 회의 정리**

1. 심화과정 진행 및 교육 내용 논의

- 권리항목 별 쟁점토론 : 시설 내에서 늘 마주치는 쟁점에 대한 토론
- 반차별 :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강의
- 소수성 : 차별 속의 혐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 비폭력 : 개인 대 사회의 소통
-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 : 인권의 원칙으로 살펴본 현장의 딜레마,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 및 확장
- 침해당함에도 요구 할 수 없는 상황 파악/ 사회복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찾기
- 지적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 지적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참가자 : 최은숙(동원재활원)/ 박문희/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윤경, 이찬미(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박지현(가온들찬빛)/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지난 4월에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3번의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 한 달에 3번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다보니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진행했던 기본과정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나누고, 심화과정 교육내용 논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기본과정 내내 기획팀에서 함께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신,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리고 향후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2013년 기본과정 평가 논의

- 기본과정 참가자들이 강의내용과 목표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어요.
- 글썄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육 기획에서 세웠던 강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교육 진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기획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권교육에서 필요한 가치와 원칙, 쟁점들에 대해 참가자들의 인식전환과 토론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목표와 참여자들의 욕구 사이에서 발생한 간극 혹은 점점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간극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정보다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 어떤 강의에서는 참가자들이 이 강의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

것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교육 진행을 위해서라도 고민해야 합니다. 강사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강의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웠던 것은 어떤 분들은 거주시설 종사자가 강의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강의 시작 전에) 강의 수준을 폄하하기도 해서 좀 그랬어요.

- 작년 기본과정은 교육 장소가 시외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장이 모두 시내권이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올해는 ‘비폭력대화’ 강의를 첫 강의였는데 그래서인지 작년보다 몰입도가 덜한 반면, ‘나의 정체성 찾기’ 강의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나의 정체성 찾기’ 강의를 첫 강의였는데 올해보다 몰입이 덜했던 것 같거든요. 교육 시작하는 첫 강의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의 순서가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도 고려해야겠죠.
- 다음에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번 틀로 진행한다면, 첫 번째 교육에서 ‘비폭력대화’와 ‘나의 정체성 찾기’ 강의 후에 진행되는 ‘인권의 의미와 원칙’ 강의는 두 번째 교육으로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 강의에서 몸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인권의 원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2기 참여자 중에는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기 때도 몇 분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이들이 녹도록 움직여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강사들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저는 강사와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강의를 짤 때 중요한 쟁점들을 뽑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민하고 깨지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각 강의별 쟁점을 기획팀과 해당 강사가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강사에게만 맡겨지니까 각 강의들이 쟁점별로 살지 못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그리고 촉진자의

역할도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네요.

- 저만 느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여자들 중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보다는 강사인증서만 목표로 두고 온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끼리만 모여 교육 받고 토론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시설 종사자 외에도 활동가, 장애 당사자 등을 할당해서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 한장협에서 강사 배출에만 너무 급급한 것은 아닌가요? 과정을 이수한 분들의 인권교육 강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가자들의 궁금증,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풀 수 있는 열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집중력이 아쉽던데요. 참가자들이 토론시간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종종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참가자들끼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번 회의 때 심화과정에서 다룰 주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일반 심화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심화 ▲시설 종사자 인권 향상을 위한 심화 ▲인권교육 강의 기법 심화였지요? 각 주제별 기획까지 역할분담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권 일반 심화

1) 권리항목별 쟁점 토론 강의

- 기획자 : ‘인권의 쟁점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기본과정의 ‘인권의 의미와 원칙’, ‘인권의 가치’, ‘반차별’ 강의가 인권 일반을 소개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심화에서는 각 권리 항목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의 쟁점 속으로’라는 강의에서는 ‘인권대회’를 열건데요,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6개 낱말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각 모듈별로 뽑게 한 다음, 그 단어를 주제로 인권대회를 연다고 했을 때 초대받아야할 구체적인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피켓을 만든다면 어떤 권리 주장을 담으면 좋겠는지, 더 초대받아야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의아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피켓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과정으로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자유’ 키워드를 뽑은 모듈에서 그 인권대회에 초대할 사람을 교사라고 한다면, 그 이유와 피켓 내용과 쟁점 등을 토론해보는 것이죠.

- 키워드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 기획자 :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과정에서 이미 자신을 둘러싼 기본적인 권리들을 촘촘히 봤기 때문에 이번 심화에서는 사회구조적인 권리항목들에 대한 상상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저항과 불복종’은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도 생기네요.
- 강의 시간은요?
- 기획자 : 3시간 정도는 필요하죠.
- 정리 강연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기획자 : 토론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내용을 생산할지 추측하기 어렵기도 하고, 강의 맥락상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이미 기본과정 때 정리한 내용을 심화하는 것이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키워드와 관련된 사례를 예로 들어주면 어떨까요?
- 기획자 : 좋아요. 참가자들이 상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도입부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 기획자 : 기본과정에서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전, 왜 계속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시된 6개의 키워드는 사실 시설 안의 사례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기본과정을 진행한 경험상으로 과연 그렇게 사례들이 잘 나올지 걱정인데...
- 강의 진행 시 6개의 키워드를 토론할 때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반추시키면서 강의 후반부에 누군가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일관된 논리로 억압하는지를 살펴보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권을 말할 때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반대하면서도, 시설 안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유사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를 때리거나 일상에서 차별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리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앞부분에서는 시설이 아니라 인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펴보고, 강의 후반부에서는 시설 상황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 진행방식 참가해보면 재밌어요.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권리항목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존엄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잖아요. 땅 주인인데 재개발이 되는 경우, 땅 주인은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세입자는 세입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다 사회경제적 존엄에 넣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시설에 비춰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사례가 잘 안 나올 경우도 대비해야 할 걸요.
- 기획자 : 권리항목들에 대해 시설 외의 상황들에서 어떤 기제들로 억압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시설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강의 후반부에 다루면 좋겠군요.
- 저는 이 강의의 후반부에 반드시 인권의 불가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차별 심화 토론 강의(혐오를 중심으로)

- 기획자 : 우리는 기본과정에서 ‘소수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직접 차별이나 간접 차별에 대한 것들, 소수성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일상화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어때요? 차별이나 혐오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것으로 작동되지만, 일상에서는 차별은 내 안에 내재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제도나 시스템 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혐오’라는 감정으로 중심으로 차별을 읽어보는 강의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관습화된 차별들을 살펴보고 내 감수성을 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진행은 아직은 약간 고민인데... 모둠별 토론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는 계획인데요. 누군가에게 혐오감, 모욕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욕이나, 혹은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비하 발언 등에 대해...

- 예를 들어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골초네” 뭐 이런 발언요?
- 그런 외모 비하나 혐오도 있을 것이고...비하나 혐오를 최대한 적어보고, 이런 발언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모둠 별로 나온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혐오의 대상이 주로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혐오’라는 것이 어떤 외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살펴보자는 거죠. 혐오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언어적 비하일수도 있고, 사회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상대방에서 폭력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죠. 어떤 것들이 ‘혐오’를 구성하는지, 그것이 차별이나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고민해 보고.
- 앞 기획의 ‘인권의 쟁점 속으로’ 강의와 ‘무엇이 차별인가’ 강의가 좀 중복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 기획자 : 그러게요. 너무 다짜고짜 생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례가 잘 안 나오면 진행이 어렵기도 하고요. 경험상 어떤 사회적 대상을 정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한 ‘혐오’나 ‘차별’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 대상에 한정지어지는 한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제외해 강의에 등장시키는 것도 약간 좀 걱정이 되요. 아,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잘 안되긴

하네요.

- 왜 이야기가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 ‘들’에서 이 작업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 ‘혐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범위가 ‘혐오’ 발언이나 시설 중심으로만 한정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 올바름’에 대한 강의로 참가자들이 받아들이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내재화 된) 감수성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건 뭐냐,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잘 될 것 같은데...
- 이거 정리 강연은요?
- 기획자 : ‘혐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려고요.
- 어제 다른 회의에서 들은 기획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아직 초벌기획이지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볼게요. ‘존재가 부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가 하나가 있고, ‘쫓겨나는 사람들(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쫓겨나거나 그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 이렇게 두 가지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과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도 같아요. ‘혐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한정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강의 시간에 비하 발언을 모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면, 이 초벌 기획과 연관지으면 좋겠네요.
- 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시연해보자. 내가 들었을 때 모욕적이었던 말을 여기서 떠올려 보자.
- “생각보다 키가 작네”, “뱃살이 그게 뭐냐” 등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
- “(타인을 가리켜서)재는 절대로 그거 못 해”라는 발언? 특정한 부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로 확대시켜서 아예 다 못한다고 했을 때.

- 얼굴에 침 뱉을 때(시설 이용자들이 종사자에게). 지금은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침을 닦고 말지만. 더 기분 나쁜 것은 이용자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럴 때, 더 기분 나빠요.
 - “어쩌다 그런 애를 낳았어?”라고 들었던 말.
 - 기획자 : 존재가 부정당한 사람들? 그 간담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잘 연결시켜보면...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기본 진행방식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모욕이나 혐오 등을 느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차별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기획자 : 약간 더 혐오스럽게 집단을 구성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드네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 범죄자 취급받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의 잉여사람 모임, 이렇게 혐오를 찾아볼까, 하는 고민도 들고.
 - ‘혐오’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 기획자 : ‘혐오’ 대신 ‘모욕’으로 표현하기엔 모욕의 단계가 더 낮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혐오’라는 것에 대해 합의된 내용도 없지만, 유럽에서는 ‘장애인 혐오’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하죠. ‘혐오’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 적절할까?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서적, 물리적, 언어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폭력. 이런 단어를 쓰면 좀 쉬울까요? 자존감을 훼손하는 정도의 폭력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위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쏟아지는 그런 시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런 시선이잖아요. 당사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아름다운 아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할게요. 안면 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본인의 안면 장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이 아이는 안면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먹을 때 많이 흘리고 침이 많이 튀는데, 이게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이것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다른 가족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아이가 “더러워서 같이 밥 먹기 싫다”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주인공 아이가 처음으로 거울을 앞에 놓고 밥을 먹어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발언, 시선 등으로 인해 본인의 ‘다름’이 ‘장애’ 혹은 ‘더러움’으로 당사자에게 인식된다는 줄거리죠.

- ‘혐오’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혐오’에 대한 기획은 처음이니까 이번엔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우선은 ‘혐오’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유럽에서는 차별도 있는데, 별도로 ‘혐오’에 대해서 따로 범죄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혐오’가 동성애자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쪽에서 잘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 접근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혐오’라는 단어가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 ‘혐오’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면, 종사자들에게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 다른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려워도 ‘혐오’라는 단어를 씁시다.
- 예를 들어 식당에 이용인들과 같이 가면, 사람들과 덜 부딪히는 구석진 자리로 알아서 안내해주는 거가 ‘혐오’에 해당하는 거죠?
- 그렇죠. 이젠 그런 거는 ‘차별’이라고 말할 정도의 인식은 이젠 되는데, 문제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인권적인 태도, 눈초리, 태도들. 이런 ‘혐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럽다는 거죠. 사실 상대방의 어떤 시선만으로도 대단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죠. 내재되어 있는 ‘혐오’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차별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 강의 진행은 누가 해요?
- ‘들’에서 논의해서...
- 강의 시간은?

- 초대 손님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면 2시간으로 부족해요. 3시간은 필요할 걸요. 성소수자, 이주민 한두 분을 초대해서 본인들이 어떨 때 위협감, 차별, 혐오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혐오를 찾아보고... 그 분들이 같이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3) 반차별 '성인지적 관점'

- 호연 씨에게 강의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내용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조직의 위계 들여다보기입니다. 기본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을 결혼시켰다”, “시설 분들은 이런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등,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화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녹아 있는 강의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본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기본과정의 어떤 강의에 이 내용이 녹아들길 기획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안됐고...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기본과정 없이 조직 위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이렇게 몇 단계 건너뛰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데. 심화과정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짚은 것이 어때요?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니까 기본이 충실해야죠.
- ...
- 섭외한 강사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공유하는 것으로 하지요.

시설 종사자 인권 관련 주제 논의

- 강사 섭외 중입니다.
- 일방적 강의 전달 방식은 지양합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인권 관련한 강의는 토론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노동을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고찰시켜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강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팀에서 진행하긴 어려울까요?
- 글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 주제는 정했지만, 기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
- 논의가 진전이 되질 않으니, 다음 회의 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죠.

시설 이용자 인권 관련 주제 논의

- 1)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 등의
 - 기획자 : 진행방법을 제안해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야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풀어 갈까가 고민이다.
 - 상황극은 어떨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기본과정에서 다룰 만큼 다룬 주제잖아요? 놓치고 간 게 있다면 당연해 다뤄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배우긴 했지만 현장에서 이와 연관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여전히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심화과정에서는 이것을 끌어와서 다뤄야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위 세 가지 주제가 다 기본과정에서 다룬 건데...심화에서 다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 봐야할 것 같아요.
 - 참여자들에게 무기명으로 본인 시설 사례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모둠토론에서도 본인 시설 사례는 말하기 어려워하시는데...남에게 얘기하기도 뭣하고,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사례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모둠 토론 진행시 얘기가 잘 안 나올 때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 그게 지난 기본과정에서 권리옹호 강의 아니었나요?
 - 신체적인 폭력이나 딜레마 사례가 더 나올 법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인 시설 사례를 이야기하기 쉽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권리옹호' 강의에서 나온 사례들은 공유해도 지탄을 받지 않을 법한 분야, 그러니까 의복이나 음식 선택과 같은 분야의 딜레마 사례들만 나왔거든요.

- **재단의 시설 홍보 비디오에서 시설 이용자의 의복을 고르는 것을 지원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러한 것이 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더 막는 느낌이 들던데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무언가 중에서 고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 내 사례로만 한정되면 곤란합니다. 고민의 지평을 확대해 시설 밖으로도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 학교 안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시설 안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유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들’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논의한 자료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유할 수 있는지요?
- ‘교문을 넘다’라는 책이요?
- 교육기획 자료로 협회에서 구입해서 강사들에게 줄 수 있나요?
- 구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토론이 잘 되어도 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이나 호칭 문제에 대해 종사자들은 “현장은 다르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음’이 바로 탈시설이 이야기하는 주요한 고리라는 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고민이 사례를 통해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소규모화, 탈시설이라는 것은 시설 안의 종사자나 시설장이라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어쩔 수 없음’이라는 인식하고, 이 ‘어쩔 수 없음’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고 개선시켜야 하는 거죠. 혹시나 시설 종사자 분들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 시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고르도록 지원은 한다.’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 종사자와 이용자 각자의 하루 일과표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업을 해 보면 시설 이용인의 일과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고찰해볼 수 있죠. 이 작업을 해 보면, 그 이용자의 하루 일과와 선택이 결정과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이용자의

선택에 대한 최종결정자는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회의로 결정하지만 그 가부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용인들이 결정하는 장면 안에도 무엇이 그 결정을 제한하고 누가, 무엇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지(이용인들도 결정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눈치 채고 있다.)를 찾아보면 자기결정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보여질 것 같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일정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지적장애인의 성적권리가 별도 강의로 있는데,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성적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어색한 것 같아요.
- 단어의 문제인 것 같고,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고치면 어때요?
- 그렇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원칙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에 대한 것은 원칙만을 다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미 기본과정에서 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뤘고. 심화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와 연관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거라서.
- 성적권리든 성적자기결정권이든, (발달)장애인의 성적권리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얕으니까. 저는 이 강의에 대해 전반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그 안에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강의명이 더 헛갈리게 하네요.
- 시설 이용인의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 등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황극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극단적인 사례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쉰 거 하나, 애매한 거 두 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는 어쩔거냐, 그것도 인정할거냐고 되묻거든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극히 일부분이고 반사회적 범죄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를 정신장애의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접근하죠. 시설 이용인의 프라이버시나 자기결정권도 이렇게 접근하면 어때요?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도 사례를 두세 개를 준비해서 그 사례들을

관통하는 인권의 원칙과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요. 애매하게 끝내지 말고 좀 간명하게 털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네요라고 끝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자 : 상황극을 하고 정리 강연까지?
- 그렇죠.
- 기본과정에서 했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딜레마'의 장혜경 교수의 사례 이상으로 나올까요?
-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연구용역 과정 중에 초점집단으로 해서 사례를 모은 거예요.
- 기획자 : 상황극을 합시다. 주제 당 상황극을 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토론은 시간이 잘 가늠이 안 되는데.
- 그런데 프라이버시랑 자기결정권 관련 사례가 극명하게 분리되나요? 고민스러운데.
- 기획자 : 겹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제 당 2개씩 사례 상황극을 하면 지치고 지겨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결정권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은 것 같고, 종사자의 직무인데도 방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일 겁니다. 지금 사례를 뽑아 보면 어때요?
- 이용자 신분증을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 시설에서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되는 귀가시간, 생활의 시간이 시설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이용자가 무엇을 해보기엔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 어떤 보호작업장에서는 원래 쉬는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일감이 많으면 쉬는 시간이 15분으로 줄인다네요. 그러다 요즘은 바쁘지도 않는데 쉬는 시간이 15분으로 고착됐다고.
- 이용자들은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거부하는 상황.
- 이용자 치료비를 가족들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했던 사례도 있지요.
- 이용자 금전 문제요. 내가 내 통장을 가져가서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고 이용자가 달라고 했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다 썼을 때 사후 일이 걱정이 되는 거고.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인권 적이거나 지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매매하고 싶다거나, 시설에서 나가서 노숙을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 실제 우리 시설 사례기도 합니다. 노숙하고 싶어 하는 분 있었는데, 사실은 며칠 그렇게 생활해보라고도 하고 싶지만, 보호자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 사이에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시설 책임으로 돌아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죠.
- 기획자 : 이용자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 비장애인들도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혼란이고, 그러면서 요령이 생기기도 하고...
-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사자들 중에서는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한 장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자 : 탈시설한 장애인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의지대로 돈을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탈시설한 뒤 수급비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다 써버리고... 다음 달 수급비 나올 때까지 전전공공하시고.
- 이런 것도 미성숙 담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핸드폰 문제도 그렇고. 안전과 건강과 연관된 규제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 과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 지적장애 3급 시설 이용자인데, 숫자나 계산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장애연금이 3급은 2만원인데, 1,2급이 9만여 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병원에 가서 장애등급을 1급으로 올려 진단받으셨어요. 현재 통장에 2백여만 원이 쌓는데, 그 분은 금전에 대해서 노후계획도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시설 기물을 파손을 하시거든요. 유리창을 깨거나 간판을 부수거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 그 분은 막무가내로 내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하시고. 아, 난감해요.
- 기획자 : 돈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긴 거네요.
- 돈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화가 났을 때 기물을 파손하는 것이 부적절하니까...고민스럽죠. 그 본인은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기물파손을 하

면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지

- 기획자 : 기물을 파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돈으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물파손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그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화도 내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고통을 분노로 드러내려면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 당뇨, 혈압 등 건강 이상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식이요법이 필요한데,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과잉 섭취하려고 하는 이용자도 계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병이 생겨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생명 연장을 위해 식이요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충분히 제공할 것이냐. 본인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식이요법도 하고 싶고...아직 결론을 못내렸지요. 시설 이용자는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산소마스크 어떻게 뺄 것인지, 생명연장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런 맥락에서 먹은 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설득이 끊임없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당사자의 강력한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 기획자 :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시설에 입소한 경위, 시설의 환경(사방에 먹을 것이 당사자를 자극하는)도 고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에서 왜 먹는 것에 집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빈곤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간식을 내놓으면 아이들이 먹기보다는 자기 주머니에 넣기 바빠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간식은 우리 모두가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오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후에야 그 상황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시설 이용자에게 '먹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 기획자 :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 먹을 것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위안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 시설 안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일상이 시설 측에 모두 공개되죠?
- 교사 1인이 지원하는 이용자는 3~4명인데, 담당 교사가 바뀔 때 그 이용자들의 개인사 등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행동양식을 보일 때도 전임자들과 같이 그 이용자의 과거 행동 등을 공유하기도 하죠.
- 그룹홈(지적장애인 성인 남성들 거주)에서 종사자 퇴근 후에 새로 입소한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들에게 폭력을 당해 그룹홈 내부에 CCTV를 설치했는데,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니 신입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에게 성추행인지, 동성애인지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 기획자 :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신분증이나 통장(개인정보 분야) 관련 사례, 귀가 혹은 식사 혹은 기상 (일상생활 분야) 관련 사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인권적인 사례, 건강과 식탐 관련 사례, 프라이버시 관련 사례, 성 관련 사례(성적자기결정 분야)로 나눠 상황극본을 만들어봅시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ppt, 읽을거리, 기본적인 진행안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 회의정리

1. 인권 일반에 대한 주제

- 인권의 쟁점 속으로 : 6개 주제(마음의 자유, 몸의 자유, 사회경제적 존엄, 평화적 생존, 저항과 불복종)에 대해 인권대회를 여는 상황을 설정하여 대회에 초대받아야할 구체적인 인물을 떠올려 초대하고, 그 이유 등에 대해 모둠토론 진행방식으로
- 무엇이 차별인가 : 강의 진행 방식을 다음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오기로 함. '혐오'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시설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반차별 : '들'에 강의 부탁.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설 위계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부탁하였음

2.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인권 관련 주제

- 종사자의 노동권 : 사회복지사의 노동을 정치사회적으로 고찰하고 토론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 필요. 섭외 중

-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 : 성적 자기결정권도 이 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4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인권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사례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 상황극을 역할 분담하여 다음 회의 때 극본을 짜오고, 교육 진행안, PPT 작성도 역할 분담하여 추후에 따로 논의하기로 함.

일 시 : 2013년 6월 5일(수)

참가자 : 최은숙(동원재활원)/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지현(가온들찬빛)/이찬미(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오늘은 울산 동원재활원에서 만났네요. 오늘 회의는 기획팀 전체 회의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파트와 관련한 기획자들만 따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울산까지 함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보니, 작년과 올해 한장협의 인권교육강사양성 기획회의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 서울까지 스무 번 이상 오가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성에 새삼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상황극을 논의할 건데요, 준비해 주신 상황극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호칭과 관련한 상황극 논의

(1) 사례1/ 신분증 및 개인정보 상황극에 대해서

- 기획자 : 제가 준비한 상황극은 일상생활에서 시설 이용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종사자들이 주변에 많이 노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나 다른 종사자들에게 이용인의 개인 성향, 과거력 등을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원자가 바뀔 경우, 새로운 지원자는 이용자의 개별지원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전 담당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전 담당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유해야할지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종사자 개인의 고민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조직 측면에서 주의 깊게 논의하여 기준선과 공유방법 등을 정하면 좋을 텐데.

상황극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점심시간에 거실에서 이용자 B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B씨를 새로 맡은 직원이 전임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전임자는 B씨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 거실에 다른 이용자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들은 이용자가 B씨의 과거력을 소문내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 사례 1 상황극의 초점이 무엇인지요? 초점이 두 개로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종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짚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말하고 다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도 있어서 초점이 두 개로 흩어질 것 같네요.
 - 종사자끼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통 어떻게 공유하나요? 그냥 서로 말로 주고받나요?
 - 신임 종사자는 이용자의 개별 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화일들은 시건 장치해야 하고, 열람 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 신임 종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해 전임 종사자의 사견이 들어간 얘기부터 들으면 편견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종사자가 나름대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나 전임종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류로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류상으로는 개인정보 중 기본 정보만 훑어보게 됩니다. 세세한 것을 서류나 문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종사자들이 한 방에 6~8명을 지원하다보니까 개별 파일로 대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 시설조사를 갔는데, 어떤 종사자 분이 내게 이용자가 갑자기 때릴 수 있다고 다짜고짜 개인 성향을 알려주던데요. 물론 저를 위해서 언지를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단계별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어쨌든 기획자 분께서는 시설 이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종사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자 : 그렇죠.
 - 물론 병력이나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는 필요하

지만, 그런데 종사자가 주의 깊지 못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극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인권적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네요.

-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위한 방식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기록부라고 하면, 학생 개인의 성향을 관계를 통해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관리나 통제를 위한 기록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록방식일 것 같아요. 참, 여기서의 개인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만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나 역사 등도 포함됩니다.
- 전날 전임자가 다음 날의 전임자에게, 전날 이용자랑 다른 이용자가 싸워서 상처가 났거나 기분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나누다가 아차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 어쨌든 상황극 토론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냈으면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용자가 보는 대서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일 겁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수인계를 지양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관계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공유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용자가 듣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를 하는 걸로,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상황극을 진행할 때는 이용자는 인권활동가, 종사자 역할은 종사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황극을 마치면,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지켜본 사람들에게 계도 느낌을 물어보고, 진행자가 아까 그 세 가지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진행해봅시다.
- 종사자가 지원해야 할 이용자가 많거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딜레마를 말하고 공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 이런 현실을 유도하는 시설 및 관련 정책의 구조, 원인을 살펴봐야죠. 그 안에서 종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요. 종사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빨리 빨리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 원인 등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가자들에게서 시설 상황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2) 사례2/ 기상시간 및 식사시간과 관련한 상황극

- 기획자 : 제가 기획한 상황극 내용은 체험홈 이용자들의 사례입니다. 우리 시설에는 마을축제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는데, 축제기간동안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예요. 그러다보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시죠. 어쨌거나 체험홈도 단체생활이니 아침에 기상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배경으로 상황극을 만들었는데요, 사례2는 종사자가 와서 이용자를 깨워서 아침 먹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 이용자가 못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하는 상황이죠. 저희 시설은 이용자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 밥을 남겨 차려놓는데,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 극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해요. 그러면 참가자들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불과 2년 전에 만났던 제가 만났던 시설 이용자는 저녁 5시까지 꼭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가 그 때 아니면 저녁을 못 먹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그 이후로 시설에서 식사를 남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시설에서 5시에 저녁식사를 먹고, 밤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훔쳐 야식을 먹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음... 먹는 것 말고 종교와 관련한 상황극은 어때요?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시간 됐어요,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교회 가는 거 싫다.”고 하자, 종사자가 “나도 싫는데, 우리 가지 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에이 교회 안 가면 선생님도 나도 혼나잖아.”라고 말하는 상황극. 이런 내용은 어때요?

- 종교 선택권이 없는 시설이 많다고는 들었는데, 상황극 내용은 별로인 듯해요. 특정 종교만 거론하는 부분도 좀 걸리고요. 저는 아까 식당 사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용자가 배가 고파서 밤에 식당으로 몰래 내려가 음식 훔치다가 들켜고, 때문에 종사자들이 다음 날 회의를 하는 거죠. 한 명은 식사시간을 늦추고 간식을 준비하자고 말하고, 한 명은 식당 아주머니의 퇴근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 명은 간식까지 준비하고 퇴근하려면 일이 많아진다고 말하고, 또 한 명은 식당 음식은 모두가 같이 먹어야 하는 데 그 사람 혼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극은 어떨지요?
- 예전에 시설에 가서 봤던 상황인데요, 식사 시 이용자들이 많이 흘린다고, 비닐턱받이를 목에서부터 테이블에까지 걸쳐지도록 넓은 보자기 형식으로 착용시켜 놓은 것을 보았어요. 제가 헛것을 보았나 싶을 정도로 직접 보고도 믿기가 았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식사 테이블에 이름을 붙여 지정석에만 앉도록 시키는 곳도 있더라고요.
- 음... 아까 식당 사례로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런 대화는 어때요?
밤에 식당에 잠입하는 이용자를 두 명으로 설정하자. 그래서 식당에 잠입한 이용자들을 발견한 종사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종사자 : 남들 다 자는데 뭐하세요? 이러다 다치거나 불이라도 나면 어쩔 거예요?

이용자 1 : 배가 고파서...

종사자 : 아니, 왜 둘이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용자 1 : 한 사람은 망을 봐야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훔친 사람은 비참하고 두려운 느낌이지 았았을까? 그러면 식당에 잠입한 이용자를 발견한 종사자는 어떤 느낌일까? 상황극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자.

- 저는 이 상황극에서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채울 수 없는 욕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뉘지면 좋겠어요. 왜 배가 고파질까요? 단지 너무 일찍 저녁을 먹는다는 이유만 있을까요? 시설 이용자들은 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상하게 저도 시설 밥이 먹고 나면 금방 배고프더라고요.
-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시간에만 음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시설이 과연 그런 공간일까요? 장애유무, 성별, 연령 등을 떠나 누구라도 사람은 보호(지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종사자가 이용자의 장애유형 정도를 인식해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이용자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나 보호를 받는데 인색했던 사람은 주기도 어려워한다고 해요. 사례2번의 상황극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존중, 존엄이라는 가치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3) 사례3/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상황극

- 기획자 : 시설 이용자 A씨는 과거 보호작업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유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떠올리면 두려워하지만 시설 내에서 남자 이용인들과 잦은 관계를 합니다. 몇 년 전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남성 장애인들과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보호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A씨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고 이성에게 애교를 부리는 행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설의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 이 상황극은 포인트가 뭐지 잘 모르겠는데요.
- 이용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참가자들에게 계속 성적인 대쉬를 하는 건 어때요? 그럴 때 종사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면요?
-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솔직한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성적인 첫 단추가 추행이나 폭행으로 경험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 내가 심화과정에서 성 얘기를 하자고 한 것은 시설 안에는 분명 성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에서 성교육을 하긴 하는데 정말 적절한 성교육일지, 의문이 있어요. 시설조사를 하다 보니, 누워 있는 중증장애인이 이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에게 추행 등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성추행 등이 시설 안에서 성적 놀이 문화로 잘못 번질 수 있고요.
- 제대로 된 성교육...그것이 시설 안에서 가능할까요?
- 쉽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를 고려한 성교육 교재, 강사, 강사료 등이 다 걸림돌이지요, 때문에 시설 안에서 담당종사자의 역량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이것 또한 종사자와 이용자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시설은 어쨌든 단체생활이고, 선생님 말처럼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까요.
- 기획자 : 제가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준비한 사례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 시설의 한 이용자가 방에서 자위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거실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자기 성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그 분이 거세불안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분이랑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인잡지를 보면 좋겠다고 해서 동성인 종사자와 같이 가서 구입했는데, 그런 잡지를 낮에 다른 이용자들과도 보고...
-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주제와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상황극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성적자기결정권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사례를 정리하면, 과거의 성적 폭행, 성적으로 자기를 들어내는 사례, 동성애적 성적요구 사례였던 것 같네요. 시설 내부에서의 성추행, 성폭력은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성추행일 경우 피해자의 몸에 큰 이상이 없으면,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종사자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덮어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큰 틀에서는 시설 안에서의 이용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들을 여섯 개 조로 나누고 여섯 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토론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례4/ 자기결정권 관련 상황극

- 기획자 : 지난 회의 때 공유한 실제 사례인데, 상황극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설 이용자 한 분이 당뇨합병증으로 심장병이 왔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저희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용자에게도 생명이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이조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당사자도 순간순간 결정을 잘 못하십니다. 달고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고, 아프기도 싫고.
-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이용자 간의 대화로 상황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참, 상황극 전체적으로 각 상황마다 교육진행안에 간단하게 상황설명과 고민거리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각 상황극에 대한 교육진행안을 쓸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표현으로 해서 교육안에 제시하면 상황극의 포인트를 서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사례5/ 이용자의 반인권적인 자기결정권 관련 상황극

- 기획자 : 지난 회의 때도 공유했던 사례입니다. 그 이용자가 분명 화가 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못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용자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면 기물을 계속 파손하는 거예요. 보통은 시설에서 배상하라고 안하지만, 이 분은 너무 기물을 파손하니까.
- 배상문제는 빼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까지만 다루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니까 물건을 부셨다는 이용자의 답변은 넣고요. 이용자의 반인권적인

자기결정권이 핵심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살필 것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단정부터 지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폭력이 몸에서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종사자는 종사자 나름대로 이용자는 이용자 나름대로 정당성을 피력하니까. 물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나를 찾아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겁니다.

- 이용자가 화를 내고 기물을 파손하고 종사자가 이를 멈추게 하려고 설득을 해 보는 상황극을 진행 후에 소감 나누기를 할 때 종사자가 어떤 느낌을 들었나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상황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예전에 들었던 사례 중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용자가 어떤 이용자를 때렸는데 그랬더니 한 번도 시설에 오지 않았던 엄마가 왔다는 거죠. 그동안 전혀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이용자가 계속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엄마가 오니까. 이 사람은 지금 탈시설 했는데, 그 때 자기가 때렸던 종사자나 이용자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시설에서 폭력을 할 때 맨 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에 있을 때는 종사자가 “형, 왜 이래요? 왜 매일 술을 먹고 왜 사람 때려요?”라고 달래고 설득하고 묻고 했다는데, 정작 본인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회의 정리**

- (1) 제1파트 : 총 6시간 인권 일반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봄.
- (2) 제2파트 :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살펴봄.
상황극으로 진행 1~3분 내로 총 4개로 준비. 강의시간은 3시간
- (3) 기타

-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종사자, 이용자로 표현
- 상황극의 교육진행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로 상황극 논의 주제를 제시
-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 주제에 대해 경중의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종사자의 노동권' 파트의 기획과정을 보면서 이용자의 인권파트를 가감 요망.

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참가자 : 박문희/ 이윤경(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최은숙(동원재활원)

이안나(장봉혜림요양원)/ 박지현(가온들찬빛)/ / 김진(교남소망의집)/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민지(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을 진행할 일정과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제시한 일정은 여러분에 맞춰 변동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정을 확인하시고 가능 여부를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서장협)에서 진행할 인권교육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장협의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관련해서 한장협은 물론 강사로 참여하실 분들도 궁금증과 걱정이 있으신 듯합니다.

서장협은 서울지역 장애인거주시설과 그룹홈 종사자들 33명 지원자를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기본과정을 진행합니다. 기본과정 진행 초기부터 교육과정을 서로 논의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진행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아서 이제 논의한다는 것이 난감하긴 합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첫째, 완성된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장협에서 기존 한장협의 기본과정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서울이라는 특성도 고려하여 기본과정 진행한 것을 되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과정에서 강의했던 사람들을 그냥 섭외하는 것 보다는 같이 논의해서 새롭게 구성원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기본과정 수료 후 인권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내용보다는 진행 방식에서 몇 가지 짚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결국 참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거주시설

에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종사자도 이용자도 결국 누군가는 아래 있고 누군가는 위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인권교육을 아무리 해도 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내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결국 인권교육의 지향점은 당사자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그 잘못이 내가 아니라 밖에 있음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힘을 발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시설 내에서 받은 나의 인권침해를 말하긴 어렵습니다. 종사자나 이용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원장이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한다던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인권교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원장님들이 시설 내 인권교육부터 하라고 강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종사자들이 싫다고 거절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본인은 준비도 안됐는데 전달교육 식처럼,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딜레마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 작년에 서울복지재단과 함께 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시설은 인권교육을 반겨하기도 하고 어떤 시설은 불편해하기도 했지만 불편해하는 곳이 훨씬 많았지요.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 인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시설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설의 직원이 인권강사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 시설 내의 인권교육을 한다한들 시간을 채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협회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게 고민되어 지지 않으면 예전에 사회복지사 2,3급을 마구 배출했던 것처럼 인권강사가 마구 배출되는 것에 그칠 것 같습니다.
- 서장협에서는 서울지역 인권지킴이단 지원 관련하여 외부 지원금을 받아서 인권지킴이단의 운영비와 인권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인권교육 강사양성을 진행했지만, 지역별로 한 두 명만 배출이 되어서 인권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장협에서 외부지원금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74시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해보자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큰 관점이 있고, 막히는 부분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전체를 진행하는데 맥락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교육 의지도 높고 이미 시작한 것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해당 시설 내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한장협의 입장은 이미 들었습니다. 수료생들이 강의를 나갈 때 법인별, 권역별, 장애유형별로 나뉘어서 과건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처음 기본과정부터 참여했으면 덜 어려웠을 텐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서장협에서 소속 시설들에게 해당기관에서 되도록 인권교육을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줄 수 있는지요?
- 가능하긴 하지만 조직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시설이나 지방의 대규모 시설에서는 관련 강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저희는 복지관과 연계가 많아서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커리큘럼으로 10명 씩 소그룹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시설끼리 인권교육 강사인 종사자를 교환(?)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 외부와 네트워크가 없는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도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장협의 기본과정 참가자 분들에게 소속 시설에서는 되도록 인권교육을 진행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 한장협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자정능력을 높이고, 인권적 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인권교육은 필요하고, 복지부도 외부 강사를 들여서 하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 될 수 있으면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는 현재 아직 섭외를 못한 강의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인권교육 강의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인권교육 강의를 진행하려면, 내가 인권적인지 자기점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낯설어 하는 부분을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회의를 통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해 촉진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가 필요한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기획회의를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 일정을 맞춰보겠습니다.

-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수료생이 소속 기관에서 인권교육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한장협에서 입장정리를 했으면 하시는 거죠. 작년 기본과정을 수료한 1기 선생님들이 자체 워크숍을 할 때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수료 후 소속 기관에서 전달교육을 하라고 했던 것의 심적인 부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70시간이 넘는 인권교육을 어떻게 전달 교육을 하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인권교육하라고 하니...그때 겪는 심적 부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속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도 이용자 분들이 본인이 늘 보던 사람이라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동료들도 자신이 교육하는 것을 검증하려고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거나 하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장협에서는 강사들의 향후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심화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심화과정과 관련해서는 상황극 기획자들이 울산에 모여 따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록으로 메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권향상과 관련한 주제는 한장협과 기획자가 따로 모여 강의 주제와 수위를 논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회의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일 시 : 2013년 7월 19일(금)

참가자 : 이윤경(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지현(가온들찬빛)/최은숙(동원재활원)/김홍연(애네아의집)/
장정아(옹달샘)/ 김민지, 주혜경(서울장애인복지시설협회)

오늘 논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서장협의 기본과정 2차 워크숍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략한 평가를 나눠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하루 종일 될 것 같네요.

- 서장협의 인권교육 강사양성 2차 교육은 어땠어요?
- 아직 평가 분석을 마무리 하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요, 몇몇 시설 원장님들에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참가자들의 평가 중에는 강의 진행방식이 너무 비슷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강사들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과정 이후에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컴플레인이 있었 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한 자신들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답답함을 안고 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1차 과정 평가는 좋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설렘도 있었던 것 같고요. 2차 과정 은 강의가 하루 종일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어떨 때는 강의 시간이 밀리는 경 우도 있어서 참가자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이야기 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숙박과 비 숙박의 진행 차이도 있겠지요.
- 저는 서울 지역 종사자들을 다른 지역보다 인권교육 기회가 많고, 단체 활동 가들이 진행하는 참여식 교육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회의 때 사전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3차 워크숍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1차와 2차 강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토론되고 정리되었는지

- 몰라서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강의 속기록이나 모둠 작업한 내용이라도 묶어서 보내 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진행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교육과정은 날개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앞의 강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뒤에서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가 안 되면 뒤에서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서 반복되는 느낌이 계속 들 수 있고요.
- 기본과정 후에 각 강의별 평가나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의별로 쟁점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신 1기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있을지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 한장협에서 진행한 교육과정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한장협의 교육과정 참여자는 모두 시설 종사자여서 서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인권위 교육과정에는 교수,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에 CCTV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질 못했었는데, 이걸 알게 되자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항의를 하셨거든요. 시설 종사자들만 모여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인권위 교육 참가자 중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요, 수화통역이나 편의시설 관련해 고려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교육 내용은 비교해보면, 인권위는 참가자 선정 자체를 그동안 인권교육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고, 교육 전에 인권위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습니다. 참가자 선정 시 아예 교육안을 제출하게 했고요. 과제를 주고 다음날 발표를 하게 해서 밤늦게까지 과제하느라 잘 못 잤어요. 발표와 피드백으로 강의를 이루어져 도움이 많이 됐지요. 한장협에서는 인권감수성을 깨우기 위한 교육이 많고, 인권위 교육은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 교육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제출한 PPT와 인권위 강의 자료는 모두 제공이 되

어서 일일이 쓰고 사진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것도 좋았고요.

인권위는 2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인권위에서 의뢰한 강의를 1회 이상해야하는 등의 규칙이 있다. 한장협도 강사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위도 그런 후속 과정은 없었는데, 시설 내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이 내용을 의무화시킨 거라 하더군요.

심화과정 논의

인권 일반 관련 주제

1) 인권의 쟁점 속으로

- 기획자 : 모둠별로 인권 쟁점이 쓰여 있는 카드를 주고(자유, 평화, 존엄 등) 각 주제 인권대회가 열렸을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이 어떤 내용의 피켓을 들고 등장할지에 대해서 모둠별로 논의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초대했고, 더 초대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했고요. 저번 회의 때 거의 정리된 건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권리항목별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예시를 제시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2) 무엇이 차별인가

- 기획자 : 이 강의는 차별을 바탕으로 한 '혐오'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대인물을 직접 등장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회적 혐오를 많이 받는 당사자를 초대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강의 장소가 충북 영동이라서 당사자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있음으로 논의가 더 진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논의 당시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었죠.

-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혐오의 대상인지입니다. 왜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시각에 의한 혐오, 이미지로 형상화된 혐오, 냄새로 인한 혐오 등의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혐오는 어떤 외연을 하고 있는 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 첫 번째 얘기는 본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진도가 나가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죠.
- 하지만, 혐오를 받아 본 경험 이야기는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최근 혐오와 관련한 반차별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충북이면 초대인물은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쪽에는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영동까지 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성매매도 혐오의 대상이니까, 이들도 섭외해 볼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 성매매여성, 이주노동자 등은 당사자 활동가를 섭외하면 좋을 것 같은데.
- 보통 혐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극단적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경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받아 본 혐오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혐오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요.
- 기본과정에서 진행한 ‘반차별’이 ‘혐오’로 심화되는 건가요?
- ‘심화’라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반차별을 심화한 내용이란 뭘까에 대해서... 무엇이 심화인가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일까, 그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고민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혐오중심으로 강의를 기획한 이유는 ‘혐오’라는 것은 복잡한 맥락으로 드러나기에 그 맥락을 짚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강의는 왜 혐오스러운가를 분석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라서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피부가 어두운 것, 냄새가 날 것 같다는 등 이유가 있거든요. 피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있어서 혐오하는 거죠. 물론 ‘혐오’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넘기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성소수자를 인정하는데 그들이 연애 하는 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것은 자유 아니냐하는 논리인 겁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오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차별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남길 것인지 그 이유를 찾을 것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강의가 잘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 관련 주제

- 인권감수성과 관련해서 심화과정에서는 시설 이용자, 종사자를 모두 다루기로 했었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만 다루면 너무 기울기도 하고, 종사자가 일하는 사람으로써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의했던 것이 기본과정부터 연결되어 온 흐름입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향상은 이용자의 인권보장과는 다른 구조와 맥락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로서 특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노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본과정에서 ‘희생과 봉사 VS 사회복지시설’, ‘내 위치 찾기’강의에서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이야기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노동’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면 중국에는 노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한장협 의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냐는 것이 내부 의견입니다.
- 노조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를 넣자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이야 누구든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개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민하다고 하시면 강의 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 종사자의 노동권 강의를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진행안이 아직 없으니 이것을 기획해보고 기획안을 가지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 교육안을 부담스럽지 않게 꾸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시설 운영진에서

는 어쨌든 교육의도를 충분히 곡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장협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원래 구성한 내용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노조구성과 문제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관련한 감수성은 기본과정에서 진행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대안 없는 토론만 한다면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종사자 노동권이 제외된 심화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하나한 이야기가 됩니다.
- 종사자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교육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의 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생각할 여력과 기회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 저희는 노동권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하나?
-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하는 거지, 노조가 목표가 아닙니다. 노동권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찾아가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 이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시설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 그 정도의 교육은 받지 않았을까요?
- 글썄요. 노동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 시설은 거의 없을 걸요. 그런데 실천 사례가 들어가지 않은 교육은 사실상 무의미해요. 그런 교육을 하면 참가자들은 '나도 그건 알고 있거든. 근데 그게 나랑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장협이 부담스럽다면, 뒷감당도 한장협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되네요.
- 실천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노조 형성, 사측과의 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보통 현장에서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그저 업무와

- 관련된 내용들이고 구체적인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육해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 실질적인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 시설 내에서는 관련 실천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 노조에서 직접적인 종사자의 인권 보장 보다는 이사회와 권리남용, 법인 등에 대해 움직인 사례가 많다는 거죠. 종사자의 인권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노조를 만들지 않아도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회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노사의 '노'는 노조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설평가에서는 노-사의 협의 테이블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도 공식적인 노조의 대표가 참여한 것이 아니면 사측이 그 결정을 무효화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저는 종사자 인권 없이 심화과정이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인권교육가 양성 과정을 왜 만들었는지 초심을 생각한다면, 그 위험부담을 안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공유토록 하지요.

시설 이용자 인권 관련 주제

- 1)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관련 상황극
 - 기획자 : 지난 회의의 피드백을 수용해 상황극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 상황극 기획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 꼭지를 넣어서 상황극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 이 상황극 기획안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전 회의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할 때,

인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그 상황은 어떤 것이며, 어떤 원칙과 단계로 정보공유를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 나중에 늙어서 노인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나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리얼한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
- 인권교육을 하러 가서 그 시설의 선생님과 친해졌는데, 경증 장애인을 가리켜 누구는 말하는 게 문제라며 취직하려는데 말 때문에 안 되고 하면서 이용인의 이야기를 늘어놓더라. 다른 시설에 인권 강의하러 갔을 때였는데, 그 상황이 좀 충격이었어요.
- 시설에 후원자가 왔을 때, 누워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불쌍하고 처참하다며 별 이야기를 다 하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다만 거동을 못할 뿐이지, 그 이용자는 다 듣고 있지요. 있다. 이것을 후원자가 올 때마다 일 년에 몇 번씩 말하는 종사자들도 있어요.
- 그런 개인의 과거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는 건 충격이네요.
- 직접 당사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반영하면 어떨까요. 상황극에서 다른 이용인이 듣는 것을 빼고 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면 더 와 닿지 않을까요?

2) 자기결정권(식사 및 기상)관련 상황극

- 이걸 저희 시설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황극이니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공동체 생활에서 지원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설 이용자 중에는 1,2주 정도 집에 다녀오면 생체리듬이 달라져서 시설에 왔을 때 애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시에는 불 끄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야하고 하는 등. 정말 고스러워요. 단체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 해주고

조율해야 하는지.

- 극적인 재미가 있어야 참가자들의 몰입을 높일 것 같은데요. 유치할 순 있지만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상황은 어때요?
- 점심 이후 나오는 간식을 숨겨줬다가 밤에 먹을 수는 있어도 이 사례처럼 조리실이나 식당을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데요.
- 밤에 이용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직원은 지금 드시면 안돼요~하고 그럼 다시 들어가고... 계속 그걸 반복하다 티격태격하는 상황은 어때요?(직원: 언니 드시면 다른 분들도 다 드셔야 돼요~/이용자 : 내가 내 돈 내고 들어와 사는데 왜 마음대로 먹지도 못 하나/ 직원: 그래서 아까 저녁 드셨잖아요~)
- 상황극 진행 이후는요?
- 기획자 : 참가자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물어보며 사례를 끌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려합니다. 핵심은 결국 시설의 단체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하는 겁니다.
- 유사 사례를 공유하면 지원방안 등도 공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 기획자 :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은 상황극이 아니라 모둠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제 여섯 개를 제시하고 모둠에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제시할 주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이용자

시설의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이용자

성매매를 요구하는 이용자

본인의 성생활을 부모에게 알리길 원치 않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종사자

시설 이용자끼리의 동성애적인 상황인지 성추행 상황인지

이성 종사자의 목욕 지원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별도의 공간에서 자위를 한다거나 야동을 볼 수 있게 지원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시설 종사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 시설에서 겪는 딜레마 사례만 토론했을 때 강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성은 결론을 내기가 더 어렵잖아요. 기본을 짚어볼 필요도 있어서 모둠토론 말고, 우리가 토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강의를 진행해 줄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 심화과정의 인권교육 강의 진행을 위해 1,2기 분들에게 그동안 강의했던 교육안을 보내줄 것을 부탁드렸고 취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강의 기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 시설 내 인권교육의 어려움, 중복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 진행 방안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동료 앞에서 교육 하는 것의 어려움, 교육의뢰 측과 참여인원이나 시간 배분이 잘 되지 않는 것, 참가자의 반응 등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 인권교육 시행 후 시설 내 변화로 취합된 내용은 업무 전반에 인권적인 자기점점 강도가 늘어남, 인권교육 담당 혹은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을 동료들이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 직원들의 인권 관련 질문 증가, 사례회의 증가, 인권교육 활성화 등으로 취합되었습니다.
- 제안사항으로는 수료생끼리의 지속적 관계망과 강사에게 인권교육 관련한 의무사항 등을 통해 인권교육 강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다른 직원들도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함,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인권의 등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 인권교육 경험나누기는 인권교육 경험이 풍부한 이가 많아서 기획안을 짜왔으면 좋겠습니다.

- 들과 나아와 소통을 해보고 다음 회의 때 공유하겠습니다.
- 심화과정 일정에 대한 가안을 대략 짚습니다. 각 강의가의 시간, 일정, 순서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 비폭력대화를 빼는 것은 어떤지요? 배정시간도 3시간 밖에 안 되고 그 시간동안 무언가를 심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다가 말지 않을까요?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대화는 심화과정 전체 진행 전에 맘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그러면 3시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 기본과정을 수료한 저로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피부에 와 닿던 것이 비폭력대화였고, 강의 시에 제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도 비폭력대화 강의였습니다. 진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배웠으면 합니다.
- 비폭력대화만으로 삼박사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감수성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 일단은 이 일정표로 확정합니다.

일 시 : 2013년 8월 27일(화)

참가자 : 이호연, 이묘량(인권교육센터 들)/ 김영문(동천의집)/

최은숙(동원재활원)/ 이윤경(나야 장애인인권교육센터)/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문희

심화과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와 다음 회의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심화과정을 마치고 나면 총평가 회의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니 올해도 열 번 넘게 기획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이후로 강의 진행과 강사가 변경된 것도 있으니 첨부한 강의 진행표를 다시 확인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혐오’를 중심으로 한 반차별 강의는 지난 회의 이후 논의를 계속하였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지난 기본과정에서 놓쳤던 성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교육센터 들의 호연 씨를 강사로 섭외했고, 오늘 호연 씨가 기획안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인권 일반 관련 주제

- 기획자 : 컨셉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왜 아는 걸 또 이야기 하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동화와 인권이 만났을 때’로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기본과정에서도 ‘인권의 의미와 원칙’ 강의에서 동화 속에서 노동착취,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이라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성인지적관점에서는 동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본 동화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상품화, 성폭력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시키며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어떤 성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O,X 퀴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들을 일부러 애매하게 제시하였는데, 그래야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여성들이 살만한 세상이 됐나’라는 질문을 제시할 건데요, 여성들이 살만한 세상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의 적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여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만들어놓았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결혼에 대한 질문인데 동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다루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여성의 돌봄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성역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돌봄을 책임져야하는 구조, 남성들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며 비껴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한 돌봄 노동 자체의 문제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성역할 관련해서 남자가 남자답지 않아졌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성매매여성이 늙으면 ---다’라는 건데요, 이 질문을 통해 여성 간 위계를 누가 만드나, 더 나아가 여성이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늙음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점, 성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과정에 대해 다룰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고 여성주의 관점으로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사회복지 시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보수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의를 하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발이 많아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시설 내에서 이용자 간 동성애에 관해서 사례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 관계가 불건전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 다. 다른 인권침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이 열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자 : 보수적인 반응이면 차라리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저는 참가자들이 나는 보수적이지 않다며 보수적인 말을 할 때가 더 어렵거든요.
 - 2시간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뒷 강의에서 시설 이용자의 성적자 기결정권 강의를 연결되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건드려주면 좋겠습니다.
 - ‘동화와 인권이 만났을 때’ 프로그램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거 또 하네?’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 기획자 : 동화를 인권적으로 다시 보는 것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네?’라는 반응보다, 잘 못 찾을까봐 걱정인데요.
 - 참가자들이 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무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시간 배정을 수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적 관점’은 어려운 단어라 강의 제목을 쉽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 프로그램은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과 관련한 주제

- 노동권 부분은 기획회의 팀원과 한장협 회장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사자의 인권 중에서는 노동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공유를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사자의 노동 관련한 강의 구성과 강사 등을 오늘 진도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 종사자 인권을 윤경 씨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 저는 인권교육 시연 관련 강의도 진행하기 때문에 또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없으면 우선 기획을 제가 해 볼게요.
- 어려운 강의를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외부 강사를 섭외하는 방법도 있어요. 추천할 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지?
- 그런데, 심화과정 강의 제목을 ‘종사자 인권’, ‘이용인 인권’이라고 대비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기본과정에서도 인권이란 게 보편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도 시설 종사자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심화과정이지만, 종사자들이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인식하는 것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설 내부에서 이용인과 종사자의 관계의 문제를 종사자가 자신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종사자들이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노동자의 권리가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 덧붙이면 기본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별려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네?’라고 포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종사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설 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치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설 종사자의 자기 세력화가 나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 중 하나라는 것을 포착해야만 장애인 인권도 이와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안 돼.’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기본과정에서는 중간에 논의들이 끊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노동자로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도입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는 어느 정도 더 진도가 나가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동권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 자기 일에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네요. 이게 노동자다 이런 것 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진도가 나가면 좋겠죠. 시설 종사자로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규정할지,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은 이 노동을 어떻게 명명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로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들을 이미 기본과정에서 한 것 아닌가요? 이걸 다시 하면 기본과정과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기본에서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했으니 그걸 보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기본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희생과 봉사라는 것을 스스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약자인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긴 하지만, 희생과 봉사보다는 ‘사회복지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단체 활동가들은 시설 관련 사건에 대하여 주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듣게 됩니다. 가해자 얘기를 하게 되면 종사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종사자들은 활동가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해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활동가들도 시설 종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 기본과정에서는 노조 언급도 했고, 노동자 권리도 이야기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 선언’ 이런 걸로 내용을 구성해보면 어떨까요? 시설종사자 인권 현황이 ‘국가와 나’, ‘시설과 나’ 등 다양한 구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종사자의 인권선언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브레인스토밍해보면서 시설에서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 인권선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토론 부분에서 빠진 내용을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건드려줄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한데요.
- 그러면 종사자 인권선언도 조별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시설과 종사자 인권’ ‘지역과 종사자 인권’, ‘국가와 종사자 인권’을 다뤄보면 어떨까요?
- 예전에 종사자들과 윤리인권선언을 만들었는데, 다 긍정적, 도덕적인 것들로 나와서 지키기도 쉽지 않고 좀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들도 짚어주면 좋겠네요.
- 지역사회와 종사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 프로그램으로 외출, 극장을 가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종사자의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요?
- 종사자들은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각 영역의 토론 주제의 주어는 ‘나’로 설정하고 토론을 진행시켜 보면 어떨까요?
- “난 안하겠다고 할 권리가 있다.”
- “난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 성교육 할 때 ‘안 돼’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모르냐, 잘릴까봐 그냥 참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말로 하고 문장으로 써보는 것이 의미 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 아는 것과 그걸 드러내는 것은 다르죠.
- 지역사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 임금문제, 인식의 문제 등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한데, 강의 갈무리가 걱정인데요.
- 조별 얘기한 내용을 나중에 피피티로 보여주면서 다시 빨 건 빼고 구체화할건

- 구체화한 뒤 참가자들이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고 나중에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선언적 의미만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선언이야 누구든 할 수 있죠. 구체적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야 현실적인 느낌이 들죠. 선언적인 의미는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등등.
 - 그 윤리강령은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억압하는 것 아닌가요? 윤리강령 바꿔 쓰기는 어떤지요?
 - 그것도 한번 되짚어보면 재밌겠다.
 - 아무튼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 종사자 인권 시간을 늘렸으면 합니다. 나의 권리를 국가, 지역사회, 시설 등의 관계 속에서 찾고, 그걸 위해 나는 뭘 할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 조별로 이걸 하면서 제일 괜찮은 실천을 하나씩만 찾아보게 해도 6개의 실천이 나올 수 있죠.
 - ‘나와 나’의 관계는 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역사회’, ‘시설’ 이정도 관계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 ‘시설과 나’의 관계에서 시설장, 동료 등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아직 시간적이 여유가 있으니 강사는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권교육 경험나누기

- 인권교육경험 나누기는 몇 명이 따로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메일로 회의록을 돌렸는데 보셨죠? 사실 기본과정 수료생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교육을 볼 기회도 거의 없고, 본인의 인권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강의 피드백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에서는 인권교육 시연과 인권교육 상황에서 생기는 딜레마, 이렇게 2가지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교육 시연에 대해서는 심화과정 참가

신청을 받을 때 강의안도 같이 받고, 그 중 시연할 사람을 선정해서 준비를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1) 인권교육 시연

- 기획자 : 시연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요? 인권교육을 할 때도 종사자 중에 교육경험이 많고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권교육 시연을 기초교육, 단기교육과 장기교육 이런 식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 서울은 종사자간 교육 경험에 구분이 가능할 것 같지만 경기, 인천만 가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마 향후 2~3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2~3년 후를 준비하는 연습 차원에서 교육기획안을 과제로 심화과정 참여 조건으로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 한장협으로 인권교육 강사를 섭외해달라고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본인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강사가 알아서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권교육 강사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처음이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시설에 방어적인 기제로 작용하면서 딜레마, 침해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할지를 배우고 싶다는 내용도 많습니다.
- 심화과정에서 인권교육 시연을 하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면, 수료하신 분들이 진행했던 인권교육 기획안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보자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시설 유형, 교육 주제 및 기간, 교육참가자 등의 조건을 버무려 기획안 과제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과제 내용이 주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비슷 비슷한 기획안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기획안이 다 비슷하면 피드백이 다양해지지 못하거든요.
- 기획안들은 강사 입장으로 구성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인 과제를 주어도 비슷한 기획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 기획자 :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버무려서 네 개의 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설 이용자 인권 관련 주제

1) 프라이버시

- 기획자 : 강의안을 정리해왔습니다. 도입부에서 이용자에 대한 참가자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려고 합니다.('내게 이용자는00이다. 왜냐하면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 후에 상황극을 주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자기결정권 사례(식사 관련)가 기본과정에서 다뤘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식사시간 말고 다른 사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외출, 목욕 등의 사례도 있는데요. 외출 후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있다거나, 목욕할 때 본인 신체의 어느 부분을 만지는 건 싫지만 참아야 하는 경우라든가...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밥 먹는 것, 옷 입는 걸로 한정 돼서 이야기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 금전적인 면도 있죠. 본인의 재산 상황은 고려치 못하고 고가의 물품을 산다 던가 하는 것.
- 통신은 자유인데 채팅을 하고 채팅남을 만나러 가는 건 자유롭지 못하죠.
- 기획자 :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딜레마로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이용자의 외출을 인권딜레마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종사자는 안전의 이유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딜레마로 보는 겁니다. 이를 인권의 문제로 보면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문제는 시설 종사자들이 어떤 상황들은 딜레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이 진전되지 못하는 거죠. 시설 바깥에서의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
- 옥순 : 작년에 권리옹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의제를 뽑고 토론을 했다. 그때

토론을 짧게 짧게 했는데 거기서 오는 아쉬움도 있었다.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풀어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거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정리를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 걸 누르게 되는 것도 있었다. 역할극을 통해 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다면 4번을 빼고 피피티로 정리강연을 해도 된다.

- 상황극을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간략히 해서 상황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를 같이 다루면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진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입장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2) 성적자기결정권

- 시설 이용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기획팀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한 사례 토론도 했었고, 그 중 대표적인 유형도 뽑았지요. 대표적인 유형의 사례를 모듬에 제시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정을 포함해서 강의 진행을 해 줄 수 있는 분들 섭외하는 중입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적권리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성 얘기는 의식이 깨지기 어려운 영역이라 사례를 통해서 어디까지 짚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얘기해보자~ 는 식으로 진행하면 갈무리가 어렵습니다. 강사가 어떤 지점을 꼬집어 인식을 확장시킬 것인지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 시 : 2013년 9월 11일(수)

참가자 : 박지현(가온들찬빛)/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은숙(동원재활원)/김영문(동천의 집)/ 박문희

오늘은 심화과정을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생각해보니, 작년 기본과정 준비를 위한 기획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만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인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강의를 점검하고, 강사 섭외 상황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 이용자 인권 관련 주제

- 기획자 : 공유해 왔던 진행을 유지하면서 사례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식사는 식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외출 등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니 참가자들이 보내준 사례를 취합하여 제게 보내주면 상황극 사례를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 시설 이용자 외출 관련해서는 서명을 하고 나가게 하는 것, 차량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종사자가 붙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시설에서 이용자가 외출할 때 서명하는 거... 서류로 외출기록부가 있죠.
- 집에서 나올 때 서명하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사인을 해야 하는 게 어색한데...
- 우리 시설은 며칠 걸리는 외출이 아니라, 잠깐 외출하는 건 외출기록부에 적지 않는데요.
- 그런데 만약 자립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외출이 가능한지?
- 아마 어려울 걸요. 우리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훈련으로 버스타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데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때 못한다고 못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

용을 잘 하는 이용자와 짝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하다보면 점점 혼자서도 잘 나갈 수 있더라고요.

- 기획자 :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할까가 아니라 밖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없게 할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체험홈 사례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둠에서는 우리 시설을 제외하고는 체험홈이 없었고 시설에서도 이용자가 불이나 칼을 만지지 못하게 하더군요. 체험홈인데 이런 위험한 경험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던, 다들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시설에서 처음 체험홈을 했을 때 체험홈 이용자들이 다들 칼이나 불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니 지금은 스스로 음식도 해 먹어요.
- 종사자들도 나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고 하다보면 늘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다치면 지도점검에서 종사자들은 뭐했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설은 외출이 자유로운데, 그래서 가끔 오래 동안 집을 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을 경찰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경찰들은 도대체 시설이 뭐했던 거냐고 질타를 합니다.
- 그래서 이 강의가 기본과정의 ‘안전과 보호’ 강의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직도 걱정입니다. 심화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기획자 : 우리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기본과정에서는 사례를 살펴보고 찾아보는 수위였다면, 심화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사례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상황극 진행을 섬세하게 했으면 합니다.
-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본다는 게 쉽지 않다. 토론을 하면 종사자의 입장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상황극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죠.

- 기획자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황극이 끝나면 유관 사례에 대해서 참가자들과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토론 주제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 기획자 : 나와 조직, 지역사회, 정부라는 주제로 한 조당 한 주제로 내가 필요로 하는 권리, 긴장점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한 사람은 피피티 작업을 해서 1-2페이지 내로 선언문을 만들고, 앞에 선언문이 있다면 옆에 실천론이 나올 수 있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나의 권리를 노동권 중심으로 한다면 인권에서 노동권으로 범위가 확 좁아지지 않을까요?
- 기획자 : 노동권은 전혀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 했을 때처럼 '나와 나'라는 주제로도 권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추상적이고 어렵네요.
- 노동자로서 당연히 확보되어야할 권리가 각 주제별로 다른가요?
- 기획자 : 정부는 임금 등, 지역사회는 시혜적, 동정적 시각 등이 있을 겁니다.
- 그런데 지역사회의 시각이 노동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자 : 정당한 노동을 시혜적 시각에서 보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구체적인 법조항과 맞물리는 것이 많은데, 시혜적 시각 때문에 내가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는가요? 지역사회 정서 때문에 내가 더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기획자 : 지역사회의 시선 때문에 착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등이 있지 않을까요?
- 동의는 하지만, 노동권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건 권리 침해보다는 정서적인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좋은 차를 몰면 뒤에서 쭈근덕거려요.
- 인식과 가치가 노동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 기획자 : 지역사회에 노동권을 요구한다는 것이 애매하고 구체적 대상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국가나 조직은 명확하지만. 그래서 노동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순 없어요. 지역사회 내 시설 종사자의 노동이 삼성의 종사자의 노동과 같은 가치로 평가 받고 있을까요? 시설의 종사자를 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노동자로서 적극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와 조직, 나와 지역사회, 나와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 진행자를 제외해 보는 것은 어떨지 이후에 논의를 해 봅시다.
- 인권교육 시연을 하려면 미리 강의안을 받기로 했는데, 네 개의 주제를 정했고 참가자들에게 배분할 겁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기획안이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기획안을 취합하면 시연 강의 기획자와 다시 만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기획안을 정해 참가자에게 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상황의 딜레마는 기존안대로 진행합니다.

심화과정 논의를 정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심화과정에도 전체 진행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기획회의 참가자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활동이 바쁘신데, 애정을 가지고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강의는 강사를 물색한 후, 해당 강사와의 기획회의 등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애정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과 11월의 심화과정 때 다시 뵙겠습니다.

< >

**2013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 교육 자료집**

- 칼 행 인 : 김 성 현
- 편 집 인 : 서비스지원실
- 칼 행 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주 소 : 173 903
- 전 화 : 02) 718-9363~5
- 전 송 : 02) 718-9366

Homepage : www.kawid.or.kr / www.1899-0420.or.kr